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0-18-10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수상집

총 목 차

우 수

-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통해 살펴본
노동건강권과 안전보건제도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교실 정민수

우 수

- 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83**
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김푸른샘

가 짝

-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 제안 165**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안소정 · 정재숙

우수상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통해 살펴본 노동건강권과 안전보건제도

-2005년 노말핵산 노출 사건에 대한 산업역학적 접근-



정 민 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교실

요 약

본 연구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침해의 본질적 부분인 신체와 생명에 대한 권리를 다룬다. 특히,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그들의 산업재해 발생의 유의한 조건인지를 검토하였다. 현재 이주 노동자의 산재사망의 현황, 산재급여 수급액과 건수, 그리고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산재발생을 통해 추정해 본 산업재해 실태는 열악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작업조건인 내국인 산재 취약계층보다 더 높은 산재발생율을 보이는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 취약성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것을 재생산하는 법적, 제도적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한 분석틀로는 인지적 균형이론을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은 2005년 1월에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의 노말렉산 노출로 인한 다발성 말초신경염 발생 사건과 현재의 산업안전보건제도와 관리체계이다. 우선, 노말렉산 노출에 대한 사례연구는 이주 노동자들이 유기용제에 폭로된 과정에 대해 산업역학적으로 평가하고 언론과 주무기관의 대응상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산업재해가 일어난 원인에 대하여 외생적 차원에서 제도를, 내생적 차원에서 노동조건을 검토하였다. 특히,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이 될 수 없는지를 분석하였다.

산업역학적으로 평가한 노말렉산 노출사건은 해당 노동자들이 적절한 국소배기장치 없이 일정 기간 노말렉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었다. 특히 그 당사자들이 이주 노동자라는 점에서 당시 언론의 비판은 매우 거세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은 적절한 방향을 찾지 못하였고 산재발생률은 그 이후로도 감소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작동과정을 따라 미시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모니터링 체계가 작업병에 대한 적절한 검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CBT 이론을 적용한 결과, 당사자들의 갈등 관계는 이러한 제도의 효과적 작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주 노동자의 경우 그들의 법적 지위가 특수검진 등에서 그들을 배제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내국인 산재 취약계층보다 더 많은 산재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 노동자의 노동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이들을 산재 취약계층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내로 편입시킨 상태에서 이를 개선하고, 그들의 노동조건인 영세 제조업체와 건설업에 대한 설비개선을 돕고 완화된 규제를 복원하며, 산재보험 급여를 이주 노동자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구정비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제언들은 CBT 이론으로 볼 때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운영을 유효하고 정당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목 차

제1장 서론	7
1. 연구 목적	9
2. 이론적 배경	10
3. 연구 대상	12
1) 이주 노동자	13
2) 노동권과 건강권	13
3)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제도	15
4. 분석틀	20
제2장 본론	23
1. 분석 : 사례연구	30
1) 노말핵산 노출 사건에 대한 산업역학적 평가	32
2. 진단 : 원인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37
1) 원인에 대한 진단 : 2002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38
2) 외생적 차원의 해결방안 : 법적·제도적 접근	39
3) 내생적 차원의 해결방안 : 노동조건의 문제	42
① 산업보건의 측면	48
②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물질 관리체계	49
4) 소결 : 이주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50
제3장 결론	62
1. 이주 노동자의 노동건강권	63
2.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64
참고문헌	69
보 론 1) 2004년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분석	74
2) 2004년도 이주 노동자 재해현황	76
참고자료 1) 유해물질의 분류 및 관리체계	79
2) 이주 노동자용 교육자료의 연도별 개발현황 ..	82

목 차

■ 그림목차

- 1) 재해자수와 재해율 추이16
- 2) 재해율, 사망만인율, 강도율 추이18
- 3) 산업안전보건 취약계층의 이념적 범주19
- 4) 인지적 균형 이론(CBT)을 통한 관계분석21
- 5) CBT 이론을 적용한 이주 노동자의 노동건강권 개선틀 ...23
- 6) 노동자 업무상 질병 및 이주 노동자 산재발생추이27
- 7) 지급년도별, 취업구분별 산재 보험급여 지급현황28
- 8) 이주 노동자 산재보상 현황29
- 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처리인원과 조치현황60
- 1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형사공판사건 재판 인원수61

■ 표목차

- 1) 2000년도 주요국가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17
- 2) 이주 노동자들의 국적별, 성별, 연령 및 체류기간별 분포 ...25
- 3) 이주 노동자들의 근로실태26
- 4) 산재경험률 및 산재보상 현황26
- 5)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와 이주 노동자 실태조사 비교52
- 6)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현황55
- 7)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와 그에 따른 영향57
- 8) 주요국 산업재해 통계 및 산출현황66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통해 살펴본 노동건강권과 안전보건제도

정민수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2005년 1월에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¹⁾ 8명의 노말렉산²⁾ 노출로 인한 다발성 말초신경염 발생 사건을 통하여 이주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이주 노동자의 산재사망자는 3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부상자와 작업 관련성 질병자도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한겨레, 2004/10/22 8면).³⁾ 특히 이들의 경우 전체 산업재해 가운데 절반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생긴 재해가 전체의 93% 이상을 차지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실적”을 보더라도 점검 대상업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불법 파견근로, 노동법위반으로 지적당했는데, 특히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전체 적발내용의 70%에 달했다.⁴⁾ 이것은 이주 노동자의 ‘노동건강권’⁵⁾과

- 1) 본 연구에서의 이주 노동자는 일반적인 의미의 ‘이주 노동자’를 의미하며, 특히 영세 제조업종과 건설업종에서 근로하는 이주 노동자를 의미한다. 자세한 논의는 3항 1절을 참조.
- 2) 노말렉산(n-Hexane)은 공업용 세척제나 타이어 접착제의 소재로 쓰이는 화학물질로 다발성 신경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1999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노말렉산 사용 작업장은 전국 367곳에 노동자수는 2,600여명에 달했다.
- 3) 현재 국내의 산업재해 사망자 자료는 노동부에서 관리하며 산업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생성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의 현황도 따로 집계되고 있으나 모두 비공개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담당 기관에서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지면화되지 않는 자료가 일부 이용되었다.
- 4) 이주 노동자 관련 산재통계는 수집이 매우 어려운 관계로 위의 통계수치는 한겨레 기사에 인용된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 자료와 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통계를 참조로 해서 산술적으로 추정했음을 밝혀둔다. 단,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2005년도에는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문제되었는데 그때 공개된 2004년도 이주노동자 산재 현황자료는 <보론>에서 다루었다.
- 5)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노동건강권’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내외국인의 차별없이 작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노말렉산 노출사건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차별(social discrimination)과 맞물려 2005년 당시 1~2개월 동안 모든 신문의 사회면에서 주요기사로 다루어졌다. 이것은 산업재해 문제가 극히 일부의 언론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주제였기에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와 산업안전보건제도,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위험한 작업장에 대하여 어떤 분석과 재발을 막는 해결방안이 채 나오기도 전에 산업재해, 특히 이주 노동자의 이중적 배제(double exclusion)⁶⁾는 잊혀졌다.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률이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라는 한 기사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경향신문, 2007/7/30 15면).⁷⁾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된 이주 노동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산업재해(industrial accident)를 통해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구조적 접근이라는 것은 “사회적 파라미터들의 분포의 형태”(Blau, 1974)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의 유의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주 노동자는 어떻게 산업재해 위험 요인(risk factor)에 노출되며, 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ceteris paribus)에서도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큰 산재사망율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건

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 착안하여 제안한 개념이다. 즉, 본 연구에서 범주화하는 산업현장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통일된 권리 개념으로 ‘노동건강권’을 제안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연대’를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 B를 참조.

- 6)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볼때 얼마나 더 안전한 작업조건을 갖추고 규정에 맞는 작업공정을 준수하느냐에 따라 발생률의 차이가 난다. 그런 점에서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세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는 1차적으로 산업안전에서 배제된다. 그런데, 산재 취약계층에는 개개인들이 가진 특성에 따라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여성, 고령, 장애, 이주 노동자가 그런 경우이다. 다수의 이주 노동자는 1차적으로 배제된 영세 작업장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이중 배제의 상황에 놓여있고, 그것이 그들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더 높게 만드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물리적 조건과 인적 조건에 따른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정민수 외(2007)를 참조.
- 7) 기사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해 특성과 개선과제”(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동자 1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률은 2006년 기준으로 1.14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 0.30명, 독일 0.25명, 미국 0.52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리고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전년 대비 7,000억원 가량 증가한 15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50명 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자 수가 6만6072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73.5%를 차지했으며, 산재 다발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의 60% 이상을 보였다. 사고성 재해의 78.0%는 감김이나 끼임, 추락, 충돌, 낙하 등 재래형 사고로 분석됐다. 이러한 경향은 199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개선되지 않는 양상이다.

강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연구방법은 노말렉산 사건에 대한 산업역학적 평가와 제도 및 법률분석, 정치경제학적 고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1. 연구 목적

법무부(2002)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2월 당시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 노동자(이주 노동자)는 약 36만 2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정식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는 33,697(9.2%)명, 산업기술연수생은 39,661(11%), 불법취업 노동자(불법체류 노동자)⁸⁾는 289,239(79.8%)로 집계되었는데, 실제로 불법취업 노동자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⁹⁾ 산업연수생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잦고 불법 취업자는 영세사업장에서 단속을 피해야 하며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각종 인권문제, 특히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이주 배경, 즉 ‘흡입 요인(pull factor)’의 핵심인 산업현장과 그 안의 인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주 노동자의 유입배경이 ‘임금’ 및 ‘노동시장’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러한 1차 요인을 중심으로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 노동자 가운데 다수를 이루고 있는 불법취업 노동자와 그들이 근로하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건강권’을 통한 ‘소수자 인권 문제와 그 권리 구제’(국가인권위원회, 2006)를 다룰 것이다.

이들 영세사업장은 산재가 다발하며, 각종 직업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¹⁰⁾ 또한, 불법취업 노동자는

8) 이하 본 연구에서는 ‘undocumented workers’를 불법취업 노동자(미등록 노동자)로 통일하였다. 이것은 인용문헌에서 사용된 개념과의 통일을 위한 것이나 형평적인 번역은 아니다.

9) IMF 이후의 이주 노동자 증가 추세는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10)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용역 연구보고서(2002)에 따르면 97년 당시 반월, 시화공단의 이주 노동자 산업재해현황에서 산업연수생은 33.1, 불법취업 노동자는 24.2의 도수율을 나타냈다. 이것은 97년 당시 전체 산업에 대한 도수율의 9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또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재해율 역시 산업연수생이 8.6%, 불법취업 노동자가 7.4%로 조사되어 전국 평균치의 8배에 달했다. 여기서 도수율이란 산업재해의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근로시간 합계 백만 시간당의 재해발생건수이다. $\text{도수율} = (\text{재해발생건수} / \text{연근로자 근로총시간수}) \times 1,000,000$. 반면에, 강도율은 재해의 경중, 즉 강도를 말하는 나타내는 척도로서 연근로시간 일천 시간당 재해에 의해 잃어버린 일수를 말한다. $\text{강도율} = (\text{근로손실일수} / \text{연근로자 근로총시간수}) \times 1,000$.

산재나 직업병이 발생하더라도 그들의 신분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¹¹⁾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 첫째, 노말핵산 사건의 발생과 제도의 개선 없는 종결이다. 둘째, 이주 노동자의 인권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연구의 부족이다. 셋째, 이주 노동자와 더불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의 부족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주 노동자 가운데 불법취업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의 실태를 살펴보고, 1차적으로 ‘이주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의 문제를 논의하고 2차적으로 영세사업장의 국내 산재취약 노동자와 이들의 같은 지위를 연구하려고 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상의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사전에 방적인 제도적 운용과 정기적인 작업환경 실태 파악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와 담당기관 용역사업의 한계를 알아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이론적 틀과 법적, 제도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의 내국인 노동자 1,500만명과 40만명에 달하는 이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건강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짚어볼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론적 배경이 요청된다. 첫째는 전지구적 노동력 이주의 정치경제학적 원인이며, 둘째는 산업재해 발생의 사회경제적 원인이다.

우선 국제적인 이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이론으로는 배출-흡인이론(pull-push theory)과 세계체계론(world system theory)이 있다(Massey et al., 1993; 설동훈, 1996; 이해경, 1998). 배출-흡인이론에 따르면 개인 혹은 가족의 이주는 두 지역간의 임금 및 고용기회의 차이에 대한 사적인 해결책으로 이주가

11) 최재욱(1998)에 따르면, IMF이후 6만여명의 불법취업 이주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산재발생율을 국내 중소기업의 3% 수준으로만 잡아도 산재환자는 연간 1천 6백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산재보상신청 건수는 이의 1/5에도 미치지 못하여 산재보상신청기피 현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내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다수의 노동자가 산재를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숨기거나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산재율을 수치상으로만 낮추려는 제도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선택되면서 일어난다. 이 이론은 이주가 발생하는 본국에서 이주자들을 내보내는 요인들과 유입국에서 이주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하며, 특히 이주가 유입국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을 고착시킨다고 본다. 반면 세계체계론은 배출-흡인이론보다 정치경제학적 구조를 고려하면서, 자본주의가 주변부로 확장하는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자본의 흐름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노동의 이주가 일어나게 된다고 가정한다. 자본이 적은 비용을 찾아서 주변부로 이동하는 동안 주변부의 인구가 더 높은 임금을 찾아 중심부로 이동한다는 것이다(Massey et al. 1993; 설동훈 1996).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국제적 사회 이동(social mobility)이 노동 유연화를 야기하여 이주 노동의 탈숙련화(deskillized)를 이끈다는 점이다. 탈숙련화된 노동자는 단순 임노동자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더 많은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그들에게 부종(附從)하게 된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되면서 그들을 수용하는 양식은 주변화된 방법으로만 재생산(reproduction)된다(Massey et al. 1993; 석현호 2003).

다음으로 산업재해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 특별하게 정립된 것이 없다. 보건학 분야에서 위험 요인 역학(risk factor epidemiology)이 점차 사회 역학(social epidemiology)으로 옮겨가면서 개인이나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socioeconomic position)를 주목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연구를 통합하는 이론들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정민수 외, 2007). 다만,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의 차원에서 이를 논의하는 개념만이 있을 뿐이다(Whitehead, 1992). 산업재해분석이란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기간에 발생한 각종 재해에 관한 원인 및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과 재해예방을 위해 자료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는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1991년부터 노동부의 예규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매년 산업재해의 현황을 업종별, 규모별, 원인별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분석은 사망자료의 수집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산재사망의 물리적 조건들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물리적 조건에서도 산재사망자 사이의 불균등한 분포는 존재한다.¹²⁾ 산업재해의

12) 물리적 조건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위치지표를 강조하는 입장을 사회역학적으로 설명한다면 고위험군 전략(high-risk strategy)에서 집단기반전략(population-based strategy)으로의 전환

발생요인은 직접 요인과 간접 요인으로 분류된다. 직접 요인은 다시 설비와 환경 등의 불완전한 상태에 기인하는 물적 요인과 작업과정에서의 불완전한 행동에 의해 유발되는 인간의 육체적, 심리적 요소인 인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반면에, 간접 요인은 이러한 직접요인에 의해 연쇄적으로 야기된 위험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물리적 요인과 화학적 요인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전자는 주로 안전과 관련한 산재를, 후자는 주로 업무상 질병 관련 산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가 평균 이상으로 다발하는 노동자 집단의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해서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y)의 문제들을 가지고 접근한다(손미아, 2001, 2002, 2005; Khang et al., 2004; Aday, 2001; Marmot et al., 1978).¹³⁾

3. 연구대상

우리의 연구대상은 국내에서 노동(勞動)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인데, 이들에 대한 서베이나 심층면접을 직접 시행하기 보다는 기존 연구의 대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과연 이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건강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 인권보다 더 기본이 되는 신체와 생명에 대한 정당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국가인권위, 2004 : 3장). 특히 노말핵산 노출 사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산업역학적으로 재해가 어떻게 발생하며,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언론과 정부, 그리고 제도가 반응하는 양식이 어떤 것인가를 사회과학적으로 함께 고찰한다. 산업재해는 모든 인권 연구에 대해 기초가 되는 가장 실체적인(tangible) 것이며, 또한 그 침해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는 부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건학적인 실증성을 바탕으로 하되, 법과 사회 및 제도의 영역에서 작업장의 근로조건이 이주 노동자에게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을 피하는 것이라고 하겠다(Berkman et al, 2000).

- 13)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문제가 특별히 산업보건이나 노동건강권의 문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것보다 그들의 일반적 인권침해가 더 부각되기 쉬우며 또한 그들의 노동조건이 은폐되어 있었던 이유에 기인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들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한국경제, 2004/9/23).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수준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며 이에 따라 내국인들 중의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는 더 심각한 실정이다. 그들이 내국인 취약계층과 동일하게 산재사망의 여러 위험요인에 폭로되나 이에 대해 묵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1) 이주 노동자

일반적으로 ‘이주 노동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즉 국적법 제 2조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주 노동자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하나는 ‘외국인’이라는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라는 요소이다. 즉, 외국인이란 내국인과의 구별로서 이것은 국적법에 따르고, 근로자란 외국인 중에서 근로자와 기타의 자에 대한 구별로서 이것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결정된다.¹⁴⁾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는 출입국 관리법상의 체류자격 유무에 따라 크게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로 분류할 수 있고, “합법체류자”는 다시 전문기술인력,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산업기술연수생, 연수취업자 등으로 “불법체류자”는 자격 외 취업자, 불법체류취업자, 불법입국자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최대곤 등, 2001).¹⁵⁾

2) 노동권과 건강권

인권은 보통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으로 구분되는데,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의 권리는 사회권의 영역에 포함된다. 여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노동건강권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다소 길지만 추려서 옮겨본다.

① 국제연합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 사회권 규약의 2조 1항에 따르면, “규약의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출신국 등에 의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우리나라는 1990년 4월 10일에 비준함¹⁶⁾)

14) 각종 법률 및 정부 보고서에서는 근로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어가 노동자의 본질적 의미를 은폐한다는 지적에 따라 인용이 아닌 일반서술의 경우에는 노동자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15) 이주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그 개념상의 차별 문제로 인하여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관 통계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용어의 일치를 위해 인용자료의 용어를 따랐다. 미등록노동자 등 학계와 이주 노동자들에게 더 선호되는 용어가 있음을 밝혀둔다.

16) 우리나라 헌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②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규약의 당사국은) 인간이나 인간의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모든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그러한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약 내용으로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978년 12월 5일에 비준).
- ③ UN 이주 노동자 권리협약(2003년 4월 1일 발효)
이는 포괄적으로 불법체류를 포함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와 긴급의료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고용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20개 국가가 비준한 상태인데, 주로 송출국에서 비준하였고 고용국에서는 비준한 국가가 없다. 그러나 전지구적으로 비준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 ④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이주 노동자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
19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체결된 이 협약은 제1조에서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보상에 관한 대우를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3월 29일자로 비준).

헌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대한 규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995년 9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라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의 사용주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이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된다. 그리고, 산재보상보험법 제4조에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와 모든 이주 노동자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주 노동자가 산재요양신청을 하면 일반적인 심사 및 승인절차를 거쳐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 그 결과를 법무부 출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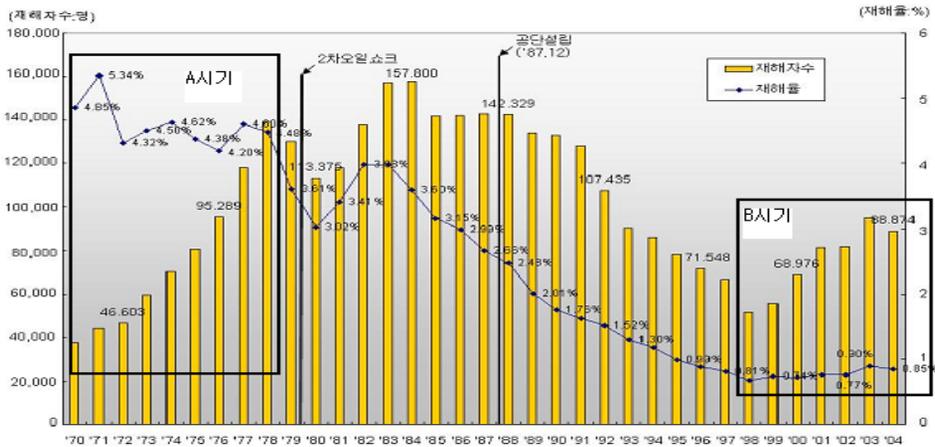
관리소에 신고하고 있어서 실제로 형식적인 법에 그칠 소지가 많다. 이런 행정 처리는 결과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경우 산재를 당해도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 이것은 위의 ILO 협약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적용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규정하여 산업연수생을 제외한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 이것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협약과 배치된다. 결국, 불법체류 노동자는 건강보험에는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산재보험에서는 현실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¹⁷⁾

3)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제도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로 인해 하루에 8명씩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은 사회적 이슈가 잘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루에 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살펴보자.

17)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영세 사업주들에 의해 기피되고 있음은 근본적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이라는 제도적 문제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사용자와의 별도 계약이 국내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 보장을 할 수 있으면, 의무가입 적용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겨레, 2007/7/10 10면). 그러나 이것은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 전문인력들의 이중 부담만을 고려한 정책이다. 고용허가제가 처음 시행된 2004년에는 37.7%에 지나지 않았던 보험 가입률은, 2006년 강제가입이 도입되면서 59.9%까지 올랐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취업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제조업 공장 등에서 일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회사는 건강보험 강제가입 대신, 고용인이 아플 때 의료비를 따로 지급하는 등의 별도 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아플 때마다 병원비를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산업재해와 맞물려 있다.

그림 1. 재해자수와 재해율 추이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www.kosha.or.kr, 일부 보완)

<그림1>은 1970년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재해자수와 재해율을 보여주고 있다. 80년대 세계 1위에 있던 한국의 산재율은 90년대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것은 80년대 노동조합의 건설과 노동자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점차 재해율이 감소하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이지, 비단 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담당기관의 성과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더욱이 A시기와 B시기를 비교해보면, A시기는 재해자수는 적는데 재해율은 많은 산업규모가 작은 후진국형 모델이지만, B시기는 재해율은 적는데 재해자수는 많은 기형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재통계가 산재보상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다는 한계 때문에 실제의 산재현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오히려 산업구성의 변화, 산재보험의 포괄범위, 노동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의료보험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재해율을 낮추는데 급급한 행정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3차 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의료보험이 산재보험을 대체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비정규 노동자 안전보건실태조사’(한국산업안전공단, 2001)라는 자료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 노동자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드는 경우 18%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이주 노동자의 산재처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공장처리율이 70~80%에 가깝다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 노동

자에게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가 이주 노동자의 문제와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에서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 80년대 이후에 추락사와 약물중독사와 같은 재래적 산재형태가 감소하고 인구 전반의 자연사망율이 저하되면서 일반질병에 의한 사망률도 감소했는데,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는 88년 직업병이 이슈화된 이후에 법안의 개정은 있어왔지만 정책사업은 물량위주의 단기적인 것들로만 채워졌다. 그 결과 2005년 당시의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산재사망율이 약 2배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게 되었다.¹⁸⁾ 아래의 표는 2000년도 주요국가의 재해율과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크기는 20배에서 작게는 5배에 이르는 범위에서 더 높은 사망만인율을 보이고 있다<표1>.

표 1. 2000년도 주요국가의 재해율과(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재해율(%)	0.73	2.50	0.67	0.28	4.00
사망만인율	1.49	0.36	0.07	0.35	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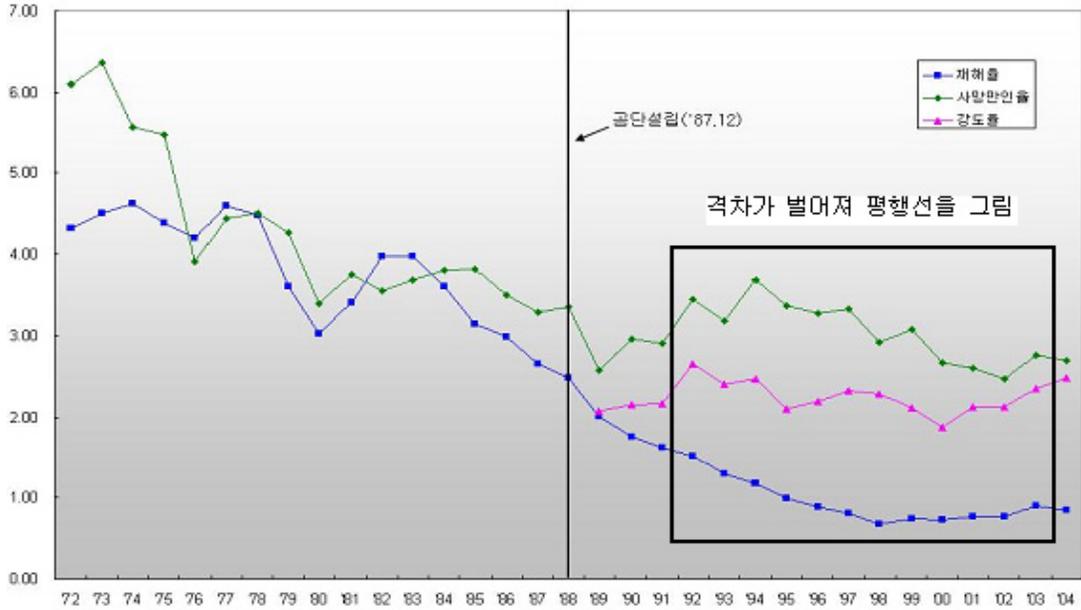
출처 : 노동부(www.molab.go.kr)

각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평면적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된 사례만을 집계한 자료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잘 적용받지 못하는 질환, 예를 들어 직업성 암(4천여명 추산), 직업성 호흡기 질환(2천여명 추산) 등을 포함하면 매년 산재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은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보건안전청에 따르면, 70%의 산재사망은 예방이 가능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재해율, 사망만인율, 강도율의 추세 역시 <그림2>와 같이 재해율은 1% 내로 감소했으나, 사망만인율과 강도율은 떨어지지 않고 수평을 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산업안전 예방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설립 이후에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노동계의 주장처럼 현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동부와 담당 공공기관의 사업이 예방보다는 산재은폐를 부추

18) 이 자료는 2005년 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캠페인 문안에 등장한다.

긴다는 점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관련 기관에서도 일부 수궁하는 이러한 점은 제도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사업이 재해율과 재해자에 대한 수치와 예방실적에 대한 물량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그림 2. 재해율, 사망만인율, 강도율 추이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www.kosha.or.kr, 일부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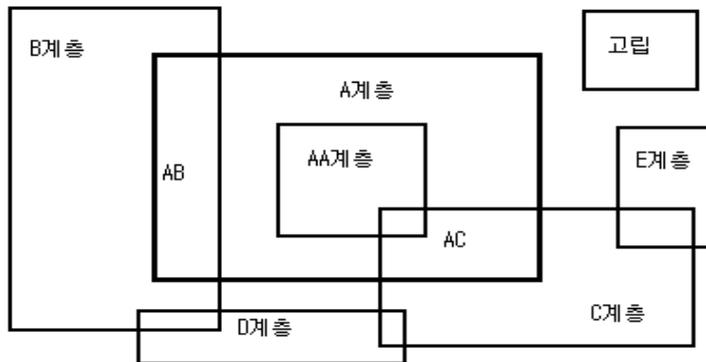
결국,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관리상, 운용상의 문제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주 노동자의 노동건강권 문제가 접근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주 노동자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서 어느 부분에 포함되어야 할까?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취업 노동자라는 점이 문제가 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그들도 엄연히 노동건강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순적 지위를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은 비단 내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권에 관한 문제이다.

아래의 <그림3>은 내부 노동 시장(internal labor market) 이론에 착안하여, 작업 환경에 따라 상이한 다중계층을 도해한 것이다.²⁰⁾ 우선 그림 가운데의 A계층은

19) 산재통계의 인권관련 문제는 국가인권위(2005 : 3.1.2)를 참조.

내국인 정규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관리를 받고 있는 사무직 혹은 기술직이다. 이들에게도 산재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들은 유해위험물질에 대해 충분한 안전보호구를 지급받고, 규정을 지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AA계층은 대기업 사무직 등으로 산재에 대한 노출이 현격히 작은 그룹을 말한다. 물론 A계층에게도 각종 직업병이나 뇌심혈관계,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여타 계층의 사업장에 비해 안정적인 내근이 많고 물리적 유해요인이나 화학적 유해요인이 현격히 적기 때문에 이들은 산업안전보건에서 ‘안전’의 기준에 든다고 하겠다.

그림 3. 산업안전보건 취약계층의 이념적 범주



그러나 이 이외의 계층은 모두 각각의 위험요인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계층은 비정규직 노동자, C계층은 이주 노동자, D계층은 노년·여성·장애 노동자, E계층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그리고 고립계층은 노동시장에 포함되지 않으나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연소 아르바이트생. 이런 다양한 계층은 또 작업장의 형태에 따라 50인 미만 영세제조업종이나 건설업종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계층에 따라 구분되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차별적인 보호를 극복하기 위해 A계층 바깥의 모든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묶을 것을 제안하며, 특히 그들 가운데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기 쉬운 사망재해 및 직업병 다발 업종에 대한 집중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²¹⁾

20)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분절화(articulation) 현상에 대한 최신의 논의로는 톨리와 톨리(Tilly and Tilly, 1998)를 참조.

4.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났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제안한다. 첫째는 하이더의 균형이론을 응용한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표준화된 관계모형의 개발이다. 둘째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적 차원의 분류틀이다. 즉, 첫째가 형식적 분류라면, 둘째는 내용적 분류이다. 셋째는 이 둘을 결합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이 이주 노동자에게 실현되기 위한 도식이다. 각각의 관계가 정당하면서 합법적이 되고 그들의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이 수반된다면, 이들에 대한 노동건강권의 침해는 사라질 것이고 건전하고 평등한 인권이 실현될 것이다.

가설1 : 이주 노동자의 산재는 내국인 산재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범주에 포함된다.

검증) : 노말렉산 노출 사건에 대한 산업역학적 평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영세 사업장의 산재취약계층 노동조건에 대한 분석

가설2 : 이주 노동자와 산재 취약계층의 노동조건은 사업주와 정부 및 제도라는 3자 관계틀에서 조정된다.

검증) :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제도의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가설3 : 가설2의 인지적 관계는 합법하고 정당한 관계틀로만 개선된다.

검증) :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부당, 불법 요인과 갈등적 관계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조정하는 해결방안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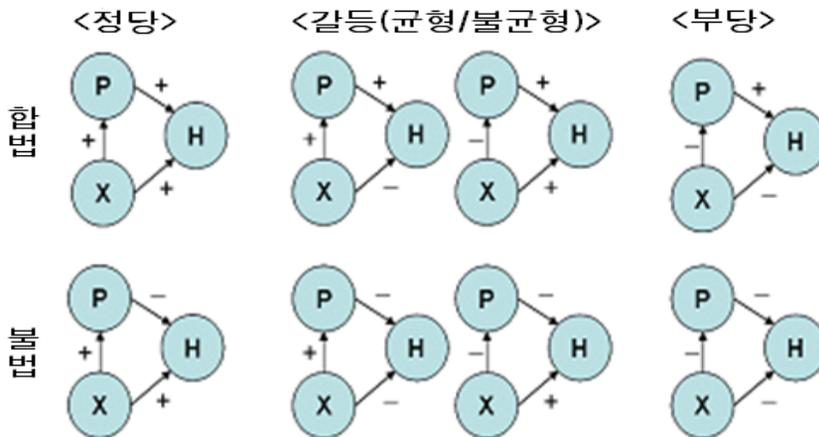
하이더(Heider)의 인지적 균형이론(Cognitive Balance Theory: CBT)이란 여러 인지요소들이 스트레스 없이 존재할 수 없을 때 긴장이 생기고, 결국 인지구조를 바꿔 균형상태를 이루려한다는 이론이다. 즉, 이것은 하나의 상황을 지각하는 P, P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어떤 사람 O, 그리고 P와 O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제3의 대상(또는 사람) X의 삼자로 구성된 삼원구조로 구성된다(한규석, 2005).

이 글에서는 하이더의 이론을 응용하여 인지적 균형관계를 ‘합법/불법’의 관

21) 취약계층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2004년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관)를 분석한 본 연구의 보론을 참조하기 바란다.

계, 혹은 ‘정당/부당’의 관계로 나누고자 한다<그림4>. 우선 ‘이주 노동자(X)’가 ‘사업주(P)’와 ‘정부 및 제도(H)’와 맺는 관계에 따라 8가지 모델을 분류하였다. 그들의 체류신분 상태가 합법이나 불법이나 따라 산업연수생과 불법취업 노동자가 구분되며, 그들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보호상태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정당하나 부당하나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합법/불법’ 여부에 따라 P-H의 관계는 + 혹은 -로 고정된다. 즉, +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와 법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맺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일 경우에는 불법취업 노동자와 계약을 맺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술하였다시피 어느 경우이든지 사업주와 노동자의 근로계약은 성립하며, 그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어야 한다.

그림 4. 인지적 균형 이론(CBT)을 통한 관계분석†



P:사업주, H:정부/제도, X:이주노동자 (+/-는 친화성 여부)

- † “합법”모형의 좌로부터 A, B, C, D라고, “불법”모형의 좌로부터 E, F, G, H라고 모델명을 붙임.
- ※ CBT 모델은 불법/부당으로의 균형점 이동 요인이 이주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고착시키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기존의 언어/신체적 폭력, 임금체불, 인종차별 등의 문제들이 가진 이항 관계(binary relation)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한편, ‘정당/부당’ 여부에 따라 X가 P, H와 맺는 관계는 + 혹은 -로 고정된다. 두 관계가 모두 +이면, 좌측의 모델인 A 혹은 E가 된다.²²⁾ 반대로, 두 관계가

22) 여기서 정당하다, 부당하는 것은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P-H-X의 관계가 산업안전보건상의 노동건강권을 지켜줄 정도의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갈등(균형/불균형)의 차원은 P-X나 H-X의 두 관계가 서로 상이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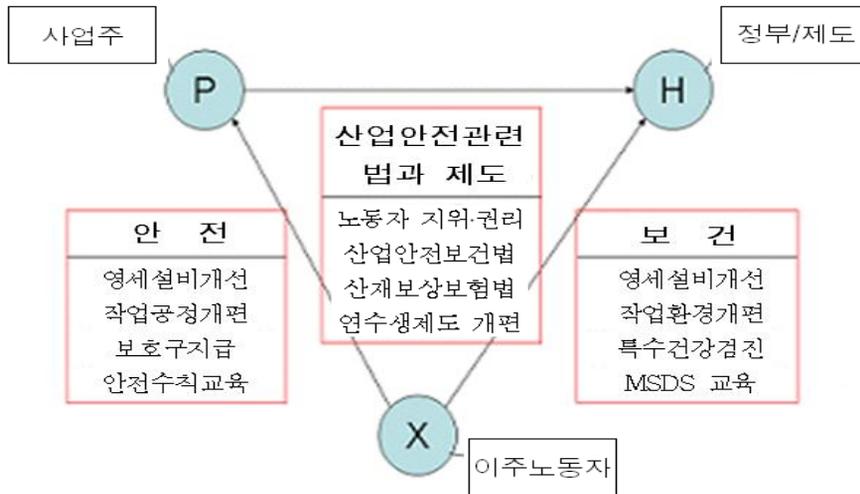
모두 -이면, 우측의 세로 모델인 D 혹은 H가 된다. 가운데 있는 갈등모델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착취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으로 B 같은 경우는 산업연수생이 이탈하는 경우이고, C같은 경우는 산업연수생이 착취당하는 경우이다. 또한 G같은 경우는 불법취업 노동자가 정부 이외의 시민단체로부터 보호는 받지만, 사업주에게 착취당하는 경우이고, F같은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사업주가 불법취업 노동자를 오히려 보호해주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구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를 수용했을 경우, 합법적이고 정당한 A유형이 P-H-X 3가 관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A유형과 그 이외의 합법적 유형인 B, C, D유형 모두 불법으로의 이동 유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단이며, 이주 노동자의 강력한 계속근로 선호현상이다. 그러므로 제도적 보장이 이주 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동기와 모순이 있다. 이런 점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다. 그런데, 불법적 근로라도 정당하게 운용될 수는 있다. A와 E유형처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보호는 두 유형에 모두 적용되며, 따라서 A와 E유형에서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는 인종적 차별이나 신분상의 지위문제로 P와 H로부터 약자의 위치에 놓이기 쉽다. 사업주(P)는 그들에 대한 부당한 근로조건, 임금체불, 인종차별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하고 있으며, 정부(H)는 그들에 대해 내국인 노동자 보호를 암묵적으로 우선시하여 보이지 않는 차별을 두고 있다. 사실 제도상으로도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노동부는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이 문제로 갈등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불법취업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유인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법·부당한 H유형이 이주 노동자, 특히 불법취업 노동자에게 만연하게 되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인 <그림5>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건강권을 구성하고 있는 관계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도와주며, 아울러 각 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항목을 도식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위의 8가지 관계 유형으로 돌아가서 진단과 처방을 손쉽게 하여 CBT의 균형-불균형의 동적 메커니즘에 따라 이주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영역을 떠나 음지화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다.²³⁾

와 C는 각기 A나 D의 차원으로 이동하려고 하며, F와 G는 음지화되어 불법적인 인권침해가 된다.

그림 5. CBT 이론을 적용한 이주 노동자의 노동건강권 개선틀



제2장 본 론

산업재해(industrial accident)란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최종결과인 인명의 상해나 재산상 손실을 지적하는 개념이다. 즉, 재해는 사고와 사고의 결과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데, 노동분야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명에 대한 손상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재해는 “사람이 물체나 물질 또는 타인과 접촉하였거나 각종의 물체 및 작업조건에 놓여짐으로써, 또는 사람의 동작으로 인하여 사람의 상해를 동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²³⁾ 반면에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 Health Act)에서는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축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23) 인지적 균형 이론(CBT; cognitive balance theory)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한규석(2005), 홍대식(2004)을 참조. 특히 이것의 삼원구조 모델에 대하여는 정지원과 차재호(1998)을 참조.

24) 반면에 미국의 OSHA에서는 “작업으로 인한 상해 또는 작업 환경에 노출된 결과에 의해 발생된 절상·골절·염좌·절단 등 모든 상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장의 사망외인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 정의가 더 적합하다.

재해의 정도가 심하여 특별히 관리하는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²⁵⁾

그렇다면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양상과 일반적 특성은 어떨까? 우선 이주 노동자들의 국적에 있어서는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계통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국하는 노동자들의 국가별 차이가 있으며 중국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남자 노동자들이 80% 이상이었다.

연령의 경우 20대(63.8%~76.6%), 30대(21.9%~32.7%)였으나 최근들어 30대가 약간 증가함을 알 수 있어 장기체류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체류기간의 경우 94년도에는 모든 노동자가 1년 미만이었으나 2001년에는 4년 이상이 21%나 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2>는 최근 10년 동안 이주 노동자를 조사한 대표적 연구 3건을 5년 단위로 뽑아본 것이다. 각기 부분적 표집자료이고 측정기준이 틀리다고 하지만, 국적이거나 연령, 체류기간에 상이함이 커서 모수(parameter)를 적절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추이는 90년대부터 현재까지 IMF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주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각각의 속성에 대한 체계적인 표집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로, 2002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주 노동자는 336,955명으로

25) 산업안전공단 2004년 산업재해원인조사 중 업무상 사고 부분을 보면, 1) 주요 산업은 제조업 41.4%, 건설업 23.3%로 2개 산업의 재해발생이 전체의 약 64.7%를 차지하였으며, 그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8.9%,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주요 발생형태는 전도·전복 20.8%, 충돌·접촉 19.3%, 협착·감김 19.2%, 추락 15.4% 등의 순서였다. 3) 주요 기인물은 건축·구조물 표면 29.6%, 설비·기계 24.3%, 부품·부속물·재료 15.8%, 용기·용품·가구·기구 8.8%, 교통수단 8.0%, 휴대용·인력용 기계기구 7.2% 등이었다. 4) 주요 작업지역·공정은 저장·운송, 교통·보행지역 22.7%, 토목, 건축, 플랜트 공사지역·공정이 20.8%,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제조지역·공정이 17.5%, 사무, 서비스, 주거지역 15.1%, 특정제품 제조지역·공정 14.4% 등으로 나타났다. 5) 주요 작업내용은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 31.6%,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 20.7%,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 13.3%, 기계기구, 설비 설치·보전 작업 13.0% 등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의 산업재해원인조사 중 업무상 질병 부분)을 보면, 1) 주요 산업 분석 결과 광업 75.0%, 제조업 15.5%로 2개 산업의 유해인자 노출질환 발생이 전체의 약 90.5%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보건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2.6%, 건설업 1.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주요 직업형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7.4%, 단순 노무 종사자 8.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7.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3) 주요 질병의 종류로는 호흡기계, 신경계질환 등 전신성 질환 및 장애 92.1%,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환 등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5.3%, 중독, 외상성 합병증 등 외상성 손상 및 중독 2.0%, 신생물, 종양 및 암 0.6%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연수생 35,799명, 연수취업자 13,527명, 불법체류자 287,629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69,972명, 인도네시아가 24,117명, 태국이 22,028명, 필리핀이 21,992명이었다.

표 2. 이주 노동자들의 국적별, 성별, 연령 및 체류기간별 분포(단위 %)

		연구년도		
		1994 ¹⁾	1998 ²⁾	2003 ³⁾
저자		홍윤철 외	최재욱 외	석현호 외
학회지		대한산업의학회지 (1996. 8권 1호)	대한산업의학회지 (1999. 11권 1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2003. 05.)
국적	필리핀	36.8	38.6	19.0
	네팔	23.8	-	-
	방글라데시	4.9	12.6	cf) 베트남 19.8
	인도네시아	-	30.7	30.1
	인도	10.3	-	-
	파키스탄	10.3	1.2	-
	중국	-	10.2	16.4/14.7(조선족/한족)
남자		82.0	78.9	76.1
연령	20대	63.8	76.6	전체평균
	30대	27.0	21.9	28.2세
체류기간	1년 미만	100	13.7	평균 체류기간(개월)
	1년	-	42.7	전체 18.4
	2년	-	23.4	필리핀 28.0
	3년	-	12.0	베트남 18.0
	4년	-	8.3	중국 15.0
불법체류자(%)		-	-	전체평균 52.9

1) 홍윤철, 하은희. “이주 노동자의 근로실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1996; 8(1) : 1-14.

2) 최재욱, 김정아, 김해준, 박종태. “한국일부지역의 이주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산업보건관리실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1999; 11(1).

3) 석현호 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2003

이주노동자의 노동양태는 <표3>과 같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섬유 의복, 가죽제품, 제조업(이혜경, 1994), 그리고 체력소모가 많은 운반작업 및 3D업종에 집중(이욱정, 1994)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작업장의 집적(集積)이 특징이다. 또한 사

업장 규모에서도 30인 미만의 영내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임금에 대한 불만 외에도 고용주나 동료의 비인간적인 대우, 구타 등의 사내갈등이 있다는 것으로 (이윤심, 2000) 알려져 있다. 주된 업종은 기계장비, 조립금속, 고무/플라스틱 생산이었다(석현호 외, 2003). 다른 연구에서는 섬유·피복 제조업, 기계가공업, 1차금속 및 조립, 목재가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하은희 외, 2002).

표 3. 이주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산업연수생 대상,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업종 (통계청, 1998)	기계장비 12.9%	조립금속 12.5%	고무/플라스틱 10.7%
규모 (통계청, 1998)	5~9인 45.8%	10~19인 26.6%	20~49인 18.4%
고용동기 (석현호 외, 2003)	인력난 45.7%	값싼임금 41.0%	장시간 노동 4.8%

다음으로 이주 노동자의 건강실태 및 산업재해 실태는 <표4>와 같다. 이들은 산재근로자 중 산재보상 비적용 비율이 30%에 육박했고, 산재 후에 다니던 회사에 복귀하거나(53.6%~25.0%), 작업장을 옮기거나(7.1%~19.6%), 2001년 실직한 경우로(7.1%~42.9%) 실직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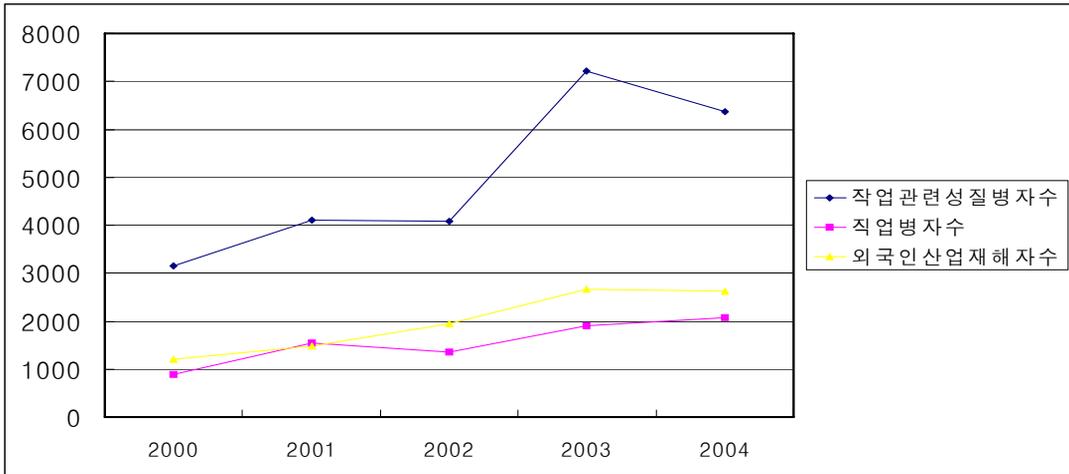
표 4. 산재경험률 및 산재보상 현황(단위, %)

산재근로자 중 산재보상 비적용		27.6%
지불자	산재보험	22.4
	회사	55.2
	근로자 자신	20.7
	기타	1.7
산재 후 복귀	다니던 회사 복귀	25.0
	작업장 옮김	19.6
	실직	42.9
	기타	12.5

* 산재보상 비적용은 산재보험 비적용과 사업주가 지불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말한다.
(출처 : 이승욱, 2002)

문제는 이주 노동자 산재발생의 시계열 추이(chronological trends)이다.

그림 6. 노동자 업무상 질병 및 이주 노동자 산재발생추이



※ 2004년 업무상 질병자와 이주 노동자 산업재해 수치는 각각 2004년 10월과 6월 기준 자료를 통해 추정된 수치임(출처 : 노동부)

<그림6>에 따르면 외국인 산업재해자수는 약 4년 동안 3배 정도 증가했으며, 특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노동부에 집계된 작업관련성 질병자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이주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자 수도 크게 증가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²⁶⁾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요인은 조사된 자료가 드문데, 이승욱(2002)의 연구는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내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중이거나, 치료경험이 있는 이주 노동자 중 산업연수생 22명, 불법취업 노동자 36명의 상담사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에서 적은 표본수의 한계는 있으나, 산업재해 발생요인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 연구에 따르면, 산업재해의 발생이유는 언어소통 미흡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58명 가운데 26명, 이하 분자/분모로 표기), 산재 발생요인은 절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43건/58건). 또한 재해 신체부위도 손가락이 가장 많았다(41건/58건)이는 조사대상 병원의 특정함에 기인하겠으나, 노말렉산과 같은 유기용제 폭로 이외에도 여전히 후진국형 재해인 절단재해가 이주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영세 제조업종에서 다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재해유형은 방호장치의 설비와 같은 시설개선으로 예방할 수 막을 수 있다. 위의 조사에서 이주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은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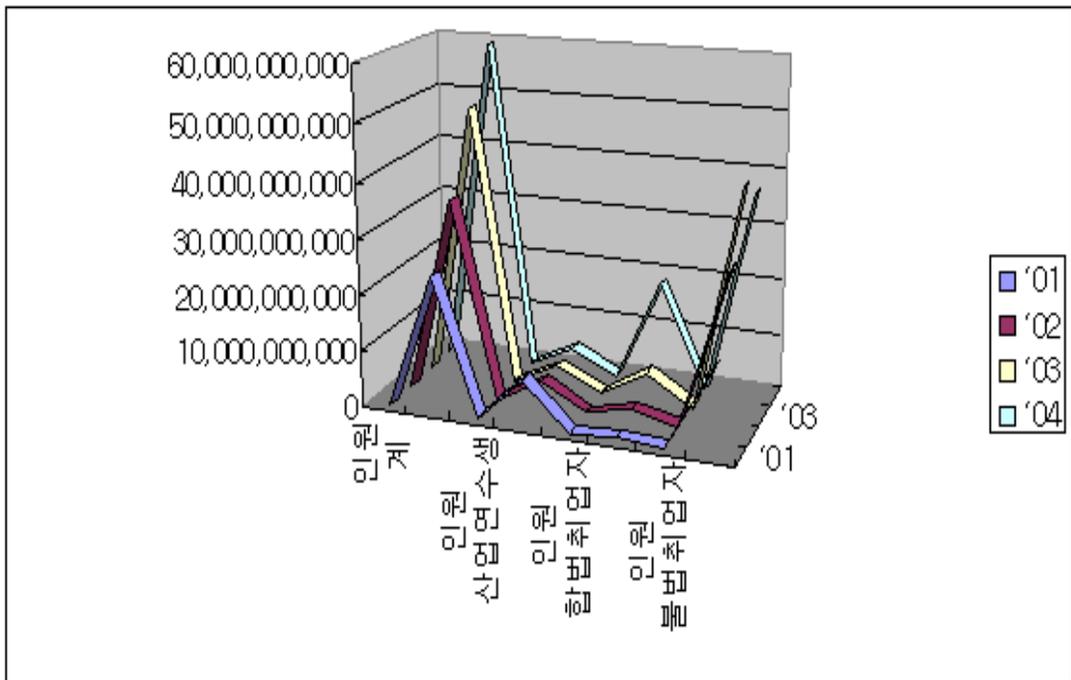
26) 본 연구에서 업무 관련성 질병에 더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것은 안전사고와 달리 일정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 사례분석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지 못한 실정이었는데, 교육 역시 이런 반복적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림 7. 2001~2004년의 지급년도별 취업구분별 산재 보험급여 지급현황

(단위: 명, 원)

구분	계		산업연수생		합법취업자		불법취업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01	2,074	24,093,494,670	950	8,052,854,540	95	689,155,080	1,029	15,351,485,050
'02	2,760	35,068,165,840	598	4,531,667,510	246	2,090,900,730	1,916	28,445,597,600
'03	3,790	49,334,579,530	514	4,108,573,090	573	5,054,455,350	2,703	40,171,551,090
'04	4,239	58,956,256,140	458	4,029,599,910	1,731	18,377,321,810	2,050	36,549,334,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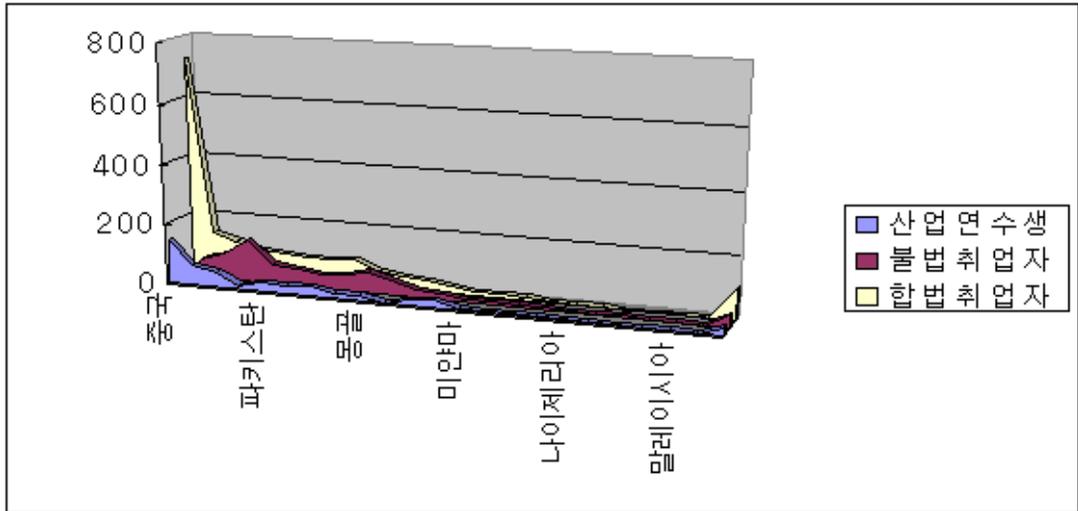


출처 : 근로복지공단(2004)

이상과 같이 살펴본 이주 노동자 산재현황을 산재보상금 지급의 추이와 이주 노동자의 취업구분별로 살펴보면 <그림7>과 같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금 지불 현황과 규모는 <그림8>과 같다.

그림 8. 이주 노동자 산재보상 현황

(단위: 명, 원)



국가별	계		산업연수생		합법취업자		불법취업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체국가	4,239	58,956,256,140	458	4,029,599,910	1,731	18,377,321,810	2,050	36,549,334,420
중국	2,117	38,462,798,780	142	1,687,446,080	722	10,012,335,600	1	26,763,017,100
인도네시아	266	1,992,450,880	60	324,299,080	137	890,444,660	69	777,707,140
베트남	250	1,972,965,230	47	335,045,710	112	660,451,810	91	977,467,710
방글라데시	244	2,371,998,670	12	93,354,540	89	751,677,770	143	1,526,966,360
파키스탄	181	1,729,817,890	30	386,899,160	84	681,800,190	67	661,118,540
우즈베키스탄	168	1,630,969,140	28	27,963,960	82	755,997,620	58	747,007,560
필리핀	160	1,489,341,760	30	204,794,810	83	713,022,980	47	571,523,970
태국	157	1,545,457,820	14	87,122,820	88	685,707,390	55	772,627,610
몽골	140	1,944,924,540	15	56,934,940	53	432,079,150	72	1,455,910,450
러시아	95	1,190,454,320	0	0	44	521,672,780	51	668,781,540
스리랑카	82	912,560,750	17	163,400,380	40	431,548,940	25	317,611,430
네팔	74	597,393,480	25	124,742,000	30	249,189,080	19	223,462,400
미얀마	30	257,723,940	6	118,465,830	13	89,185,260	11	50,072,850
이란	30	333,239,160	3	20,536,950	14	177,274,590	13	135,427,620
인도	24	283,429,390	1	16,242,810	13	157,522,600	10	109,663,980
가나	15	161,779,370	0	0	5	34,633,430	10	127,145,940
나이지리아	12	192,786,900	0	0	6	110,420,580	6	82,366,320
대만	9	28,295,390	1	3,496,580	6	9,251,050	2	15,547,760
페루	8	103,043,210	0	0	2	4,505,430	6	98,537,780
일본	3	12,338,900	0	0	3	12,338,900	0	0
말레이시아	3	47,129,690	1	1,350,530	1	4,892,770	1	40,886,390
모로코	2	12,619,110	0	0	1	7,799,940	1	4,819,170
기타	169	1,682,737,820	26	277,503,730	103	983,569,290	40	421,664,800

출처 : 근로복지공단(2004)

이에 따르면 산업재해의 추이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여 4년만에 두 배로 증가하였다. 특히 산업연수생은 그 수치가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나 합법취업자와 불법취업자와 같이 정규근로를 제공하는 단순 노동자(manual workers)는 2배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그림7>. 이러한 자료는 전체 내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자료와 일관성(consistency)이 없으므로 신뢰성은 낮다 하겠다. 그러나 해당 자료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여서 순수하게 산재승인이 난 경우만을 취급하였으므로 전체 산재는 이보다 5~10배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고에 기반하여 자료가 수집되기 때문에 발생에 기반한 전체 현황은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반면에 재해보상금 지급 현황에서는 합법취업자가 전체 이주 노동자의 국적 전반에 걸쳐 지급되었으며 그 금액도 가장 많았다<그림8>. 그리고 중국은 산업연수생과 합법취업자가, 파키스탄과 몽골은 상대적으로 불법취업자가 많은 급여를 받았다. 중국의 경우 전체 이주 노동자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의 신분이나 국적으로는 산업재해 발생의 특징을 찾아낼 수 없었다.²⁷⁾

지금까지 살펴본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 실태와 보상현황을 바탕으로 올 초에 발생한 노말렉산 집단 노출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산업위생학적, 산업의학적 평가를 살펴보자.

1. 분석 : 사례연구

노말렉산 사건이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은 “LCD작업장 유해용제 노출로 타이노동자가 집단으로 앓은뱅이병”(한겨레, 2005/01/13 1면)에 발병했다는 기사였다. 경기도 화성의 한 LCD공장에서 타이여성노동자 5명이 유기용제에 중독되어 ‘다발성 신경장애’ 판정을 받은 사건인데, 문제의 유기용제는 노말렉산(n-Hexane)으로 냄새와 색깔은 없지만, 독성을 지녀 세척제나 다른 공업용 접착

27) 위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인 관계로 모든 이주 노동자의 산재현황은 아니다. 따라서 <그림7>에 이주 노동자의 평균산재율을 곱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추정인원만큼 곱을 해줘야 한다. <그림7>의 수치는 <그림8>에서 그 문제점을 알 수 있는데, 취업구분별에서는 산업연수생, 합법취업자, 불법취업자의 비율이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자료의 2004년도 데이터를 국적별로 다시 정교화를 한 경우에는 많은 국가에서 합법취업자의 산재율이 불법취업자보다 높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는 합법취업자가 722명인데 반해, 불법취업자는 단 1명만이 산재보상을 받았다. 이것은 산재보상의 자료에서 불법취업 노동자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제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호구 없이 직접 신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를 통해 신경조직에 독성이 침투하여 신경장애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전체 사업장 가운데 1/4밖에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건강권 침해 사태가 다시 한번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노말렉산은 그 치명적 위험성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이 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갑과 얼굴보호용 장구는 물론 방독마스크까지 쓰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국의 유사업체 300개소는 이런 위험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와 같은 신분이나 국적과는 상관없이 모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이 나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설사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에게 산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사업장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만약 불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며, 결국 산재로 인정되면 노동자는 입원치료비와 휴업급여(입원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평상시 임금의 70%)를 받게 된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장애가 있을 시 장애정도에 따라 14등급이 매겨져 통상임금의 최고 1474일분에서 최저 55일분의 임금이 지급된다. 즉, 체류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위험상황에서 보호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산재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위험요인을 알리지 않고 보호장비를 챙겨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마스크 없이 하루 12시간 일하면서, 일하다 쓰러져도 잠시 쉬기만 했던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건강권은 여러 지면에서 다루었다(한겨레, 2005/1/14, 1면; 동아일보, 2005/1/15, 1면; 경향신문, 2005/1/15, 1면). 조사에 따르면 이런 노말렉산 중독은 국내인에게도 발병한 경우가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그동안 역학조사 요청이 들어온 경우도 없었을만큼 이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²⁸⁾ 안전보건 교육이 미비하고 MSDS²⁹⁾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며 일반/특수건강검진을 실시

28) 사업장에서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이 들어온 해당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업병연구센터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다.

29)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지난 96년 도입되어 각 사업장에서 다루는 물질의 구성성분

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가 많은 이주 노동자의 노동건강권은 산재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사업장에서 내국인은 정상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국제신문, 2005/1/17), 외국인들은 그들이 불법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다(서울신문, 2005/1/17).³⁰⁾ 올해 1월의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작업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이주 노동자는 2000년 1,197명, 2001년 1,278명, 2002년 1,760명, 2003년 2,236명이었고, 2004년 10월까지 1,308명이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42만 여명 가운데 44%가량인 18만 6천 여명이 미등록상태(불법체류)라는 점에서 집계에 누락된 수치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 발생 후 각종 언론에서는 노동부의 산업안전국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성토했는데 과연 그 후 어떤 해결책이 마련되었으며 그것은 개선에 유효한 것이었을까?³¹⁾ 우선 노말렉산 사건에 대한 산업위생학적 평가와 산업의학적 진단을 통해서 산업안전보건체제로 접근해보자.

1) 노말렉산 노출 사건에 대한 산업역학적 평가³²⁾

노말렉산³³⁾ 노출 사건은 2005년 1월 경기도 화성에서 노트북 액정(LCD)을 생

및 발암성 등 위험성과 유사시 응급처치 등 16개 사항을 기재하여 현장 노동자들이 물질 성분과 위험성을 알 수 있게 해 직업병을 예방토록 한 제도이다. 일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제품취급설명서라고 할 수 있다.

- 30)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유기용제 폭로에 대한 선별(screening)을 할 수 있었다면 노출여부를 바로 알 수 있었겠으나 영세사업장에서 이런 검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구조이다.
- 31) 사건 발생후 언론의 보도추이는 다음과 같았다. 일단, 1월 14일에 한 매체에 사건발생 기사가 나왔다(한겨레[5], KBS). 이튿날 각종 언론에서 기사를 다뤘고(경향[2], 동아[2], 세계, 한겨레), 17일에는 해당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개인기사와 담당기관과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경향[2], 국제, 국민, 서울[3], 프레시안, 한겨레[3], 한국, 매일노동[1]). 18일 이후부터는 산업안전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한국[2], 한겨레[3], 세계, 국민, 내일, 중앙).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고, 노동부가 뒤늦게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점검을 시작했음을 알렸다. 그러나 일부 언론(한겨레)만이 이 문제를 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하는데 그쳤고, 그해 9월 환경노동위의 산업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만이 이것을 문제제기 하였다.
- 32) 이 장의 전반적인 산업위생학적 측정은 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산업역학적 분석과 평가만을 하였다. 측정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지연, ‘노말렉산 노출 및 건강영향 평가 보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보건위생연구실, 제38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세미나 “노말렉산 등 화학물질 중독의 현황 및 예방 대책”, 2005. 6).

산하는 모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 제품의 생산을 위해 수정검사를 담당하던 이주 노동자 8명이 작업시 취급하던 노말헥산에 노출되어 다발성 말초신경염이라는 건강장해를 입게 된 사건이다.

<현 황>

가동 사출기수	5~6대(대당 2,800개 생산)
수정검사 프레임의 개수(추정)	약 5,000개
작업시간	통상 08:30~22:00 (가끔 자정까지 작업, 월 1회 휴무)
작업환경	체적 : 89.3㎡, 천정 : 내부공기 순환용 그릴(grille)과 디퓨저(diffuser) 벽면 : 전체환기용(배기) 소형 팬(2대) * 작업대 위에는 국소배기장치 없음
노말헥산 일평균 사용량(추정)	
평균온도	하절기의 경우 22~23℃
인원	2인 1조
방법	1인 평균 1회 5-7개 검사후 15개씩 비닐포장

<노말헥산의 물리화학적 특성>

냄새와 특성	무색의 휘발성 액체
냄새역치	70-250ppm
비중	0.66(25℃에서)
독성	방향족탄화수소에서 검출됨
용도	세척제, 접착제, 변성제
흡수	호흡기로 흡수(피부 흡수는 거의 없음)
대사	2,5 헥산디온으로 분해되어 소변으로 배설
건강영향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손상

33) 노말헥산과 같은 유해물질은 총 168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41조)에 따르면, 작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지만, 노동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이 물질은 금지물질(68종), 허가물질(14종), 관리대상 유해물질(168종) 등 세 가지로 구분 되는데, 이 가운데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다. 이들 물질은 주로 이주 노동자가 집중된 도금(크롬산, 시안화나트륨, 염산, 초산, 황산, 수산화칼슘 이용), 주물(망간, 납, 포름알데히드 이용), 피혁(크롬산, 황산, 암모니아 이용), 염색(초산, 중크롬산, 칼륨) 등 3D 업종에서 쓰인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의 신분 때문에, 이들은 산안법 상의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입고 → 사출 → 초음파 세척 → 사상 → 검사(수정) → 출하과정을 거치는데, 노트북 LCD의 패널 가운데 흰색 종류는 노말렉산을 이용한 수정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정검사 방법은 대략 2003년까지는 노말렉산 용기에 LCD 프레임을 침지하여 세척하는 방식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얼룩이나 먼지를 노말렉산을 묻힌 헝겊으로 닦는 방식을 취했다.

〈산업위생학적 평가³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2005년 2월 3일 행한 수정검사작업 재현에서는 모두 8명의 직원이 재현작업 중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와 불침투성 장갑, 보호의를 착용하였으며(실험군), 이중 1명은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였다(대조군). 작업측정은 각기 환기장치를 가동한 상태와 미가동한 상태에서 4명 작업과 8명 작업으로 나눠 시행했고, 1회당 작업소요 시간을 총 2-3분으로 조정하고, 1일 노말렉산 사용량을 4~5리터로 설정하여, 당시의 작업환경에 유사하게 만들었다. 시료채취 및 분석용 활성탄관(charcoal tube)을 이용하여 0.05ml/분 유량으로 시료를 채취하였고, 채취된 시료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정량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수정검사 작업자의 호흡기 위치에 서의 노말렉산 농도의 실시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작업자 1명을 대상으로 실시간농도측정기를 이용하여 50초 간격으로 노말렉산 농도를 모니터링했다. 산업안전공단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 ① 한국산업안전공단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방법 지침(A-1-2004)에 준하여 실시한 개인시료와 지역시료의 채취
- ② 실시간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모니터링 장비인 Multigas monitor(Annova, Model 1312)를 이용한 개인근로자 호흡기위치에서의 헥산의 실시간 농도측정
- ③ 추적가스를 이용한 농도 감소법을 통해 실내공기 교환횟수(ACH, air change per hour) 산출방법으로 수정검사 작업(청정실)의 환기율 측정

34) 이 평가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따랐으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원진녹색병원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측정 결과는 각각 69, 87, 162, 195ppm으로 기준치(28.6ppm)의 6.8배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의 “이주 노동자 노말렉산 중독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의 자료에서 밝혀졌다(매일노동뉴스, 2005/2/2, 5면).

- ④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원시료 분석
- ⑤ 소변 중 2,5-hexanedion 분석

조사결과 수정검사 작업조건별 hexan 노출수준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A) 수정검사 작업조건별 개인노출 측정결과

1일 작업조건	환기 장치	시료수	측정치(ppm)		비고 (노말hexan 소비량, ml)
			평균	범위	
4명 작업	가 동	4	75.0	49.7-93.8	303
	미가동	4	173.7	147.3-196.6	340
8명 작업	가 동	8	115.7	69.0-185.3	385
	미가동	16	204.2	114.4-281.0	385

※ 작업자 수가 4명에서 8명으로 2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말hexan의 개인노출농도가 환기장치 가동시와 미가동시 각각 1.5배와 1.2배로 나타난 이유는 각 작업조건에서 hexan의 사용량이 비슷하며, 특히 작업실의 체적이 적어 환기장치 미가동시는 노말hexan이 작업장 전체에 빠르게 확산, 축적됨에 따라 농도가 평형상태(equilibrium state)에 도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B) 수정검사 작업조건별 지역시료 측정결과

1일 작업조건	환기 장치	시료수	측정치(ppm)		비고 (노말hexan 소비량, ml)
			평균	범위	
4명 작업	가 동	4	55.5	31.6-102.9	303
	미가동	4	133.8	105.1-158.3	340
8명 작업	가 동	8	59.8	35.2-79.8	385
	미가동	16	140.7	118.9-169.0	385

위의 결과를 볼때, 노말hexan의 개인노출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정검사 작업시 사용한 세척제인 노말hexan의 사용량과 수정작업실에 설치된 환기장치의 가동여부였다. 수정검사 작업자들이 근무했을 당시의 작업자 수준인 오전 4명, 오후 8명으로 했을 경우, 재현평가 결과 환기장치의 가동시와 미가동시를 구분하여 보면 1일 8시간 작업을 한 경우의 8시간 시간가중평균노출농도는 환기장치 가동시가 평균 102.2ppm이고(범위 : 49.7~185.3ppm), 미가동시 평균 194.1ppm(114.4~281.0ppm)으로 평가되었다. 동일한 농도조건에서 작업자들이 12시간 작업했을 경우 누적노출량은 1.5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추적

가스(SF6)를 이용한 청정실(수정검사 작업실)의 환기효율을 평가한 결과 환기장치를 미가동한 경우 일반 자연환기에 의해 시간당 약 2.0회의 공기교환이 일어나는 환기가 불량한 조건이었으며, 이러한 조건에서의 작업자의 노말핵산 개인 노출량을 좌우하는 것은, 작업자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노말핵산의 증기압을 좌우하는 작업장의 온도조건과 수정검사 작업시 이용된 노말핵산의 사용량으로 판단되었다.³⁵⁾

〈산업의학적 평가〉

말초신경염이 발생한 노동자들의 임상적 경과 및 산업의학적 면담 결과로 보아, 이 노동자들의 질환은 전형적인 노말핵산의 노출에 의한 말초신경염으로 판단된다. 이 노동자들은 과거 신경질환이 없었고 과거 신경독성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없었다. 이들에게 임상적 경험이 현저하게 드러난 시점은 2004년 10월에서 11월 사이였으며, 이것은 당 사업장이 기존 세척실을 밀폐공간형 청정실로 개조한 이후 6~7개월만에 일어난 것이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이 노동자들은 작업 중 냄새로 인해 두통을 자주 느꼈고, 일부 노동자는 구토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노말핵산의 노출기준 50ppm은 “건강한 남성 노동자들의 80%에서 질병 발생가능성이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당 사업장의 경우 하루 평균 노출시간이 12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하고, 보호구가 없이 산업환기설비의 효율이 낮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산업의학적 평가는 산업위생학적 평가와 충분히 정합적으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노말핵산 사건 사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가동이 미비한 것이 문제였으며, 노말핵산과 같은 신경독성 물질에서 저독성 또는 무독성 세척제로의 대체 및 관리가 요구되며, 개인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이 법적으로 강제된다. 특히 당해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노동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대상업체였으나, 유해요인 노출 노동자에 대한 노출수준이 이번 역학조사와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35) 이런 노말핵산 노출은 외국에서도 그 사례가 많았다. 1982년 이탈리아 신발제조공장의 접착제, 1986년 대만의 인쇄공장 세척작업, 1999년 지갑공장 접착제, 2000년 미국의 에어로졸 세척제, 2004년 일본의 LCD 부품공장 세척작업 등이 있었다. 국내에서도 1974년 신발공장 제화반 노동자 17명에게서 최초 보고되었으며, 2000년에 들어와서도 3건의 집단 발병 사건이 있었다.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장 환경조사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 사실, 현재의 상태로는 인력부족으로 작업장 환경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점검할 수 있을만큼 관리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미 당 사업장은 2003년 12월과 2004년 4월의 두 차례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서 기준치인 50ppm을 넘었던 것으로 판정되었다(한겨레, 2005/1/18, 11면). 당해 사업장은 비교적 높은 노출농도였으나, 작업환경에 대한 공장장과 담당 과장의 무관심과 보건관리대행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지적하지 못했던 점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었다.

2. 진단 : 원인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은 톨루엔, 노말렉산 등 유기용제 중독이나 납 중독,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밀폐공간에서 고농도로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급성 중독성 질환으로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급성 중독은 우리나라 작업환경의 점진적인 개선과 더불어 더 이상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올해 초에 발생한 노말렉산 중독 사건은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도와 법령이 존재하고 작업환경측정이 공공기관에 의해 실시된다 하더라도, 관리부족에서 다시 재발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장의 유해요인들에 대해서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요인 뿐만이 아니라³⁶⁾, 안전보건 전반에 관해 이주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이며 또한 보호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여기에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연구용역사업으로 행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실태조사 연구”(기간 : 2002.12-2003.12)³⁷⁾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노말렉산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전에 인접 지역(경기도 안산, 시화, 반월지역) 사업장 195개소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였으며, 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제도적 한계를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36) 이번 노말렉산 사건은 작업환경 가운데에서 화학적 요인이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각종 언론에서 그것이 극단적인 사고가 아닌,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하는 사건으로 이해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심의한 680여건의 유해요인 가운데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건이 447건으로 65.7%를 차지했다.

37)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 일부 연구자들이 참여한 공동연구였다.

1) 원인에 대한 진단: 2002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 제 목 : 이주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02. 12~2003. 12
- 조사도구 : 노동부 산업안전규칙에 의거 체크리스트 개발
- 방 법 :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 측 정 : 대상지역 이주 노동자 109명에게 설문, 사업장 2개소 관리자면접
- 연구결과 요약
 - 체류자격 : 합법체류자가 82.1%³⁸⁾
 - 대상 이주 노동자 체류기간 : 1년 이상이 70%
 - 현 황 : 이주 노동자 고용사업장의 산업안전실태는 국내 제조사업장에 비해 열악함.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경고표지 및 안전표지 부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활용도가 부족하며,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작업복 지급, 작업통로 확보,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등이 국내 제조업 사업장에 비하여 열악하였음. 특히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국내 제조업 사업장보다도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위험요소 : 협착과 절단이 가장 높고, 화상, 감전, 전도의 순.
 - 건강진단 : 조사대상 195개소 가운데 45.6%인 89개소가 실시하였으나, 이중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53개소로 전체의 27%에 불과함. 특히, 소음노출이 같은 지역의 다른 제조업체에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근무만족도는 급여수준, 근로시간, 작업내용, 의료혜택, 고충처리, 직장상사와의 관계, 숙소시설 등에 있어서 대체로 만족했음.
 - 작업환경 : 작업장의 유해환경 노출경험조사에서는 소음과 분진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유기용제 노출과 불편 및 단순작업의 순.

2002년도 실태조사는 노말핵산 노출 사건과 유사한 조건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진단을 실시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어떤 예방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문제는 이 연구가 설계 당시부터 이주 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연구의 모수(N=109)가 작았고 사업장 관리자를 면접하는 방식을 취해 관리자의 응답 편

38) 용역대상측에서 사업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응답 편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위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사업주 가운데에서 자신의 노동자를 법에 저촉되게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특히, 올해 노말핵산이 일어난 경기도 화성과 유사한 지역에 설문 을 실시하고 산업위생학적인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과 분진과 같은 가 시적이고 측정하기 용이한 부분만을 지적함으로써, 실제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와 같이 전문기관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평가만을 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것은 연구대상 업체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 반적 실태가 기존의 다른 연구에 비해서 양호하고, 이주 노동자의 건강진단 실태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2) 외생적 차원의 해결방안 : 법적·제도적 접근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인권법은 크게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 구(ILO)의 것으로 분류된다. 우선, 국제연합의 경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 규약”에서 정하는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의 균등대우 조항과 노동기본권에 대 한 내용이 있으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국제협약”, 노동력 송출 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UN 이주 노동자권리협약” 등이 있다. 다음으로, 국 제노동기구의 경우, 차별대우(금지)협약과 내이주 노동자의 재해보상 균등대우협 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이주 노동자 협약 등이 있다. 그 러나 국제협약의 인권법안들은 국내에서 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체감하기 에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런 인권법에 토대한 선행 연구들은 많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들은 상대적으로 비미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법 가운데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그 권리로써 누릴 수 있는 노동 건강권에 대해 논의하겠다.

아래는 이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규 중 일부에서 산업재해와 노동권, 건 강권에 대한 핵심 규정인데, 법의 보호범위를 가늠하기 위하여 간추려 옮겨본다.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노동부령)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관한 사항
4.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근로기준법(법률 제6507호)(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7호 노동부)

제5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조(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³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재해보상 제81조(요양보상)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소개는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생략한다. 다만, 이 법에 대한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관리방법 및 분류체계는 말미의 <참고자료1>을 통해서 정리하였다.

제83조(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 정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령(legislation)은 한 사회의 사회구성체를 형성하는 여러 상부구조 가운데에서 최상의 정당성(justification)을 가지는 것이다(양건, 2000). 이것은 법률의 개폐과정이 엄격한 절차와 합의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것이 가지는 규범력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구조와 이주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체류하도록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부의 입장 사이에서 위와 같은 국내 법령은 선언적 의미로 그 위상이 격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도입부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비준한 국제법령과 현행 국내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이주 노동자의 노동건강권을 위한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상의 보호는 실제로 이주 노동자의 작업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⁴⁰⁾ 이러한 원인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현실적 상황에 대한 조화로운 모색보다는 규제 일변도로 가게 된 역사적 배경이 관련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상대적으로 개정주기가 매우 짧은 편이다. 그만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수시로 반영하여 산업관계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다.

그러나 법률과 제도는 한편으로는 최고의 규범성을 가지면서 현실을 규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경직성으로 인하여 개선의 효과는 미미한 경우도 많다. 예컨대, 실제법인 민법에는 규율되어 있으나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서 권리구제에 적합한 수단이 용이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법은 현실적합성이 낮아지게 된다(박홍규, 1997; 홍완식, 2006).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당사자들로 인해 그 보호방법이 최종의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제도권 안으로 수용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그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노동건강권은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 보장의 문제라는 것이다. 현

40) 법과 제도가 작업장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하여는 박경주(2001)를 참조. 여기에는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생제도와 미등록노동자의 상황이 어떻게 다르고 문제가 되는지 기술되어 있다.

재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해결할 수 있는 외생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방안은 적어도 그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가진다. 법률과 제도의 부문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으나 그것의 현실적 관리, 운용의 측면이 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내생적 차원의 해결방안 : 노동조건 문제

이주 노동자의 노동건강권을 둘러싼 내생적 차원의 해결점은 미시적 수준인 작업장 단위에서 개선방향을 찾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2)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 용역사업의 결론은 아래와 같은데, 이러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제언이 가지는 함의를 고찰하면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조사대상 사업장의 일반특성(단위 : 개소, %)

내용	사업장수	구성비
업종별(조립금속제조업체)	38	19.5
규모별(5인 이상 50인 미만)	140	71.8
작업시간/1일(8시간~10시간)	134	68.7
급여수준(100만원~150만원 미만)	124	63.6
체류자격(합법체류)	160	82.1
국적(중국)	52	26.7
성별(남자)	179	91.8
연령분포(25~29)	72	37.3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122	63.9

출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2(부분 수정)

■ 산업안전실태(단위 : 개, %)

내용	사업장수	구성비
안전표지 설치 부착	133	68.2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112	57.4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여부 MSDS 비치	59	55.1
작업복 지급	138	70.0
개인보호구 지급여부 지급	169	86.6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착용	138	81.7
기계가공설비 자체검사	72	69.2
기계가공설비 방호장치	65	82.3
건강진단 실시	106	54.4
특수건강진단 해당 유해인자 (소음, 분진, 화학물질, 중금속)	50~73%의 비율로 모두 해당없음	
국소배기장치 설치, 가동여부	79	72.5
작업장 유해인자 항목		
소음	85	43.6
분진	42	21.5
유기용제	28	14.4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여부	[정상]	[초과]
소음	55(64.7)	30(35.3)
분진	41(97.6)	1(2.4)
유기용제	28(100.0)	0(0)
지역사업장과 외국인사업장 유해인자 비교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이 내국인사업장보다 소음과 분진에서 초과 공정이 2배 정도씩 높게 나타남	
동일공정에서 내/이주 노동자의 유해인자 노출현황	두 경우 모두 분진과 소음에서만 약간의 초과가 나타났으며, 유기용제, 화학물질, 중금속 부문은 초과 없다고 나타남	
회사규모	회사규모에 따른 체류기간, 체류자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다만 건강진단은 5인~5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미실시의 유의한 차이 나타남	

출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2

■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조건 만족도 및 작업환경(단위 : 개, %)

현 직장 근무기간(1년 이하)	52	47.7
이직횟수(이직하지 않음)	54	50.0
체류자격(합법체류)	61	57.5
체류자격 : 산업연수생(D-3)	73	75.3
연수취업자(E-8)	15	15.5
국내 체류기간(3년 이상)	36	33.0
소음 노출여부(노출/보통)	77/40	72.0/51.9
분진 노출여부(노출/보통)	76/39	71.7/51.3
유기용제 노출여부(노출/보통)	47/26	51.6/55.3
불편자세 작업여부(실시/보통)	53/26	55.2/48.1

출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2

■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현황(단위 : 개, %)

산업안전보건법 인지여부 알지 못함	92	84.4
작업장 안전건강 정보욕구필요로 하지 않는다.	51	46.8
현 직장의 안전보건교육 여부 실시	58	55.8
본국에서 안전보건교육 여부 미실시	47	66.2
작업장 안전보건교육 필요성 별로 필요하지 않다	39	36.9
산재보험 인식여부 모른다	78	71.6
산재보험 인지시 가입여부 가입	20(N=30)	66.8
산업재해 경험여부 있다	13(N=108)	13.0
산재발생시 책임여부 잘 모르겠다	35	34.7
산재를 당한 경우 치료비 부담 본인, 사업주 부담이 같음	각각 6	각각 46.2
현 작업장이 건강에 미치는 정도 그저그렇다	40	37.4
현 작업장 안전상태(보통)	77	71.3
작업장 안전의 차별여부 그렇지 않다	83	77.6
건강보험 인지여부(알고 있다)	58	53.7
건강보험 인지시 가입여부(가입)	36	61.0

출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2

위의 결과를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의 일반특성”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공간은 영세제조업체(71.8%)이며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남성

(91.8%)에 상대적으로 젊은 경우가 많다(25~29세가 37.3%). “산업안전실태”로 평가하였을 때, 안전표지 설치(68.2%)와 정기안전보건교육(57.4%),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55.1%)의 비치 정도는 크게 높지 않았으나 이것은 내국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해당 이주 노동자의 모국어나 영어로 된 교육과 자료비치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위의 실태 조사에서는 그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건강진단 실시율은 54.4%였으나 특수 건강진단 해당 유해인자는 해당없음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측정결과 소음(35.3%)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분진(2.4%)도 일부 사업장에서 정상치를 초과했다. 특히 지역의 다른 내국인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 사업장은 그 수치가 평균적으로 2배를 초과했다. 문제는 유기용제인데, 위의 산업안전실태조사에서는 어느 사업장도 초과노출이 없었다고 조사되었다. 국소배기장치도 72.5%의 가동률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주 노동자들의 작업관련성 질환이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사에 대한 과소보고(under reporting)가 많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사업장 특성에서는 합법체류자가 82.1%이었으나 “근무조건 만족도 및 작업환경”에 대한 개인별 조사에서는 합법체류가 57.5%에 머무르고 소음, 분진,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 경험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의 실시율에 비하여 이주 노동자들에게 인지된 교육효과는 상당히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주 노동자들은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 및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과 같은 내국인 산재 취약계층과 산업재해의 물리적 위험 조건에 노출되는 것은 동일하더라도 그들보다 더 높은 산업재해율과 산재 사망율을 보이게 된다.

연구보고서의 개선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의 개선이다. 이것은 현재 노동부 산하의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산업안전공단과 산하 지도원이 주축이 된 이주 노동자 안전보건 상담 및 지원센터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개의 공공기관이나 기관 내 팀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다. 산재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앞의 <그림1>과 같은 모순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작업환경측정이나 무재해 운동,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같은 사업은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노동부 자

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이주 노동자, 특히 불법취업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은 통합기구를 설립 후, 인력과 예산의 확대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큰 밑그림의 재검토 후에 논의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는 주장은 언제나 공허하다. 그것은 이번 노말핵산 사건과 같은 재해가 발생한 때면 항상 회자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담당기관과 재원은 없기 때문에 쉽게 백지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통해 이주 노동자의 노동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당성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를 중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주장한다. 이것은 본 연구의 가설1에 대한 검증이다.

둘째, 이주 노동자 고용사업장의 시설개선이다. 이주 노동자 고용사업장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기술 및 자금이 부족한데, 이를 산업안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CLEAN 사업장 조성⁴¹⁾과 연계하자는 방안이다. 실제로 CLEAN 사업장은 2006년 1월까지 1만 5천개 이상이 시설개선 지원을 받았을 만큼 정부 산재예방 핵심사업이고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41) 그러나 이것은 이주 노동자를 위한 고용사업장 개선자금 지원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 이주 노동자 고용사업장을 개설하자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다. 이 사업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공단에서 인증을 해 주며, 이주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파악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런 주장을 공식화했다가는 영세사업장의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며, 불법취업 노동자는 우리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타 부처의 견해표명에 마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공식사업은 산업연수생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완전히 바뀐 후에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기관과 연계하는 제도 및 시행기반의 마련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체계 내에 이주 노동자, 특히 불법체류자가 포섭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보건관리대행사업과 건강진단사업에 이주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포섭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41)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현재 전체인력의 60%와 그에 상당하는 예산(2005년 1,00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문기술인력의 작업환경개선 사업이라기보다는 설비개선 컨설팅의 수준에서 물량위주의 사업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런 주장은 두 번째 제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제도상 이주 노동자를 우리가 먼저 보호해야 할 책무가 없고, 실질적으로 내국인과 같게 보호되지도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부처 간 협의와 공식적인 제도가 탄생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더 서비스업 위주로 구성된 후에, 이주 노동자의 공식적 수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분석틀의 <그림4>에서 살펴본 것처럼 합법에서 불법으로 이동하는 이주 노동자의 경향을 온전하게 돌려놓는 방안이다.

넷째, 이주 노동자 민간단체 연계 및 사업장내 조직을 통한 접근성, 사업효과의 증대이다. 이것은 이주 노동자 지원조직이 실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것이다. 최근 거버넌스 영역의 많은 부분을 NGO에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영역이 있다. 산업안전보건영역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공안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NGO 영역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문이 아니다. 결국,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이들을 공공영역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인데, 그때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노동건강권이 문제되는 것이다. 결국 본 연구의 가설2에서 주장했던 것이 검증되는 것인데, 이주 노동자의 노동건강권은 이러한 모순에 의해서 문제해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만큼, CBT이론을 통해 검토한 관계분석 모형에서 제도가 불법과 부당을 만들어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주 노동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상의 차별대우 금지이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산재보상 및 의료보험에 있어서 이주 노동자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특히 의료보험 등에서 국내 노동자와 차별없이 보호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앞서 외생적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살펴보았듯이, 이런 부분은 선언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보험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단계적으로 마련되어 지난 2005년 7월부터 이주 노동자와 노숙자가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진료 후에도 무작정 강제출국 당하는 것에서는 보호되도록 되었다(내일신문, 2005/6/30, 20면). 다만, 이에 대하여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제도적 문제들이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한겨레, 2007/7/10, 15면).

여섯째, 이주 노동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강화이다. 이주 노동자의 안전

보건확보는 사업주의 인식 태도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사업주 교육과 더불어 업무처리지침을 보급하자는 내용이다. 이것 역시 단계적으로 제도보완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노동부에서는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해당 사업주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매일노동뉴스, 2005/6/6).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의 산업안전보건실태 조사자료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안전수칙과 유해물질을 실제로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1>은 산업보건상의 유해물질의 분류 및 관리 체계이며 <참고자료2>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공단의 교육자료 개발 현황이다. 유해물질 용어는 그 명칭과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자료보급이 요청된다 하겠다. 산업안전공단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이주 노동자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내일신문, 2007/6/22 17면).

이상과 같이 연구 조사사업의 한계와 이를 극복할 정책제언을 논의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건강권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스케치하지 못하고,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분석에 그쳤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산업보건과 법률의 관리제도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제언을 추가적으로 제안한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다른 사례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이주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질적 두 측면이다.

① 산업보건의 측면

산업현장에서 제조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물질들의 독성 및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는 상당수 누락되어 왔다.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김형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MSDS의 신뢰성 평가 결과 총 29개사 114종 제품의 경우 물질에 대한 독성성분은 물론 노출시 유해위험성을 누락하거나 법 규제조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물질의 성분과 특성에 관한 자료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런 유해독성물질은 일시적 노출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발병하는 만큼 유병요인을 알기 힘들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데,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2000년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작업병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이주 노동자를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사업의 핵심 대상인 산재 취약계층으로 편입시켜 동등한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들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일단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들을 노동자

의 지위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ILO의 국제적 권고 등을 참고하여 적어도 작업장에서만큼은 그들에게 법이 부여하는 동등한 노동건강권을 확보해줘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물질 관리체계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재해의 은폐이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 단병호 의원이 배포한 ‘산재통계 정상화와 실질적 산재예방정책수립을 위한 제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20~59세 생산활동인구가 직장 내에서 사고를 당한 건수는 61만 5,645건에 달했으나, 산재보험으로 정상 처리된 경우는 6.3%인 3만 9,072건에 불과했다. 이 통계대로라면 57만여건의 산재가 은폐되었고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수백억원대의 치료비를 국민이 부담한 셈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금속연맹이 올해 화학업종인 A사에서 직장 내 사고를 당한 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1명이 건강보험, 26명은 사측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공상처리를 한 반면, 산재처리를 한 경우는 8명에 지나지 않았다.⁴²⁾ 따라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산재사망자 수와 산재율이 이율배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증거로, 2001년 영국에서 한해동안 발생한 직업병 환자가 국민의 2.1%이지만 한국은 2002년 기준으로 0.1%에 불과하였다. 산업재해 연구가인 하인리히(Heinrich. H.)의 이론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의 경우 통상 중상 1건에 경상 29건, 아차사고 300건 가량으로 발생하여 피라미드 구조를 띤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통계의 경우 중상 대 경상(한달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의 비율이 6.9대 1로 오히려 중상의 비율이 높았다.

원인을 살펴보면, 경미한 사고에 대한 산재통계 누락이 고의적 은폐와 더불어 신청 자체를 억제하는 유인에 따른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한 원인이고, 사업장의 무재해 운동이 오히려 은폐를 부추키는 것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추진하는 무재해 운동은 무재해 일수가 곧

42)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 의원실에서 발간한 2004년도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 이에 따르면(위의 자료집, ‘산재통계정상화와 실질적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18p),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입원과 외래 처리 비율에서 산재보험은 입원의 경우 평균 60%, 외래의 경우 평균 2% 정도만이 처리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외래 비율은 100%에 가까웠다. 즉,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했을 것이 극심하게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것이다.

상여금과 연결되고, 산재 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노동자들이 작은 사고는 숨기는 관행이 생겼다. 그래서 일부 사업장의 경우 무재해 달성 시간이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3과 그에 대한 검증처럼, 산재예방을 위한 관계개선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조치를 강조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1) CBT이론을 따라 불법적인(-) P-H관계를 합법적으로 만들고(-), 2) 이주 노동자의 지위 공식화를 통해 P-X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문화적 풍토를 만들고, 3) 결국, H-X관계에 정당한 산재보상과 체류보장을 하는 것이다.

4) 소결 : 이주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1980년대부터 주로 3D 업종에 종사하기 시작한 이주 노동자는 1991년 정부의 산업기술연수제 도입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고, 현재는 대략 30~40만명이 우리나라의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국제노동력 이동의 유입경로에 따라 영세한 제조업체나 미숙련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노동건강권과 관련된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 우선은 작업환경에서 오는 안전보건의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그들이 가지는 국적과 신분에 따른,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한 문제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사회적 신분, 지위, 그리고 미숙련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열악한 작업환경을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떠맡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내에서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중이거나 치료경험이 있는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발생요인 및 산재처리에 관한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절단사고가 7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낙하비레와 무리한 동작이 각각 5.2%로 나타났고, 산업재해 신체부위로는 손가락이 70.7%로 나타났다(이승길, 2001).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발생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협착재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장치가 없어 발생하는 절단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노동자 산업재해 급증”이라는 연합뉴스 기사(2001/12/11)를 보면,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⁴³⁾, 노동부 자료

43) 이주 노동자의 산재와 임금체불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가 16일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현황’에 관한 국감 자료는 9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가 3572명이며 이 가운데 136명이

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01년 8월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이주 노동자는 모두 3,585명으로 이 가운데 13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산업재해자는 1998년 755명, 1999년 715명에서 지난해 1,197명으로 67.4%나 증가했으며, 2001년 8월말까지 918명에 달하고 있었다. 사망자 수는 지난 1998년 35명, 1999년 20명, 2000년 39명, 2001년 8월말까지 36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6.2%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인도네시아(14.5%), 방글라데시(9.8%), 베트남(9.3%), 필리핀(5.9%), 파키스탄(4.2%) 순이었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금속제품 제조 또는 금속가공업(16.2%), 화학제품제조업(13.9%),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12.5%), 건설업(10.8%) 등 4개 업종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재 노동자의 78.9%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 있으며, 재해별로는 협착(기계 기구 등에 신체 일부가 끼는 것)이 61.6%로 월등히 많았다. 노동부는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근로조건이 열악해 국내 노동자들이 취업을 꺼리는 기피 업종에 종사하는데다 언어 소통이 잘 안돼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므로, 이주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노동부의 안전정책과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와 이주 노동자 실태조사의 비교수치는 아래와 같다.

숨졌다고 집계했다. 재해자 수는 1999년 715명, 2000년 1,197명, 2001년 1,491명으로 늘고, 사망자 수도 1999년 20명, 2000년 39명, 2001년 57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80%를 차지하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상당수가 추방이 두려워 산재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수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올 상반기 체불임금 발생액은 모두 1,039개 업체에서 23억4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와 이주 노동자 실태조사 비교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2002)		이주 노동자 실태조사(2002)	
유해위험시설 경고표지 부착율	92.5% (50인 미만 : 83.5%)	유해위험시설 경고표지 부착율	69% (133/195업체)
정기안전보건교육	71.3% (50인 미만 : 52.9%)	정기안전보건교육	57.4%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86% (50인 미만 : 64%)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55.1% (88개 업체 협조거부)
작업복 지급비율	89.2% (50인 미만 : 85.3%)	작업복 지급비율	70%
개인보호구 지급율	94% (50인 미만 : 92.5%)	개인보호구 지급율	87% (착용율은 70%)
방호장치 설비율	92.9% (50인 미만 : 84%)	방호장치 설비율	82%
안전통로 확보율	94.8% (50인 미만 : 91.4%)	안전통로 확보율	76%
(건강진단 실시율)	-	건강진단 실시율	46%
(국소배기장치)	92%(50인 미만 : 87%)	국소배기장치	73%

이와 함께 담당기관(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작업환경 측정도 실시하였으나, 이번 노말렉산 사건을 고려해볼 때 이에 대한 조사에서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2) 대표적 유해인자를 소음(85건, 43.6%)과 분진(42건, 21.5%), 유기용제(28건, 14.4%), 화학물질과 중금속(18건, 22건)으로 나타냈으나⁴⁴⁾, 실제로 규정을 초과하여 단속이 요청되는 것으로 소음과 분진만을 꼽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기용제와 기타 유해인자가 안전보건상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실태가 감추어지고, 개별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노동부 지방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역본부와 지도원이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5%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사망재해 다발 10대 유형이나 재해다발업종이 제조업(특히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과 건설업인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자이나 이주 노동자이나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의 산업안전보

44) 국가인권위(2002) 자료에 따르면, 소음(65.4), 분진(48.3%),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노동(42.6%)의 순이었다.

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에게 노동건강권을 확보하게 하는 지름길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가장 취약분야와 업종, 그리고 노동자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즉,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들의 신분상의 문제가 얽여 있다는 점과 또 다른 역차별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의 전반적인 노동건강권을 취약계층 노동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개선이다.

2002년도 국가인권위의 전국 1,078명의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32.2%의 응답자가 산업재해로 다친 경험이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불과 15.5%였다. 특히 산업재해와 산재재해 보상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이주 노동자가 52.4%에 달했고, 산업재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의 권유나 압력에 의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29.7%에 이르렀다. 이주 노동자의 산재와 직업병 발생의 원인은 그들이 3D 업종에 종사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휴일도 없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안전장치가 미비한 작업장에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채 일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⁴⁵⁾

그런데, 이런 요인들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개선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산재보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주 노동자 보상국을 신설하여 이주 노동자의 산재를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노동부에서는 이주 노동자 상담센터를 만드는 제도적 방안은 마땅히 필요한 개선방안들이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에게 이슈를 맞추는 것은 결국 불법체류라는 그들의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45) 산재에는 가장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이나 산재보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신분 때문에 산재를 오히려 스스로 숨기는 이주 노동자의 이중고는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이들은 건강보험에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나쁘다. 그나마 이주 노동자 전용의원과 교회나 NGO 단체와 연계된 학생들의 의료봉사 활동이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 1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주 노동자 전용의원을 인터뷰한 기사를 참조(매일노동뉴스, 2005/7/25). 이 의원은 정부지원금 없이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적자에 있다고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낳을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의 관계자가 밝혔듯이 국내 노동인력의 절반 이상이 산재혜택을 못 보는 상태에서 3%의 이주 노동자에게 전력투구를 하며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은 역차별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이주 노동자 개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된 교육자료 보급과 안전장비 착용, 건강진단과 같은 직접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⁴⁶⁾ 즉, 산업안전보건의 개선이라는 큰 틀 속에 노동건강권의 문제를 넣어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⁴⁷⁾

둘째,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건설직 일용노동자의 관리 및 시설개선이다.

2000년 7월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이 확대되었을 때 한국산업안전공단(2000)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의 재해자 가운데 85%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그 가운데 60%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었다.⁴⁸⁾ 특히 IMF 이후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 의해 중대재해 유발 사업주에 대한 벌칙성 교육마저 폐지

46) 교육자료 보급현황에 대해서는 아래의 <참고자료2>를 참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언어로 된 교육자료를 보급해 왔는데, 문제는 그런 자료의 질이 아니라 이 자료를 제공하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인력의 문제이다. 교재는 매우 우수하나, 그 교재를 이주 노동자에게 자습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47) 노말핵산 사건이 있었을 당시, 언론에서는 원진레이온의 악몽을 떠올렸다(세계일보, 2005/1/15, 23면).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시적인 산업재해가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국가의 발전과 상관없이 재래적 산재가 빈발하는 이유는, 이주 노동자가 노동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이유 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책들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는 데에는 사업장에 남아 있는 인종에 대한 차별과 담당 공공기관과 공무원, 그리고 법제가 이주 노동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이다. 내국인 취약계층 노동자가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체계 속에서 산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공공의 산업안전보건 법제 속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는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공식적인 규제와 지도, 처벌이 산재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을 것이다.

48) 영세함으로 인해 영세제조업체에서 산재가 빈발하나, 대형건설사에서도 산재는 많다. 다만, 이들은 기업이미지 추락과 산재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은폐하거나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가 “2004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천대 건설업체의 재해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5대 건설사(공사실적액 기준)들의 산업재해율이 중견건설사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되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졌으나, 기업의 생산방식은 오히려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하여 자율안전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영세소규모 사업장 가운데에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에 250여만개로 전체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고 노동자의 이동이 잦아 근속연수가 짧고, 개인경영에 의해 운영되므로 자산규모가 열악하다. 건설현장 역시 규모는 제조업과 상이하나 추락, 낙하에 의한 재래형 재해가 반복되고, 사망재해가 높다는 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표 6.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50인미만	재해자(울)	56,250(1.16)	58,341(1.11)	65,594(1.24)	60,423(1.19)
	사업장수	882,782개소	974,858개소	977,619개소	1,009,937개소
	근로자수	4,864,090명	5,256,142명	5,304,557명	5,081,362명

출처 : 산업안전공단

따라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인책과 중대재해 발생시 강한 처벌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유해위험기구와 각종 방호장치 설비에 대한 설치, 점검, 보수를 철저히 감독하며, 노동자들에게 대한 보호구 지급 및 지속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⁴⁹⁾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CLEAN 3D 사업과 같은 무상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담당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기술지원과 시설개선 컨설팅을 강화하고, 작업자의 건강관리와 작업환경측정관리를 활성화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다수가 영세 제조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그 안의 위험요소인 협착, 절단, 전도 등의 반복형 재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기술 및 자금

49) 건설현장은 특히 산재은폐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지적되어 왔다. 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건설현장은 산재 발생 후 현장을 치우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등 은폐율이 80%에 달한다(매일노동뉴스, 2005/7/27, 8면). 문제는 담당기관에도 있는데 이런 은폐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산재은폐는 이렇게 산재 사망 자체 뿐만이 아니라, 화학물질의 유출에 대한 기업간의 은폐 카르텔에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수산업단지의 화학물질 유출에 대한 한겨레 기사(2005/7/27, 33면)와 포스코 광양제철 소결로의 다이옥신 검출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2005/4/22)를 참조.

부족으로 자발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CLEAN 3D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⁵⁰⁾

셋째, 산재보상심사평가원(가칭)의 설립을 통한 산재보상의 선보장, 후지급이다.

노말렉산 사건 이전부터 산업안전보건 영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해온 민주노동당에서는 2005년 단병호 의원을 필두로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가 연합하여 업무상재해 승인기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3의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무산되었다.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방식을 전환하여 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재보험의 선보장 후평가 및 재할급여의 신설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기존의 재해승인 방식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단계를 통과해야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엄격성 때문에 재해노동자의 부담이 컸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산업재해분류기준표⁵¹⁾에 따라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최종심사는 산재보상심사평가원에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기금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할 경우 재정 상황 등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자신이 당한 재해가 산재인지 인식하지 못하여 신청을 못했던 많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⁵²⁾, 업무상 재해 후 요양기간에 재해자의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에 이용될 재해급여의 지급으로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본 연구에

50) 전문가의 지적처럼(선한승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앙일보, 2005/4/17), CLEAN 사업은 고작 책걸상, 전조등, 환풍기 교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정작 지원해야 할 영세사업장은 자격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 하겠다.

51) 산업재해분류기준표란 의사가 의료기관에 찾아온 환자를 진단한 뒤 그 환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를 분류하기 위한 지침서이다. 당장 모든 질환이 산업재해분류기준표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우선적으로 의사가 직업력에 대한 문진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분류하기 용이한 질환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52)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 승인 결과를 분석하면 미국에 비해 한달 이상의 중증 환자들이 75~80%를 차지하고 있다. 즉, 10일 미만의 경미한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과반수가 넘는 미국과 달리 경미한 작업성 질환에 대한 청구가 제외되어 왔음을 반증하고 있다.

서 주장하는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완화된 규제의 복원이다.

1993년 6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규제완화는 시작되었다. 이것은 경기침체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었으나, 이것은 사업주의 주요 의무사항을 경감시켜 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크고 작은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가 추진되었는데(29건 폐지, 49건 완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7.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와 그에 따른 영향

규제완화내용	영 향
프레스와 리프트 정기검사 폐지	1988년 프레스로 인한 재해자수가 1,525명이었으나 2001년 2,009명으로 31.7% 증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폐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설비 파열, 폭발사고 급증 1997년 89명에서 2002년 1,589명으로 재해자 증가 안산지역에서 1998년에서 2000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사업장이 그렇지 않는 사업장에 비해 재해율 46% 증가 1998년부터 조립금속제품제조업에서 재해율 증가
소규모 위험업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폐지	2000년 안전관리자 선임율은 96년에 비해 34.5% 감소 50인미만 규모의 위험업종에서 재해율이 증가
소규모(30-49인) 유해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폐지	석면제품제조업 등에서 재해율 증가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의무 폐지	최근 재해자 및 직업병, 업무관련성 질환의 증가와 신규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능력 부족
공정안전보고서 5년주기 재작성의무 폐지	화학업종에서 재해자 증가 및 화재, 폭발사고 사례증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1998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2000. 7)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가 산업재해 통계에 신규로 반영되어 증가한 측면과 건설물량 증가로 재해에 취약한 신규 고령노동자들이 대량으로 건설노동시장에 유입된

점, 최근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완화되고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질병이 크게 증가한 점 등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규제완화로 인해 사업장 안전보건 예방관리의 약화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제조업종의 재해율이 증가하고,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40-50대 연령의 재해자가 증가하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협착, 전도, 추락, 충돌에 의한 재래형 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규제의 완화로 인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후퇴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규제복원과 사전규제 및 산후처벌에 대해서 법제를 강화하고, 기업이나 노동자가 접근하기 쉬운 안전보건 공공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규제완화는 산업재해를 낳고 이것은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서 결국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직접손실비용의 4배에 달하는 간접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이것은 사업주에게 더 큰 손실을 줄 것이다. 지난 2005년 6월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산안법의 처벌수준이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또한 1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영업비밀로 MSDS 작성, 게시를 하지 않았던 물질 가운데 직업성 암 등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칭, 성분, 함유량을 명시토록 하여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구축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노동자 참여구조는 막혀 있다. 현행법상 구성돼 있는 기구는 산업안전보건위(제19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61조), 작업중지권(제26조)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을 노사가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를 두어야 하며, 유해위험업종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된다.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법 해당 공사는 150억) 이상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10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1,000인 이하는 노사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분기별로 열어야 하며 노사대표는 각 9인 이내에서 동수로 구성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지난 1995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현행 근로감독관제도의 문제점에서 출발해, 사업장을 맡고 있는 산업안전감독관 숫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올해 5월 현재 각 지방청별 산업안전감독관수는 정원 325명(현원 306명)으로 1인당 담당 사업장수가 3,198곳(정원 기준), 담당 노동자수가 3만 2,225명에 이른다. 정부의 산업안전감독에 대한 행정역량이 한계에 다다르자 노사자율에 의한 산재예방의 일환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⁵³⁾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다. 산업안전보건위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확실히 다른데,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산업안전보건위를 구성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해 노사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회사쪽이 기피하면 실제 이행이 잘 되지 않으며, 정부가 위촉한 4천여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실제 사업장에서는 제약이 많다.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며, 노조의 힘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 독립성이 없어서 회사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된다. 반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제대로 일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2005년 노말혁신 사건을 밝혀낸 이가 바로 안산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 역시 노조에서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 한, 사업주쪽에서 중지권 발동으로 인한 손해를 물을 경우 우선권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노동조합을 통한 대의제적 참여권의 확보이다. 즉,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작업중지권을 작동시킬 수 있는 참여구조를 노조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시간 확보, 업무권한 확대, 노사의식 제고, 업종별 세분화 교육, 대상 사업장의 범위확대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사업주의 책임 강화이다.⁵⁴⁾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는 산재사망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주체도 없다. 선진국의 경우에 이러한 사업주

53) 현행법상 사업주는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는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이것이 이뤄졌을 경우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작업중지권이다.

54) 이 주장은 매일노동뉴스에서 2005년 기획특집으로 보도하였던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캠페인에 근거하고 있다. 이하의 도표는 해당 기획기사의 자료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책임 강화를 위해서 노동자를 사망케 한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재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물론 일부는 형사상 과실치사로 처벌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2000년도 한 해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가 이루어진 9,246건 중 구속상태에서 공판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5건에 불과하며, 구속자 수 역시 상당히 낮다.

그림 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처리인원과 조치현황(1986~2001)

년도	산재 사망 자수(A)	처리인원 총계(B)	구속조치			불구속조치
			계(C)	C/B (%)	C/A (%)	
1986	1660	466	29	6.2	1.7	437
1987	1761	374	50	13.4	2.8	324
1988	1925	630	54	8.6	2.8	576
1989	1724	495	22	4.4	1.3	403
1990	2236	967	25	2.6	1.1	942
1991	2299	1514	17	1.1	0.7	1497
1992	2,429	-	-	-	-	-
1993	2,210	2398	37	1.5	1.7	2361
1994	2,678	3134	7	0.2	0.3	3127
1995	2,662	6099	15	0.2	0.6	6084
1996	2,670	7297	8	0.1	0.3	7289
1997	2,742	3072	41	1.3	1.5	3031
1998	2,212	5692	7	0.1	0.3	5685
1999	2,291	6468	5	0.1	0.2	6463
2000	2,528	9084	47	0.5	1.9	9037
2001	2,748	7545	61	0.8	2.2	7484

출처 : 매일노동뉴스(www.vop.co.kr)

또한 아래의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제1심 선고공판이 이뤄진 것은 108건으로 이중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해 실제 처벌수준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물론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산업재해를 유발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공안사건으로 처리된다. 즉, 노동사건은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수사는 일반 형법처럼 사고에 대한 과실치사상죄의 여부를 추적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의무이행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다. 결

과적으로 예방법의 차원에서는 형량을 높게 구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산재사망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이 있을 경우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어야 산재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과 산업재해 위험요인지 유효하게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주 노동자도 작업장의 위험 요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형사공판사건 재판 인원수(2000년도)

급	접수	합계	사형	판결														소년부송치	기타	합소/살고							
				구 공 판								자격정지	벌금	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	면소				관할위반	공소기각	합소				
				무기	유 기					집행유예	부정기												변방(2009)	변방(2009)			
					10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제실	159	108	-	-	-	-	2	-	-	27	-	-	67	2	1	-	-	-	-	-	-	-	-	-	-	9	11
합소심	13	8	-	-	-	-	-	-	2	1	-	-	2	-	1	-	-	-	-	-	2	-	-	-	-	-	-

출처 : 매일노동뉴스(www.vop.co.kr)

노동부의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재해의 원인으로 3E, 즉 기술(Engineering), 교육(Education), 규제(Enforcement)가 각기 30%정도씩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재해의 우발성을 인적 조건에만 귀인(attribution)시킨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주 노동자와 산업재해 취약계층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함께 유사한 특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산재발생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논증하였다. 마치 재해요인이 연쇄적으로 결합하여 재해를 낳는 것처럼 이주 노동자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그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위치(SEP)가 산재 취약계층으로의 전이를 이끌고 있다. 즉, 사회구조적인 지위가 낮은 경우 산업재해의 위험 요인이 높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유입된 이주노동자, 특히 그들의 지위가 불안정 할수록 그들의 사회경제적 속성변수들이 작업장에서의 산재사망 결과를 야기하는 것에도 상당 수준 매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형성되는 산

재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재생산(reproduction)되고 있다.⁵⁵⁾ 즉, 사회적 배제와 산재사망이 함께 맞물리는 것이다. 이것은 이주노동자에게 이중의 부담(double burden)으로 돌아와 그들의 노동건강권이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게 된다.⁵⁶⁾

제3장 결 론

작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주측은 노동자에게 교육을 충실히 해도 그들이 보호구 착용을 태만히 하고, 작업에 집중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80%라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과실은 기업의 성장논리에 의해서 또는 작업속도와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원청의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게다가 산재가 발생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거나 산업과 특근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준다. 물론 산재가 발생하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⁵⁷⁾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장기적으로 손해가 간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산재처리를 하면 특별근로감독을 받는 등 불이익이 많아서 법을 지킬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많다. 산업안전담당자나 산업안전관리비가 모두 작업공정시에만 임의로 있는 구조에서는 산재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가 어렵다. 산재은폐는 정부가 지방노동사무소에 재해율 목표실적관리를 위해 은폐를 방조하고,

55) 이것은 사회계급별로 상이한 건강행위가 유병률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대비된다(손미아, 2002). 사회계급이라는 구조적 조건이 행위자를 통해 매개되어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계층별 사망률 자체의 불균등 분포는 지속적인 관심사이다(보건복지부 외, 2005). 개인 간 변이가 아닌 사회경제적 위치지표가 건강 수준의 차이를 야기한다면 산업재해 역시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 Whitehead, 1992)’의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56) 이주 노동자의 전반적인 유병률과 의료 접근성(medical service accessibility)에 대해서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2001)를 참조. 이 보고서는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 전반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다루지 않고 있다.

57) PQ제도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천대 건설업체를 선정해 매년 요양 4일 이상 모든 재해자수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노동자수의 백분율로 산출, 개별업체 재해율이 업체 평균재해율보다 높고 낮음에 따라 2점을 가감하는 범위 내에서 6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경우 재해율이 PQ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차원에서 은폐하고, 노동자는 불이익 및 고용불안 때문에 스스로 산재를 은폐하는데서 발생한다. 따라서 규제, 처벌, 불이익에 의한 제도운영보다는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산재를 자율관리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중심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한계를 파악하여 산업간호사와 위생지도사 등을 육성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충원하여 1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된 산재보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한다. 자율안전보건체제의 구축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CBT를 이용한 관계분석을 해결하는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스스로 자신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자율안전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

1. 이주 노동자의 노동건강권

노말렉산에 걸린 타이의 이주 노동자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는 특수건강검진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었다. 또한 2002년에도 경기도 안산에서 중국 노동자 3명이 노말렉산 판정을 받았었던 만큼 이런 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 실태 역시 상당히 감춰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동아일보, 2005/1/15, 8면). 현행 규정상 유해물질(총 120종)을 다루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독성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에 한번씩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은 1인당 과태료 20만원에 불과하며 더욱이 불법체류자들은 의무 검진대상이 아니다.⁵⁸⁾

이주 노동자 고용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가운데 한가지만 선택하도록 돼 있는 ‘1사1제’ 원칙이 2005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을 쓰고 있는 기업이라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 노동자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지 3년이 지났다. 또 정부가 올해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 폐지와 외국인고용허가제로의 제도 일원화도 탄력을 받고 있다. 당시 1사1제도의 폐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58) 이주 노동자가 특별히 내국인 산재 취약계층보다 더 차별받는 부분 중 하나는 이와 같은 건강검진이다. 이 문제는 비단 작업장 내의 것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산재가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이주 노동자의 경우 그들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모두 내국인보다 제도적, 절차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이다(내일신문, 2007/ 6/05).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서울경제신문, 2005/6/24).⁵⁹⁾ 그리고 고용허가제는 전지구적 인권규범을 준하는 제도로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 ‘이주노동자 교체순환 원칙’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다. 즉, 이 제도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하여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한 이주 노동자의 봉건제적 신분 구속이라는 비판이 있다(한겨레, 2007/7/5 30면). 그러나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는 결국 변화된 노동시장과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인력구조를 위해 필요하였다.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에 대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사회회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국내 노동이민 정책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충원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연수생이라는 편법으로 유린된 이주 노동자의 인권 역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기업들도 합법적인 제도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제도보다 진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의 관심은 이러한 고용허가제가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낮추는데 어떤 효과를 주었느냐는 것이다. 이것만을 목적으로 한 제도는 아니었으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합법화는 전반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그들의 산업재해 발생을 억제하는 것에도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직 이에 대한 공개된 재해통계는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도변화에 노동자의 인권 개선이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나타났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절실하다. 제도와 법과 같은 것이 인권과 관계맺는 것은 추상성을 탈피할 때 타당성(validity)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문기 외, 2003).

2.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이주 노동자, 특히 불안정한 지위의 미등록 노동자의 노동건강권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CBT이론의 관계분석에 의하면, 이것은

59) 1995년부터 산업연수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은 고용허가제도에는 노동권리를 제약하고 사업자위주로 구성된 조항이 많다고 반발한다.

P-H-X의 관계가 각기 안전, 보건, 법/제도의 영역에서 개선방안이 확보될 때에 가능하다. 안전 영역에서는 보호구 지급과 착용, 영세사업장의 개선지원 사업, 일반안전수칙의 준수, 안전보건 교육자료의 제공이 시급하며, 보건 영역에서는 작업환경 개선과 지속적이고 정밀한 정도관리, 작업관련성 질환의 개선방안 마련,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시행, MSDS 교육과 사업장 비치의 필수적이다. 그리고, 법/제도의 영역에서는 불법취업 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지위를 공식적으로 이주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그들에게도 산재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강보험 혹은 그에 대응하는 진료의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관계는 합법정당한 관계로 개선될 것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행의 안전보건제도 안으로 이주 노동자를 현실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적 조정이 필요하다.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사업 영역으로 이주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면 최소한 같은 물리적 조건에서 산재사망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제도는 현실을 규제하며, 또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실례는 유럽의 노동안전보건제도에서 드러난다. 이상윤(2005)은 유럽에서도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있었으나 각 국가들은 사업주 책임강화와 다양한 노동자 참여구조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77년 노동환경법을 통해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학생, 그리고 군인, 죄수, 환자도 부분 적용을 받게 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74년 노동보건안전법을 통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는 물론 작업장 방문객, 주변 시민까지도 법의 보호를 받도록 그 영역을 확장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되는 ‘안전대표’를 제도화하여 회사로부터 노동안전보건 교육시간과 노동안전보건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도록 하고, 각종 유해요인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스웨덴 역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노동자안전대표를 선출하고 그 임기를 보장토록 했다. 그러므로 제도를 제정하고 이것을 집행하고 운용할 행정기관을 만든다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은 보장될 수 있다.⁶⁰⁾ 아래의 <표8>는 주요국 산업재해 통계 및

60) 이상윤(2005)에 따르면, 영국은 74년 노동보건안전법을 집행하는 기구로 보건안전청을 설립하고 1,500명의 보건안전감독관과 600명의 전문위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법 위반 발견시 사업장을 기소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주고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산출현황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이 어느 위치에 속하며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⁶¹⁾

표 8. 주요국 산업재해 통계 및 산출현황

구 분	한국(2002)	일본(2002)	독일(2002)	미국(2002)	영국('02/'03)
근로자수(천명)	10,571	53,310	30,004	116,863	28,486
총재해자수(명)	81,911	132,339	1,158,562	2,494,300	156,650
재해율(%)	0.77	0.25	3.86	2.14	0.55
사고부상자(명)	75,116	123,179	1,140,539	2,200,300	154,214
사고재해율	0.71	0.23	3.80	1.88	0.54
사고사망자(명)	1,378	1,658	1,354	5,534	227
사망만인율	1.30	0.31	0.45	0.47	0.08
국민소득 1만\$ 달성시기 재해율	2000년 (0.73)	1981년 (0.83)	1978년 (7.57)	1978년 (3.80)	1988년 (0.75)
적용범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50인 미만 사 업주 가입	-전 사업장 -자영업자 포함	-전 사업장 -자영업자 포함	-전 사업장 (자영업자제외)	-전 사업장 -자영업자 포함
산출기준	-요양결정일 -요양(4일이상)	-재해발생일 -휴업(4일이상)	-재해발생일 -휴업(4일이상)	-재해발생일 -의료처치이상	-재해발생일 -휴업(3일이상)

※ 국가간의 비교는 각국마다 통계산출방법, 적용범위, 재해자인정범위 등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곤란하며, 가능한 한국 방식에 적용하여 비교 작성함.

뉴질랜드 역시 2002년 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작업장 사망이 40%나 감소되었다고 한다. 뉴질랜드 노동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이런 결과는 노동자안전보건대표제도를 도입한 덕이었다고 한다.

- 61)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산재 취약계층으로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이런 문제점을 더 잘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001년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용역연구 ‘비정형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재해율은 1.24%로 정규직의 1.16%보다 높았으며 사망만인율은 정규직이 0.29명인데 반해 무려 10배가 넘는 3.09에 이르렀다. 이런 결과는 1998년 노동과건강연구회(현 노동건강연대)가 실시한 금속산업 원, 하청 산재발생 현황조사를 보더라도 원청노동자의 재해율은 0.74%였던 것에 반해 하청노동자는 1.70%에 달했고, 사망만인율은 원청노동자가 1.91%인데 하청노동자의 경우 8.00%에 달했다. 즉, 원청과 하청의 관계는 작업환경 개선을 사내 하청으로 전가하는 관행에서 나타났으며, 이들은 각종 업무량 과다, 불규칙 노동, 안전숙

2004년 한해 동안, 재해자는 총 8만 8천 874명이었고, 사망자는 2천 825명이었다. 즉, 하루에 7.7명꼴로 산재사망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산재사망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주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전체 산업재해의 70%를 차지했고(총 60,423명/전체재해자 88,874명), 건설업종은 산재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총 660/사고사망 1,537명). 또한 50세 이상의 고령노동자의 재해도 늘어 전체재해자 가운데 30.7%를 차지했고, 전체사망자 가운데 46.4%를 차지했다. 여성노동자의 재해도 늘어 재해자 가운데 2,681명이, 사망자 가운데 144명이 여성노동자였다. 최근에도 산재사망 사고, 가스누출 사고, 유해물질 노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질식으로 6명이나 사망했으며, 6~7월에 걸쳐 여수산업단지과 광양산업단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성백혈병 발병이 심각한 상태로 보도되었다(매일노동뉴스, 2005/7/29, 8면). 상태는 이러하나 산업안전보건제도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인 점이 많으며, 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이 더 소외되고 있다.⁶²⁾ 최근에는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부분의 산업재해 실태가 더 드러나고 있는데(한겨레, 2006/1/4), 산재 취약계층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⁶³⁾ 산업재해는

런 미흡 등에 노출되었다(매일노동뉴스, 2005/7/19, 18~21면). 비정규직은 더 높은 강도의 업무량을 소화하면서 위험한 일을 하지만,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은 원청과 하청의 이윤분배 구조 속에서 비정규, 일용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실종시키고, 모든 피해를 최하층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공사원가의 산업안전관리비가 7~8단계의 하청 때문에, 기본적 안전보호구를 구입할 수 있는 여분도 남겨두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은 결국 제대로 된 산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의 비용을 오히려 비정규직을 사용해 이윤으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의 산업안전보건시스템 통합을 주장한다. 이것은 건설업의 원청/하청관계나 50인 미만 영세제조업체에서 나타나는 취약계층, 즉, 이주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우선적이고 통합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 62) 단병호 의원실(2005)에 따르면, 2002년 국내의 총취업자의 규모는 22,169,000명이었는데, 산재보험 적용 임금노동자는 10,571,000명 수준이었고, 산재보험 미적용 임금노동자는 3,610,000명 수준(소규모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5인 미만 농,임,수산업 노동자)이었고, 역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임금노동자는 7,988,000명 수준이었다(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일일노동자, 성매매종사자 등).
- 63) 단적인 예로 2006년에 첫 발생한 벤지딘계 염료 공장 노동자의 방광암 사례는 해당 문제를 위한 예방제도인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노사정의 단결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단결은 어렵고, 취약 계층은 매번 소외당해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는다. 이번 노말렉산 사건의 교훈이 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테오도르 해치(Theodore Hatch)가 말한 세 가지 질문을 인용해 본다. “그곳은 사람이 일하기에 적당한가? 그곳은 내가 일하기에 적당한가? 그곳은 내 아들이나 딸이 일하기에 적당한가?”

<참고문헌>

<논문>

- 김일룡, 2002, “일부지역 이주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태도와 지식 및 행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주, 2001,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현주소를 찾아서”, 문화과학 29호.
- 설동훈, 1996,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미아, 2001, “한 자동차 공장에서 작업부서, 소득, 직위가 재해율에 미치는 영향”, 『한국역학회지』, 23(2) : 52-63.
- _____, 2002, “직업, 교육수준 그리고 물질적 결핍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예방의학회지』, 35(1) : 76-82.
- _____, 2005, “노동과 건강 불평등, 그 근원은 어디인가?”, 『예방의학회지』, 38(3) : 241-251.
- 이상윤, 2005, “유럽의 노동안전보건제도”, 노동사회 7·8월호.
- 이윤심, 2000,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욱, 2002, “이주 노동자의 안전보건실태 및 산재보험 처리에 관한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민수, 이수형, 이상윤, 200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3)의 사망외인 범주를 이용한 산재사망과 사회경제적지표(SEP)의 탐색적 분석 : 대응 분석과 로그 선형 분석의 적용”, 『보건학논집』, 37(2) : 1-14.
- 정지원, 차재호, 1998, “연계수정으로 본 Heider 삼원구조내의 태도 연계와 신념 연계의 질적 차이”,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연차학술발표대회』.
- 하은희, 홍윤철, 1996, “이주 노동자의 근로실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8(1) : 1-14.
- 최재욱, 김정아, 김해준, 박종태, 1999, “한국일부지역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산업보건관리실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11(1).
- 하은희 외, 2002, “이주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산업보건』 통권 제166호, 4-13.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2004),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책임연구원 : 전북대 설동훈 교수).
- 국가인권위원회(2005),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책임연구원 :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 국가인권위원회(2006),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 행동계획”.
- 선한승(2005),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기본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설동훈(2001),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연대를 위한 시민단체 조사연구.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200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2), “이주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3),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5), “역학조사보고서 : 전자부품(LCD FRAME) 제조사업장의 노말렉산 취급자에서 발생한 말초신경염”.

〈단행본〉

-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산업의학센터(2003), 『산업보건학』(제3판), 서울 : 수문사.
- 박홍규(1997), 『법은 무죄인가?』, 서울 : 개마고원.
- 석현호(2003), ‘신고전경제학적 접근과 신이주경제학’, 석현호 외 공저, 『외국인노동자의 일터와 삶』, 서울 : 지식마당.
- 양건(2000), 『법사회학』, 서울 : 아르케.
- 이혜경, 1998,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석현호 외 공저,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서울 : 미래인력연구센터.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2001),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백서』, 서울 : 다산글방.
-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2001), 『외국인 노동자 의료백서』, 서울 : 청년의사.
- 최문기 외(2003), 『인권과 법』, 부산 : 세종출판사.
- 한규석(200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홍대식(2004), 『사회심리학』, 서울 : 박영사.

홍완식(2006),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 법과 사회』,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신문기사〉

내일신문(2005-4-29), ‘임금근로자 1500만명 시대 도래’

내일신문(2007-06-05), ‘기고 : 외국인근로자 체계적 건강관리 절실’

내일신문(2007-6-22), ‘산업안전공단 외국인용 안전보건표지 보급’

매일노동뉴스(2005-4-21), ‘산재행정체계 일원화 검토해야’

매일노동뉴스(2005-4-26), ‘노동자 1천만명 산재보험에서 배제당해’

매일노동뉴스(2005-4-27),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출범’

매일노동뉴스(2005-5-10), ‘현행법은 기업주 처벌을 원치 않는다’

매일노동뉴스(2005-5-25), ‘노동자 결정권 없는 안전보건은 허구’

문화일보(2004-12-30), ‘산재손실이 ‘노사분규’의 5배’

중앙일보(2005-4-17), ‘산재사망 한해 3000명인데...’

한국경제(2004-9-23), ‘조선족 여성 10명중 6명 식당에서 일한다’

한겨레(2006-01-04), ‘벤지딘 염료 노동자 방광암 첫 발병’

한겨레(2007-7-5), ‘세 번의 자유에 대한 조소’

한겨레(2007-7-10),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예외 인정방침’

한겨레(2007-7-30), ‘산업재해 발생률 여전히 후진국 수준’

〈기타자료〉

노동부(2002), “법률 제6847호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200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노동부(2003), “비정규직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실태 및 보호방안”

노동부 보도자료(2005-5-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
주 노동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이 현행 1년에서 6월로 단축’

단병호 의원실(2005), “노동정책,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

법무부, “이주 노동자 2000년 통계”, 출입국관리소, 2000.

산업보건(2000), 2월호.

EBS(2005), “하나뿐인 지구 : IT 강국의 두 얼굴 - 앓은뱅이가 된 코리아 드림”,
4월 11일 22시 방영.

한국산업안전공단(2000),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2001), “비정규노동자 안전보건실태조사”

한국산업안전공단(2003), “산업안전보건법령집”

한국산업안전공단(2003),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관리 -노말핵산”

한국산업안전공단(2005), “산업안전보건 보도모음집(2003~2004)”

〈인터넷자료〉

<http://www.kosha.or.kr/>

<http://www.welco.or.kr/>

<http://www.molab.go.kr/>

<http://mumk.net/>

<http://jcmk.jinbo.net/>

<http://www.jplic.org/>

〈영문자료〉

Aday LA(2001), At RISK IN AMERICA : The Health and Health Care Needs of
Vulnerable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2nd, JOSSEY-Bass, A Wiley
Company, San Francisco, USA. 2001.

Appleton & Lange(1997), A Textbook of Modern Toxicology, Eds Hodgson, Levi
2nd Ed.

Berkman L, Kawachi I Eds(2000), Social Epidemi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Blau P(1974), Parameters of Social Structu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615-635.

Casarett & Doull(2001), Toxicology : The Basic Science of Poison, 6th Ed,
McGraw-Hill.

Kang YH, Lynch JW, Kaplan GA(2004), “Health inequities in Korea : Age-and
sex-specific educational differences in the 10 leading causes of death”,

-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58 : 308-314.
- Massey D, Arango G, Hugo A, Kouaouci A, Pellegrino A, and Taylor J.(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 431-466.
- Marmot MG, Rose G, Shipley M, Hamilton PJ(1978), "Employment grade and coronary heart disease in British civil servants", Journal of Epidemiology Community Health, 32(4) : 244-249.
- Mulhausen JR & Damiano(1998), A Strategy for Assessing and Managing Occupational Exposures, 2nd ed. Fairfax Vagina : AIHA press.
- Tilly & Tilly(1998), Work Under Capitalism, Oxford : Westview Press.
- Whitehead M(1992)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equity and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 22(3) : 429-445.
- WHO(1991), Environmental Health Criteria 122, n-Hexane, Geneva : WHO.

〈보론1〉

2004년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분석 및 평가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는 전 산업의 고용보험가입 사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체 중 2,500개 제조업체와 500개의 건설업,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1,000개의 기타 산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것으로 그 규모와 조사 방법에 있어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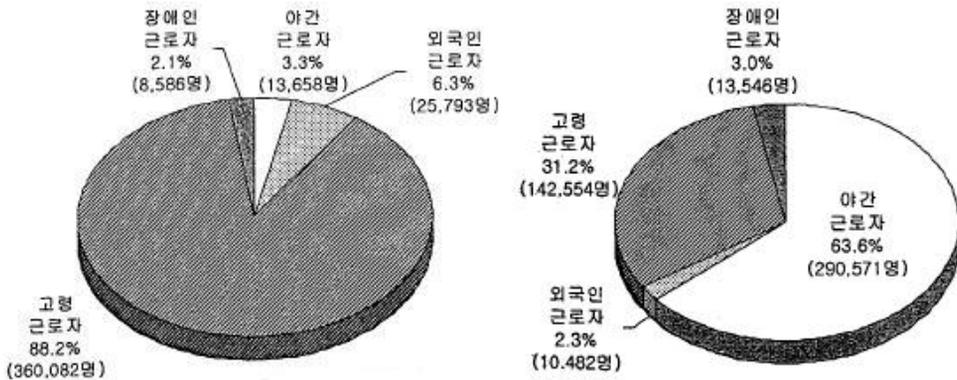
1) 취약계층(야간, 외국인, 고령, 장애인) 근로자 고용 비율 추이

내용 업종	2002	2003	2004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비정규직 비율
제조업	20.6%	17.2%	21.3%	1위 : 절단 2위 : 협착	직업성 요통	약 7~8%
건설업	7%	15%	13%	-	-	약 80%
비제조업	12%	11.7%	14.7%	-	-	약 15~25%

※ 취약계층의 비율을 전반적으로 파악했을 때, 제조업의 20%, 건설업과 비제조업의 15%까지를 취약계층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 역시 건설업과 같은 업종에서는 상당수에 달하므로,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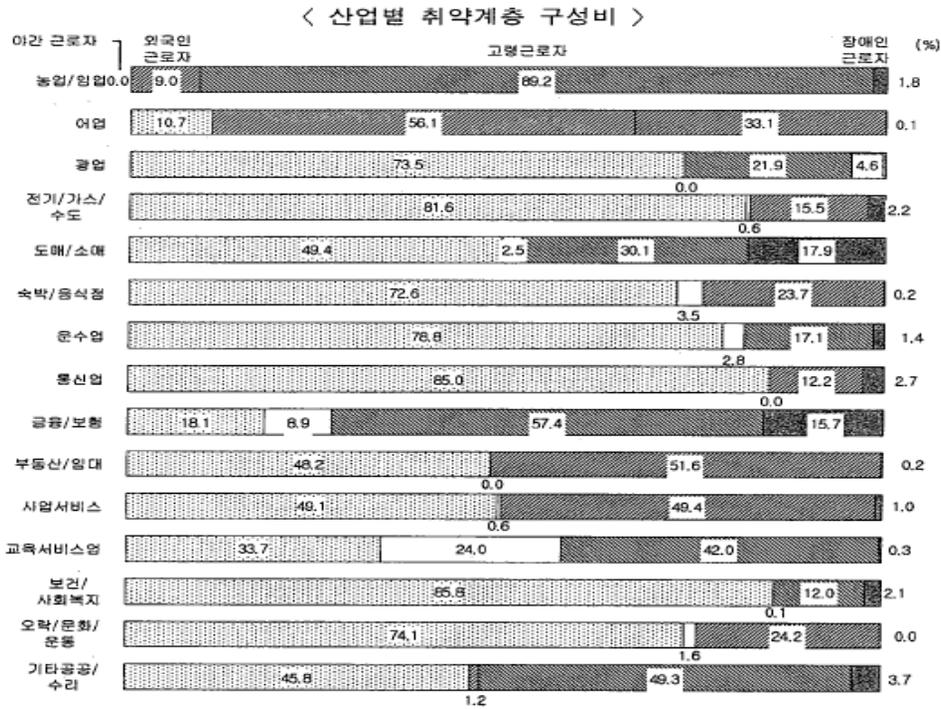
2) 건설업과 비제조업의 취약계층 구성비

[건설업(좌) 취약계층 근로자 수 : 408,119명, 비제조업(우) 취약계층 근로자 수 : 457,153명]



※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은 제조업 이외의 건설업과 비제조업의 취약계층 구성비를 보면, 이주 노동자는 각기 3.3%와 2.3%에 그치고 있다. 물론 고려되지 않은 불법취업근로자 비율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고된 구성비에만 따른다면 이주 노동자만을 위한 독립된 정책보다는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산업별 취약계층 구성비



※ 산업별 취약계층 구성비를 보아도 야간근로자와 고령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변화된 산업구조에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 행정력 집행의 유인이 없고 역차별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주 노동자를 단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펴기 보다는, 이주 노동자를 취약계층 근로자 범주에 포함시켜 동일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 취업 현황(2005. 7월, 단위 : 명)(출처 : 노동부)]

현재 시행 3년을 맞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산업

전체	349,063
등록(합법)체류자	152,485
-고용허가제 입국자	14,835
-고용특례자(외국국적 포기)	18,931
-전문기술인력	22,135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	80,170
-해외투자 기업연수생	7,056
-합법화 조치자	9,358
미등록(불법)이주 노동자	196,578

연수생으로 외국인력을 운용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합법적 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미등록 이주 노동자 처리 문제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산업연수생제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 여전히 이주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

〈보론2〉

2004년도 이주 노동자 재해현황

1) 취업신분별 업무상 산업재해 현황

(단위 : 명)

구 분	재해자	사망자	업무상 사고			업무상질병		
			계	부상자	사고사망자	계	이환자	질병사망자
계	2,724	74	2,684	2,617	67	40	33	7
합법취업	1,581	28	1,562	1,536	26	19	17	2
남자	1,393	27	1,378	1,353	25	15	13	2
여자	188	1	184	183	1	4	4	0
불법취업	871	37	856	824	32	15	10	5
남자	761	32	750	722	28	11	7	4
여자	110	5	106	102	4	4	3	1
산업연수생	272	9	266	257	9	6	6	0
남자	250	7	245	238	7	5	5	0
여자	22	2	21	19	2	1	1	0

2) 취업사업장 규모별 현황

3) 재해발생 형태별 현황

구 분	재해자	사망자
계	2,724	74
5인미만	822	15
5인 ~ 9인	445	9
10인 ~ 15인	341	7
16인 ~ 29인	435	7
30인 ~ 49인	261	7
50인 ~ 99인	213	4
100인 ~ 199인	101	5
200인 ~ 299인	43	8
300인 ~ 499인	19	4
500인 ~ 999인	17	5
1,000인 ~ 1,999인	7	1
2,000인 이상	20	2

구 분	재해자	사망자
계	2,724	74
추락	265	31
전도	209	3
충돌	213	2
낙하·비레	234	4
붕괴·도괴	18	0
감김·끼임	1,310	8
절단·베임·질림	227	1
감전	11	2
폭발	32	5
파열	11	0
화재	30	5
이상온도·기압 접촉	42	1
빠짐·익사	2	1
사고성 무리한동작	15	0
기타 무리한동작	1	0
분류불가 무리한동작	19	0
유해화학(중독)	16	1
산소결핍	2	1
사업장내 교통사고	5	2
도로교통사고	11	0
직업병(진폐 제외)	4	1
작업관련질병(뇌심 등)	36	6
기타	4	0
분류불능	7	0

4) 국적별 재해자 현황

국적별로 재해자의 순위를 매기면 중국(1,186), 인도네시아(183), 베트남(163), 방글라데시(154), 파키스탄(137), 우즈베키스탄(132), 필리핀(127), 태국(111), 몽골(106)의 순이었다(괄호안은 재해자, 100명 이상인 경우만 나열).

5) 업종별 재해현황

제조업이 2,09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는 건설업 395명이었다. 제조업 내에서는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4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화학제품제조업 311명이었다.

6) 질병별 재해현황

2004년도에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 40명과 사망자 7명 가운데에서는 뇌혈관질환이 재해자 21명과 사망자 4명을 기록해 절반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 이상과 같은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4년의 이주 노동자 재해자 및 사망자는 2,800명에 달했는데, 이주 노동자의 수를 35만명으로 추산했을 때 이는 내국인의 재해율 및 사망률과 비슷한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위의 자료에서는 합법취업자 재해자가 1,900명에 달하고 불법취업자는 900명 정도에 그쳐 노동부에서 추산하는 합법취업자 15만, 불법취업자 20만에 비하면 합법취업자의 재해율이 오히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위의 자료 출처가 관련업무 담당 공공기관으로 추정되는 바, 불법취업자에 대한 산업재해자 현황이 과소집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보정할 민간기관이 없는 바, 우리는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오히려 취약계층의 산업재해 문제로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사업장 규모, 재해발생 형태, 업종별 재해현황을 볼 때, 이것은 단적으로 50인 미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재해발생 형태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불법취업 이주 노동자의 신분 문제가 고용허가제의 개선과 관련 기관인 출입국 사무소 및 법무부의 조율로 나아지기 전까지는, 이주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재해예방 사업으로 묶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임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재해현황 및 제도적 제약으로는 이주 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신분

과 인종'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작업장(workplace)'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다시 말해, 내국인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현황과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현황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산업재해의 기인성을 그들의 내인적 요소에 귀인(attribution)시키기 보다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작업한 작업장의 영세함과 안전보건 설비의 미흡, 그리고 적절한 안전교육 제도의 미비라는 외인적 요소에 귀인시키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 하겠다.

〈참고자료1〉

유해물질의 분류 및 관리체계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정 보완)

I. 유해물질의 분류체계

구 분	종 류	관련 법규
관리대상 유해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68종 - 유기화합물 113종 - 금속류 23종 - 산·알카리류 17종 - 가스상물질 15종 ※ 발암성 9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안법 제24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 제11장, 별표 7
허가대상 유해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4종 - 디클로로벤지딘 등 14종 ※ 발암성 및 발암성 의심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안법 제38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 제12장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석면 등 총 66종 - 산안법 : 청석면 등 11종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5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안법 제37조 - 제13장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시행령 제29조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89종 - 관리대상유해물질 : 168종 ※ 일부물질은 차이가 있음 철(관리대상)→산화철(측정대상) - 허가대상유해물질 : 14종 - 분진 : 6종 - 금속가공유 : 1종 ※ 물질적인자 : 소음, 고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안법 제42조 ○ 노출기준고시(698종) ○ 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 - 건강장해물질 - 물리적위험물질 - 환경유해물질 ※ 대상물질 1%(발암성 0.1%) 이상 함유 물질 ◎ 적용제외 - 방사성 물질, 농약, 사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안법 제41조 ○ MSDS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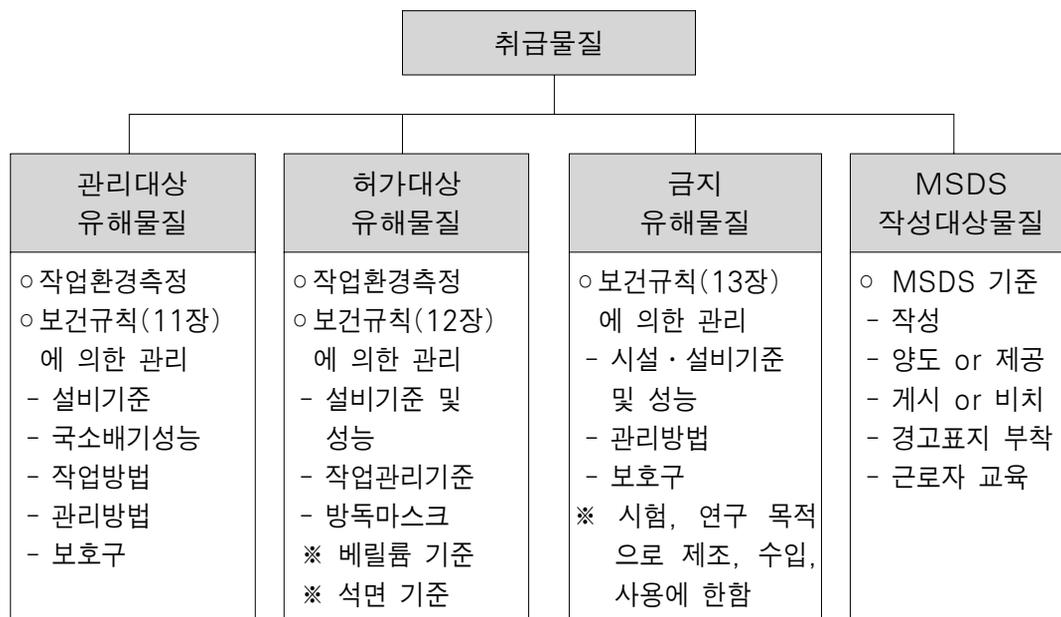
※ 관리대상 물질중의 발암성 물질 9종

- 벤젠, 1,3-부타디엔,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불용성화합물, 삼산화안티몬,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산화에틸렌

II. 유해물질 관리체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규칙
제24조 보건상의조치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11장 관리대상유해물질 건강장해 예방조치 - 유기화합물 113종 - 금속류 23종 - 산·알카리류 17종 - 가스상 15종
제37조 제조등의 금지	제29조 금지 유해물질 종류 ※산안법 및 유해 화학물 질관리법 공통 적용	제78조 승인신청 사항	제13장 금지유해물질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38조 제조등의 허가	제3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종류	제79조 허가신청 및 심사	제12장 허가대상유해물질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제32조의3~ 제32조의6 지정측정기관 관련	제93조~97조의3 - 작업환경측정 - 대상유해인자 · 관리대상유해물질 · 허가대상유해물질	
제43조 건강진단	제32조의7 건강진단기관 관련	제98조~제107조 건강진단 실시 관련 제107조의2~3 역학조사 관련 제108조~115조 건강관리수첩 관련	제11~12장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 개정 예정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등		제81조 유해인자 분류, 관리 제81조의2 노출기준 설정 698종	
제40조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조사	제32조 제외 대상	제86조~92조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등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제32조의2 MSDS 작성제외	제92조의2~3 MSDS 기재, 작성 제92조의4~5 경고표지부착, 교육 제92조의7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Ⅲ. 대상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내용



〈참고자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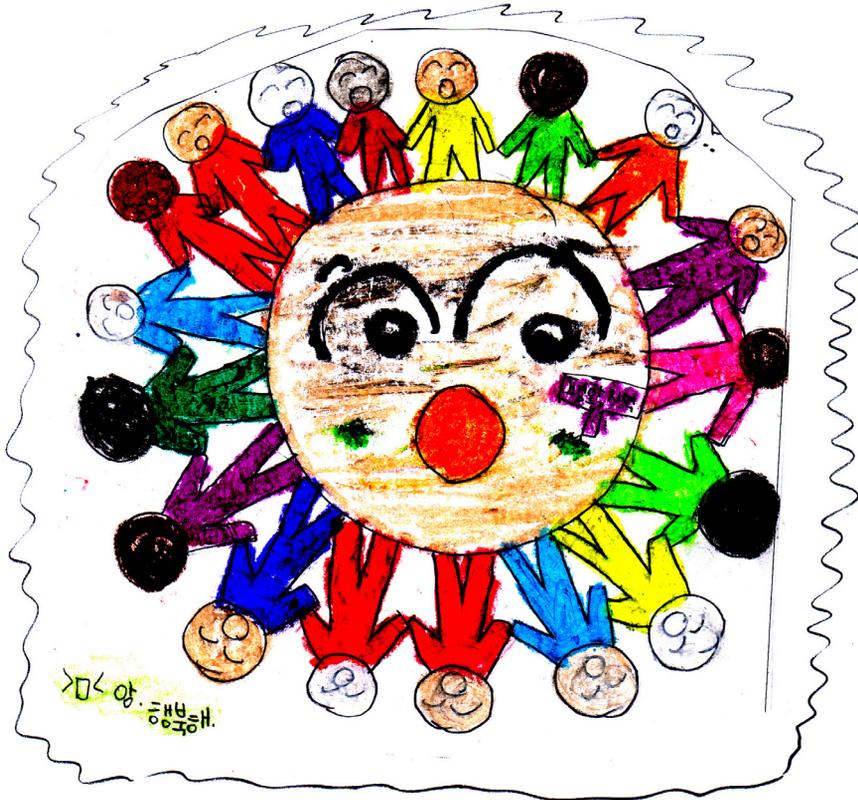
이주 노동자용 교육자료의 연도별 개발현황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정 보완)

자료명	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계	88종 498,240부	8종 99,300부	16종 155,220부	4종 43,000부	42종 165,264부	18종 35,456부
비디오	10종 16,120개	1종 2,300개	1,820개 (‘02년판 추가제작)	1종 3,000개	4종 4,400개	4종 4,600개
산재사진 전시패널	18종 1,620개	-	-	-	6종 864개	12종 756개
교육책자	4종 107,900부	1종 22,000	1종 39,900	1종 16,000부	-	1종 30,000부
표준교안	1종 100개	-	-	-	-	1종 100개
포스터	17종 118,000매	2종 15,000매	4종 41,000매	1종 12,000매	10종 50,000매	-
안전보건표지	18종 98,500개	-	7종 36,500매	1종 12,000매	10종 50,000매	-
원페이지 기술자료	12종 60,000매	-	-	-	12종 60,000매	-
표어	6종 66,000매	2종 30,000매	4종 36,000매	-	-	-
스티커	2종 30,000매	2종 30,000매	-	-	-	-
개발언어		10개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태국어, 러시아어, 스리랑카어, 몽골어, 파키스탄어)	9개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태국어, 러시아어, 스리랑카어, 몽골어)	8개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태국어, 러시아어, 스리랑카어)	8개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태국어, 러시아어, 스리랑카어)	5개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우수상

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공부방 인권수업을 중심으로 -



* 이미지는 3차 인권수업 8차시 '지구촌에 평화를!'의 활동결과물임.

김푸른샘 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요 약

인권교육! 따뜻하고 역동적이어야 할 인권교육은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가?

이 연구는 저소득층 공부방 아이들의 심각한 인권부재 현상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인권수업을 실행함으로써, 이들의 인권감수성을 신장했던 현장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연구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3학기에 걸쳐 공부방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행되었다. 본 연구의 인권수업은 아이들의 참여중심적이고 활동 중심적인 수업, 체험을 중시하는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1차 수업(2006년 7월~8월 실행)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등학생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공부방 아이들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고 2차 수업(2007년 1월 시행)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상자료실의 영상자료를 대출하여 영상수업을 진행하였다. 3차 수업(2007년 8월 시행)은 2차 수업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강조하는 수업, 특히 지역사회 여러 단체와 연결하여, 인형극의 도입, 외부 성교육강사 섭외 등으로 성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집약적으로 실시하였다.

1차, 2차, 3차 매 수업시간마다 기록했던 참여관찰일지와 아이들의 수업결과물을 중심으로 인권수업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스며들어가고 아이들의 인권의식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또 아이들의 몸짓은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의미는 인권교육을 이상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공부방에 살아 움직이는 교육으로 현실화시켰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튼실한 인권나무를 심고 건강한 인권밥상을 차렸다는 데에 있다.

인권교육, 살아 움직여야 할 인권교육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어디서 타오르고 있는가?

목 차

들어가며	89
I. 서 론	9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1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93
II. 이론적 배경	94
1. 인권교육의 의미와 내용	94
III.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인권교육의 실제	101
1.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101
2. 자원봉사프로그램과 인권교육과의 관련성 분석	104
IV. 연구의 설계	107
1. 연구의 대상 / 2. 연구의 기간 / 3. 연구의 동기	107
4. 연구의 방법	109
V. 수업 진행 및 연구 결과	111
1.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파올로 프레이리)	
- 공부방에서 인권교육 적용의 실제	111
가. 1차 수업의 실제	111
나. 1차 인권수업의 반성과 2차 인권영상수업의 실제 ..	126
다. 3차 수업의 실제	132
2.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 인권수업 결과 분석	136
VI. 결론과 제언	157
1. 결 론	157
2. 제 언	160

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공부방 인권수업을 중심으로

김 푸 른 샘

들어가며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 파올로 프레이리

인권, 그 얼마나 가슴 설레는 주제인가요?

인권교육, 그 얼마나 심장 쿵쾅거리는 역동적인 몸짓인가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솔로몬공부방’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그런데 2006년 여름방학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10여 일 동안 인턴십을 하면서 나의 삶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인권과 환경을 심각한 눈길로 돌아보게 되었고, 서로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무성한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인 몸짓이어야 한다는 것도 체득한 것이다.

인턴십의 일환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인권이라는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며 개선하는 활동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을 진정했는데, 이때 들어간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인권의 보물창고’를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서 ‘초등학생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보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보물이 몇 년 동안 안타깝게만 바라보던 공부방 아이들의 분열, 즉 잦은 싸움, 욕설, 차별, 무시, 따돌림, 폭력(성폭력 포함) 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보물을 활용해 공부방에서 인권수업을 해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인권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달콤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인권교육자의 체계적인 전문성의 부족은 독서, 국가인권위원

회 등 인권관련 단체 웹사이트 탐색, 각종 인권단체의 인턴십 프로그램, 워크숍, 포럼 참여 등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지만, 공부방을 둘러싼 반인권적인 환경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공부방에서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인권수업을 하는 것을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달갑지 않게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권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또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관한 의견이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했다. 그리고 이번의 논문 공모가 이러한 간절함을 느끼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자원봉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여 이에 응모해 보기로 했다.

나는 지난 3학기의 방학 동안에 행한 3차 인권수업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더불어 인권교육의 현주소와 더불어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그리고 공부방이 축소된 사회 모습이라면 공부방을 둘러싼 여러 환경 등을 그대로 보여 주면서 인권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이 학교교육의 정규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알맹이 있는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은 지금, 인권교육이 학생들의 내실 있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괴테는 “한 사람을 현재 그의 모습으로만 대우한다면 그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만, 그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 인물로 존중한다면 그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큼 우리의 삶에 자유·평등·평화를 부여하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둘러 인권교육을 확산시켜야 하고, 그 인권교육이 늘 살아서 꿈틀거리게끔 만들어야 한다.

아직 나의 공부방 인권교육은 완성형이 아니고 지금도 내일도 진행되어야 할 진행형이며, 그만큼 미숙함을 곳곳에서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성장형이다. 그렇지만 이 논문이라는 딱딱한 형식을 비집고 들어가 따뜻하게 펼쳐낼 그간의 경험 - 공부방에서의 흥미진진했던, 황홀하고 만족스러웠던, 어이없던, 가슴 아팠던 일들은 인권교육이 펼쳐나가고 늘 살아서 꿈틀거리게 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교실 밖 인권수업은 지금 꿈꾸는 중, 꿈꾸며 해바라기처럼 타오르고 있다. 흑

은 아침이면 청보라빛으로 환히 웃는 나팔꽃처럼. 또는 인권을 배우며 생생하게 살아나는 아이들처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편적 인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작은 장소, 너무나 가깝고 작아서 세계 어느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그곳이 개개인의 세계일지라도 말입니다. -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자신이 다니는 학교, 자신이 일하는 농장이나 사무실도 모두 개개인의 세계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모든 남녀노소는 차별 없이 공평한 정의, 동등한 기회, 동등한 존엄성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보편적 인권이 의미가 없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보편적 인권이 가정 가까이에서 실현되도록 시민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넓은 세계로의 진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¹⁾

- 엘리노어 루즈벨트 Eleanor Roosevelt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이미 인권활동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1999년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우리교육이 후원하고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관)에서 이기규는 “인권교육은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인권 침해에 대해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며 다른 사람의 인권 현실에 대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 스스로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지적인 지식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실천을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인권교육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였다.²⁾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권교육이 절실할 만큼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 IMF 이후

1) 엘리노어 루즈벨트, “우리의 손에 In our hands”(1958년 세계인권선언 10주년 기념 연설)

2)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2005,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53쪽 18줄~23줄

경제적인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지역적,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불평등이 늘 존재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가정 해체가 확산되어 결혼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탈북자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소외 계층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 약자와 소수에 대한 인권 침해, 곧 실업과 빈부 격차, 인종, 연령, 성별, 학력, 학업 성적, 외모 등을 이유로 차별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행위 등은 이미 폭넓게 일상화되어 있으며, 아주 작은 공간인 공부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권 유린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아이들의 습관이 자라서 사회의 체질이 된다. 지금 공부방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랄한 인권 유린의 싹들이 2~30년 뒤에는 허물기 어려운 인권 유린의 벽이 되어 사회를 둘러쌀 수도 있다. 그런데도 경제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가정의 해체가 가져온 방임과 유기, 결혼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 그에 따른 낮은 자존감,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소외의 자리에 있는 공부방 아이들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인권을 존중하는 습관을 체질화할 수 있게 하는 인권교육을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할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만 하는 쓸데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어른들의 현주소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의 최고 목표라면 물질적인 풍요를 획득할 수 학력을 쌓는 것 이상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매우 시급한 일이요, 공부방의 자원봉사자로서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책임이요 의무라고 생각한다.

‘자원봉사란 사회 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되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 인간 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낮은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성 구현을 통해 자아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다.’³⁾라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87)는 정의하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활동과 인권교육은 서로 공존, 합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김동배,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2005, 71쪽 3줄에서 9줄까지 재인용

그리고 인권교육이 학생들에게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게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는 만큼 인권교육은 일회적인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도록 꾸준히 계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하여 피드백을 함으로써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공부방에서의 인권교육은 “지금,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장소”에서 실천적으로 행할 수 있고 또 행해야 하는 시민행동으로서,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올바른 습관을 체득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권활동이며, 학생의 신분으로 내실 있게 행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부방 현장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행하면서 분석, 정리해 본 것을 바탕으로 하여 첫째, 공부방 자원활동으로서의 인권교육이 지니는 유의미성을 정리하고, 둘째, 보다 체계적인 ‘자원활동으로서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 가. 이 연구는 연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000 공부방, 아동 50여명의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단일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지역, 우리나라 전체의 아동으로 일반화시켜 해석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 나. 이 연구는 3학기 동안의 방학 - 2006년 8월, 2007년 1월과 8월에만 이루어져 지속적인 변화 추이를 명료하게 확인해 내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의 인권교육의 효과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 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서 수업자(봉사활동자)의 수업일지, 학습자의 결과물과 사진, 다른 수업자(봉사활동자)의 행위나 말만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여타의 연구 결과와는 신뢰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라. 이 연구는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성공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보고가 아니라 공부방이라는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수업자(봉사활동자)와 아이들의 인간관계에 관한 보고로서, 공부방 아이들의 환경, 습관, 가치, 표정, 태도, 인권감수성의 변화, 즉 아이들과 함께함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인 사례 분석을 사용하였다.
- 마. 공부방 자원활동으로 인권수업을 진행하면서 겪은 현장의 문제를 기술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을 위해 실천적으로 노력했던 다양한 기록들이 이 연구의 범주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인권교육의 의미와 내용

가. 인권교육의 정의

“인권교육은 모든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권교육을 단순히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서만 국한시키지 않고, 구체적으로 획득하고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개념화하였다.”⁴⁾

태로우(Tarrow)는 “인권교육이란 ‘교육의 특별한 내용과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의식을 발달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추며,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복돋우어 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⁵⁾ 그리고 오랫동안 시민운동으로 인권교육에 힘써 온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교육을 “학습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억압과 착취를 현실로부터 스스로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4) ‘평화·인권·교육’, 강순원, 한울아카데미, 2000, 181쪽

5) 민주시민의 교육 방법, 허영식, 1997, 학문사, 254쪽

설계된 교수-학습의 과정”⁶⁾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자신을 삶의 주체로 세워 다른 사람들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 변화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권교육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의식적인 정교화된 학습,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

인권교육의 목표는 바로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서 표현하는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의 정신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에서는 인권교육의 목표를 “첫째,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권교육은 다양한 인간과 집단에 대한 이해와 관용, 평등과 우정이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회적 참여를 행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해 놓고 있다.⁷⁾

이러한 인권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내용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인권운동사랑방’은 다음과 같이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가치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 여기서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익히는 과정을 의미하며 ‘인권을 위한 교육’은 일상적 삶을 인권의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6) ‘교사를 위한 인권운동워크숍’, 인권운동사랑방, 2000, 7쪽

7)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4, 22~23쪽에서 발췌 정리함.

8) ‘교사를 위한 인권운동워크숍’, 인권운동사랑방, 2000, 20쪽에서 정리함.

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면위원회도 인권 존중을 내면화하기 위한 4가지 학습지표⁹⁾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모듈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모듈은 인권을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이다. 세 번째 모듈은 인권의 존중, 보호 그리고 증진이다. 네 번째 모듈은 국제적 유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상의 주장처럼 인권교육을 실시해 온 여러 단체들의 이론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권교육의 내용을 지식의 영역, 가치·태도의 영역, 실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보고 있고 이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포함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공부방에서의 인권교육, 인권수업의 목표와 내용을 기획하고 인권수업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인권교육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인권운동사랑방,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소수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송현정은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인권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¹⁰⁾에서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현황에 대해 학교, 정부기관, 인권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운영 현황

독립된 인권교육 과목이나 교육과정에서의 특별한 내용 강조 없이 사회과, 도덕과 등 관련 교과에서 일부 다루어지고 있으며, 고등학교 재량활동을 위한 인정교과서로 인권교과서가 1종 개발되어 있으나 인권 교과목을 채택한 경우가 극

9)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인권교육의 기법-청소년을 위한 인권학습자료집, 1997, 인간복지 11~24

10) ‘유럽·미국의 인권교육 실천과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인권교육 국제워크숍 자료집), 2006,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인권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 송현정 102~114쪽에서 정리함.

소수이다. 게다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친다는 교사의 응답 비율은 80.0%로 높게 나타나 있지만 이들 중 65%가 실제로 한 학기 동안 인권관련 수업 횟수가 5회 미만으로 나타나 인권관련 수업이 매우 적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에서도 최근 일 년 간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활동(수업, 조·종례 등)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실시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38.1%였으며, 1~2회 33.8%, 4회 이상 14.6%로 응답하였다고 한다.

다행히도 교사들이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재량시간이나 특별활동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려는 노력이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초등교사 인권모임 ‘애들아 인권교육하자’(2004)와 중고등학교 사회교사 인권교육 모임인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2003) 등이 활동하고 있다.

(2) 정부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운영 현황

2003년에 중앙행정부서, 위원회, 중앙 및 지방 공무원교육원, 교육연수원을 포함한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기관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70개 정부기관 중 현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17개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관은 11개 기관이었으며, 인권교육을 실시하지도 않고 계획도 없는 기관은 31개 기관이었다고 한다(한홍구 외, 2003; 23쪽).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정규연수나 정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39.3%)되거나 임시로 개설되는 특별교육의 형식으로 실시(21.4%)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이 실시된 기간은 2~5년(42.9%)이 가장 많았으며, 일 년 평균 교육일수도 하루(53.6%), 하루 시행되는 강의 시수는 3시간 이하(92.9%)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적극적인 의미의 ‘인권교육’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 인권 시민단체에서의 인권교육 운영 현황

시민단체에서 운영되는 인권교육 현황은 다음 몇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① 주로 일반 시민들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 고취와 인권운동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 ② 인권보호 취약 계층의 교육 및 구제활동 : 장애인, 성적 소수자, 이주노동자, 난민 등 우리 사회에서 각종 인권 침해와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소수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짐
- ③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공교육과는 별도의) 인권교육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다산인권센터’, ‘마들창조학교’, ‘서울YMCA 청소년사업부’, ‘굿네이버스 아동학대문제연구소’, ‘YMCA의 각 지부별 아동인권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교육이 이루어짐.
- ④ 직무상 인권보호가 강조되는 직종 종사자들의 교육 :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워크숍’,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경찰, 교도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교육’, ‘한국언론재단’의 ‘인권교육 담당기자 전문 연수’ 등이 이루어짐.

(4)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운영 현황

학교 인권교육과 경찰, 검찰, 교도관 등 법집행 공무원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된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① 공무원 인권교육 : 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법집행 공무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교육 강사단을 운영, 구성하여 2002년부터 2005년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사단의 강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강사단의 전문교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고, 2002년 초기에는 경찰·검찰·교정 분야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던 인권교육이 점차 출입국 관리 분야, 군대 등으로 강의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위원회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공무원 및 초중고 대학생들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인권감수성 향상 및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 ② 학교 인권교육 : 교원연수과정 운영,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용 안내서와 실제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 ③ 사이버 인권교육(사이버 인권배움터) : 일반인, 학생, 교사, 공무원, 국민 모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참여학습 공간을 사이버 상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인권교육에 대한 체계성이 없고, 인권교육이 주제별, 기관별, 대상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기관에 따라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합의되지 않은 채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정부와 학교, 시민사회단체 간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행 방법이 상이하여 충돌하기도 하고, 인권교육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부족, 교육 여건의 미비로 인해 인권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교재 개발 및 자료 개발이 미비하며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려는 기관의 경우에도 강사 섭외의 어려움이 많으며,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가 미미하다는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라.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방향

인권교육이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목표는 같을 수 있지만 어디서나 동일한 형태를 띠 수는 없을 것이고 동일한 형태를 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서로 다른 정치적 맥락, 지역사회의 여건, 서로 다른 역사 등등으로 인권교육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럽·미국의 인권교육 실천과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¹¹⁾에서 김종섭은 미국 인권교육의 논의로부터 몇 가지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김종섭은 인권교육을 담당할 교육자를 양성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담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인권교육의 기반 조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인권교육 발전의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전통과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정책 발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 시민사회의 비정부기구와 국가의 정부 기구 사이의 협력은 중요하다. 셋째, 인터넷 등 정보통신산업이 발전된 한국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인권을 실천하는 방안을 교육하는 것이 효과도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넷째,

11) ‘유럽·미국의 인권교육 실천과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인권교육 국제워크숍 자료집, 2006, 국가인권위원회 : 미국 인권교육의 시사점과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 김종섭, 87-88 쪽에서 정리함.

연구자와 교육자, 활동가를 통합하는 매개자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 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인권기구 또는 인권교육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역할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연희는 인권교육의 발전을 위해 “인권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치관의 극복, 교사인권교육의 개선, 인권교육의 실천을 지원·조력하는 조직의 구축을 강조하며 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인권교육활동가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활동가를 교육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 등 다양한 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한다.”¹²⁾고 말한다.

요컨대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방향은 위에서 말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인권교육 전반을 계획, 조정, 지원하는 상시적인 인권교육 기관, 기구가 필요하고,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권교육이 확대 시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 학습 및 교재, 자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인권교육 연수를 시켜 인권교육 강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인권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평생교육기관, 시민단체, 자원활동단체, 지역기업 등과 연계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별 인권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각도로 논의되고 인권교육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도 학교교육에서는 인권교육이 거의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나의 경우, 영국 학교 재학 시에는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돌아온 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까지는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 일부 학교에서 사회과, 도덕과 교사들이 재량활동이나 계발활동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2005년, 2006년 인권교육실천사례¹³⁾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연구 중에 인권교육실

12) ‘유럽·미국의 인권교육 실천과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인권교육 국제워크숍 자료집), 2006, 국가인권위원회 : 미국 인권교육의 실천의 한국 적용과 과제, 박연희, 94~96쪽에서 정리함.

13) 나는 2006년 인권교육실천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했는데, 거기서 시민단체 분야(개인) 최우수상(자유상)을 수상하였다.

천사레나 사례연구를 문헌을 통하여 찾아보았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 탑재된 학교교육 실천사례조차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교 중 몇십 개 학교의 사례에 불과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권교육을 하는 사례조차도 찾기 힘든 형편이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대부분 캠프 등을 통해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거의 없었다.

Ⅲ.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인권교육의 실제

1.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가. 자원봉사활동의 이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87)는 ‘자원봉사란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낮은 타인들을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성 구현을 통해 자아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다’¹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1998)에서는 ‘자원봉사란 자원이나 능력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사회와 공동체, 환경 혹은 타인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체계적인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¹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정의를 정리해 보면 자원봉사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예방, 해결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환경을 자발적,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14) ‘자원봉사활동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7 -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김동배, 학지사, 2005, 71쪽에서 재인용

15) ‘21세기와 자원봉사’,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1998 -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김동배, 학지사 2005, 71쪽에서 재인용

나. 자원봉사의 정신

자원봉사활동이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시작된 만큼 그 활동형태나 내용 또한 다양하다. 그러한 다양함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공통적인 특성을 도출해 내면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이나 본질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록은 “자원봉사활동의 바탕은 인간존중의 정신이며 철학이다. 인간을 숫자적 개념이나 행렬의 일원으로 보지 않고 각 개체를 유일무이의 독자적 존재로 보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다.”¹⁶⁾라고 말한다. 또한 “자원봉사는 인간을 차별화시키고 소외시키는 왜곡된 가치를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이상으로 한다.”¹⁷⁾라고 서술한다.

양창삼¹⁸⁾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을 자아실현성,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사회성, 공동체성, 복지성, 민주성, 개척성 및 지속성의 아홉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타인과 함께 봉사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인격적 성장을 가져옴과 동시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하는 자아실현의 특성이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리고 이웃이라는 연대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성과 자주성, 무보수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는 이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성, 공동체의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활을 실현하는 공동체성,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복지성, 인간 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주성,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된 활동이며 일정기간 지속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지속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다.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과제

최근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인구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참여 가능성이 높은 잠재인구 역시 증가하였다. ‘전국 자원봉사센터 실태조사’(행정자치부,

16) 자원봉사 어드바이저, 이성록, 미디어숲, 2005, 15쪽

17) 자원봉사 어드바이저, 이성록, 미디어숲, 2005, 76쪽

18) ‘사회복지의 철학과 기능,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한양대출판원, 1997

2005)에 의하면 2004년도 250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93만 명으로 센터 당 평균 8천여 명에 달한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수는 20만 여개로 나타났으며 이들 단체의 자원봉사자 수는 2백 80여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1995년 5·31교육개혁을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했고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지역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내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1997년도부터는 광역시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참여 욕구를 가진 사람은 많은데 비해 실제 참여율은 낮고 중도탈락자가 많으며,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전담자가 없어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원봉사의 모집이나 홍보가 조직적이지 못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단체, 기구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 자원봉사단체나 지역사회 단체 사이에 상호연계성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중·고등학교 봉사활동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문제투성으로 지적받고 있다.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고 담당교사부터 어디서 시작해야 할 바를 몰라 손을 놓고 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는 현실만 남아 있지 프로그램은 고작 가까운 복지시설에 내보내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선 복지시설에도 학생들이 교육받지도 않고 몰려와서 도움보다는 폐가 많으니 와 주지 않았으면 하는 고충도 털어놓고 있다.”¹⁹⁾

김동배는 자원봉사활동의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활성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로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와 조직화를 말한다.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발견, 분석, 자원봉사자의 발굴, 모집, 교육, 배치, 관리 그리고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 조직화된 체계가 필요하다. 자원봉사기관이 자원봉사자 선정

19) 청소년 자원봉사와 지도, 주성수, 중앙일보사, 1996, 46쪽

기준이나 선정과정, 활동목적을 정확히 규정하고 기초훈련과정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하는 데 개별기관과 협의회 같은 곳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²⁰⁾라고 말한다.

2. 자원봉사프로그램과 인권교육과의 관련성 분석

가. 자원봉사프로그램이란?

자원봉사프로그램이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의 집합체로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실천하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의 묶음을 의미한다.²¹⁾

따라서 자원봉사프로그램이란 자원봉사활동의 구체적인 활동은 물론 그 활동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프로그램 기획서 작성에서부터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 지도, 평가 등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강화시키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관련성 분석

이러한 자원봉사프로그램과 인권교육의 목표나 정신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합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자원봉사활동과 인권교육의 바탕은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보는 ‘인간 존중’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즉, 권력, 제도, 기구로 인간을 억압하려는 힘을 부정하며 또는 생에 대한 체념적인 사고를 부정하며 인간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인격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존엄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

20)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김동배, 학지사, 2005, 111쪽

21)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권미영, 2006, 1쪽

는 가치는 광범위한 동의를 획득하고 있으며 초역사적인 성격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인간을 거대한 사회 속에 매몰시켜 버리지 않고 인간해방, 인간의 자기 표현, 자기창조, 인간상호의 협동의 노력으로 공동사회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려는 것이 자원봉사의 구실²²⁾, 즉 자원봉사가 추구해야 이 목표는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이 인간성 발휘를 촉진하고 신뢰관계를 배양하는 지속적인 국민교육, 또는 생애교육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인권교육과는 공통적이다. 인권교육은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법집행공무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기관, 대중매체 종사자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²³⁾. 인권교육은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보면 전 국민에게 필요한 생애교육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모든 교육, 즉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비형식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자원봉사활동과 인권교육은 ‘변화의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합치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도움이라는 활동을 통하여 자신은 물론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이고 인권교육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권교육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이나 인권교육 혼자서 하는 개인 활동이 아니고 두 활동 모두 다 체계적이고 조직성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동질적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수요자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배치하고, 조정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수행하는 체계적인 자원봉사프로그램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인권교육 또한 산발적,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요청되고 있어 두 프로그램 모두 조직성이 요청되고 있다.

여섯째,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고, 조정하며, 지원

22) 자원봉사의 어드바이저, 이성록, 미디어숲, 2005, 17쪽

23) ‘유럽·미국의 인권교육 실천과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인권교육 국제워크숍 자료집), 2006, 국가인권위원회 : ‘유럽 인권교육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배경내, 45쪽

하는 전문기구와 단체 간의 네트워크가 추구하고 있는 바 인권교육 역시 연구자와 교육자, 활동가들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인권교육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매개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 그 방법론을 계속 모색해 오고 있다.

일곱째, 민·관 파트너십의 구축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자원봉사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중요성이 이해되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체에서도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여러 가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²⁴⁾고 한다. 인권교육 또한 시민사회의 비정부기구와 국가의 정부기구 사이의 협력은 아주 중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여덟째, ‘일상성’이다.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생활 상황과 연관된 ‘인권’, 즉 학습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활 속의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자원봉사활동의 일상성과 통하는 점이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특별한 날에 특정한 곳에서만 하는 이벤트여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엘리노어 루즈벨트의 ‘지금, 네 가까이, 작은 곳에서’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다.

아홉째, 개척성과 지속성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된 활동을 말하며 일정 기간 지속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활동 자체가 임의로 변경되거나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교육 역시 의도적으로 계획되어지고 지속적으로 학습되어야 하고 경험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상통한다.

열째, 인권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은 서로 인격적 친교의 관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인권교육자와 학습자가 자동판매기 같은 단순한 반응만을 보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존중하는 만남이어야 하는 것처럼 자원봉사활동 역시 수요자와 봉사자가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서 삶의 질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자와 인권교육가 모두에게 일정한 책무가 주어진다. 여기서 책무란 “흔히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여 모두의 인권

24) 자원봉사 어드바이저, 이성록, 미디어숲, 2005, 93쪽

이 존중될 수 있는 질서와 사회적 부와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⁵⁾ 즉, 시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일정한 사회적 책무가 주어진다라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IV. 연구의 설계

1. 연구의 대상

서울시 양천구 신월4동 433-12 솔로몬공부방 초등학교 아동 50여명

2. 연구의 기간

2006. 7. ~ 2007. 8 (14개월 간)

3. 연구의 동기

‘지금, 네 가까이, 아주 작은 곳에서’(엘리노어 루즈벨트) - 인권교육은 어디서 오는가?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으로 인권교육이 만나게 된 이유는 ‘저소득층 공부방’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있다.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부는 서울특별시의 인구분산 정책과 서남부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1978년부터 시행된 목동신시가지 개발에 따라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된 중, 상층 주민거주지역이다. 반면 양천구 신월동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에 걸쳐 다른 구에서 살다 옮겨온 철거민들로 이루어진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현재는 항공기 운행항로로 소음이 매우 극심하여 서울시 지가 최하위를 기록하며 전월세비도 서울 최하위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대규모 목동아파트 지역의 중, 상층과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양천구 내 저소득 계층은 경제적, 생활환경적, 문화적, 심리적인 모든 측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위와 같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취약 계층의 심리적, 경제적 자활 자립사업이 필요하며 지역 내 공동체를 형성 할 수

25) ‘1회 민간단체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00, 5쪽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²⁶⁾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빈곤, 질병, 부모의 학습 지원의 어려움, 부모의 결손과 방임, 아동학대, 가정불화와 해체 등으로 많은 아이들이 낮은 자존감, 자신감의 부족, 학습부진, 무기력함을 나타내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도 낮아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추행, 따돌림, 자기중심적 태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저소득 지역 학교 교사들 중 35%는 근무 학교 학생들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정서발달 문제, 자신감 부족, 무기력 등’을, 25.3%는 ‘학업성적 및 진로 문제’를 지적했다²⁷⁾고 하는데, 신월동의 이 공부방에서도 아이들의 자신감 부족, 무기력,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가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도 일상화된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곤 했다.

조그만 재래시장 근처, 교회의 지하실에 위치하고 있는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방과 후에 놀이터에서 밤늦게까지 놀거나 배회하는 아이들이 많으며, 부모가 늦게 오는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컴퓨터오락으로 지내는 아이들도 꽤 많다.

재근이는 3학년인데, 방학이면 서너 살짜리 동생을 돌보고 있어 동생이랑 동생 우유병을 유모차에 태워 가지고 공부방으로 온다. 지난 겨울방학, 수업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재근이가 ‘동생이 오줌 마려워한다고, 화장실 가야 한다’고 일어서길래, 재근이 동생에게 신발을 신겨주려고 하다가 재근이 동생 신발이 여름용 하얀 샌들인 것을 보았다. 겨울 신발만 해도 운동화, 구두, 부츠까지 있는 나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으며 마음이 캄캄하게 어두워졌다.

엄마가 없는 보경이는 5분 간격으로 내게 달려들어 아기처럼 무릎에 앉아 있곤 하고, 아이들은 보경이를 ‘썩은 년, 썩은 놈’이라고 부르며 무시한다.

재혁이는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데 수업은 거의 안 하고 책상 밑으로 기어 다니며 장난만 친다.

형주는 방학 내내 입고 오는 외투가 갈색 하나인데 한 번도 안 빨아서 소매나 깃이 묵은 때에 젖어 있다.

올해 중학교에 들어간 록현이는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데, 동생 흥록이, 수록이랑 삼형제가 공부방에 공부하러 온다. 작년 1월 어느 날 록현이가 수업시간에

26) 신월종합사회복지관, http://www.sinwc.or.kr/introduce/introduce_3.htm, 복지관 소개, 신월동 지역적 특성

27) 2004 한국교육평론 : 소외계층의 교육,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317쪽

지각을 했고 머리가 부스스하고 부은 얼굴로 나타나 왜 늦었냐고 물었더니, 병원에서 아버지 병간호하다가 지금 바로 공부방으로 왔다는 것이다. 록현이 아버지는 오래 전부터 간경변을 앓고 있고 록현이 어머니는 가사도우미(파출부)를 하시고 계셔서 아버지 병간호를 록현이가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범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한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게 한다. 공부방에도 잘 오지 않아,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아침부터 TV를 본다고 한다. 오라고 하면 오지만 챙기지 않으면 오지도 않고 공부방에 와도 아이들은 재범이를 아는 체하지 않는다.

지선이는 수업을 열심히 하지만 방과 후에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시장의 과일 가게 근처에서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앉아 있곤 한다고 한다.

유신이는 주로 재혁이랑 장난감총을 들고 다니며 욕하고 싸우는 것이 방학 중 하루 일과이고, 은영이는 아주 착하지만 마음이 여려서 자주 울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공부방에서도 따돌리고 은영이 옆에 앉지 않으려고 한다.

몸집이 크고 뚱뚱한 민수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칼로 지우개를 썰거나 던지거나 하고, ‘이렇게 해보자’ 하면 밀쳐내고 화를 버럭 낸다. 아이들은 ‘민수는 원래 저래요, 학교에서도.’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

아이들이 이렇다 보니 인권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필요한 존재이고 더불어 상대방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면서 서로 간에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침해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인권교육, 인권경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연구의 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가. 참여관찰일지(수업일지)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교사(연구자)의 참여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연구자가 수업일지 형태로 정리했다. 수업일지는 연구자인 교사가 매 시간이 끝난 후 기록하였으며, 특별한 형식이 없이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의 흐름과 학

생의 반응, 생각하고 느낀 점, 본 프로그램의 장단점,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 휴식시간, 간식시의 아동들과의 대화, 아동들의 반응과 태도, 그리고 공부방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반응 및 태도도 자유롭게 기술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계획 아래 용의주도하게 수업일지를 쓴 것은 아니고 매 수업 후의 반성과 자원봉사자이면서 인권수업을 하는 교사의 역할을 고민하였고, 또 다음 시간 수업자료를 준비하고 점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록해 나갔기 때문에 연구일지라기 보다는 일기 형식에 가깝다. 이 자료의 분석방법은 사례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나. 학습결과물과 소감문, 기타 아이들의 편지

매 수업 시간의 학습결과물과 프로그램 후의 아동들이 생각하고 느낀 점을 기술한 수업활동 소감문, 아이들과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 중에서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2) 수업 진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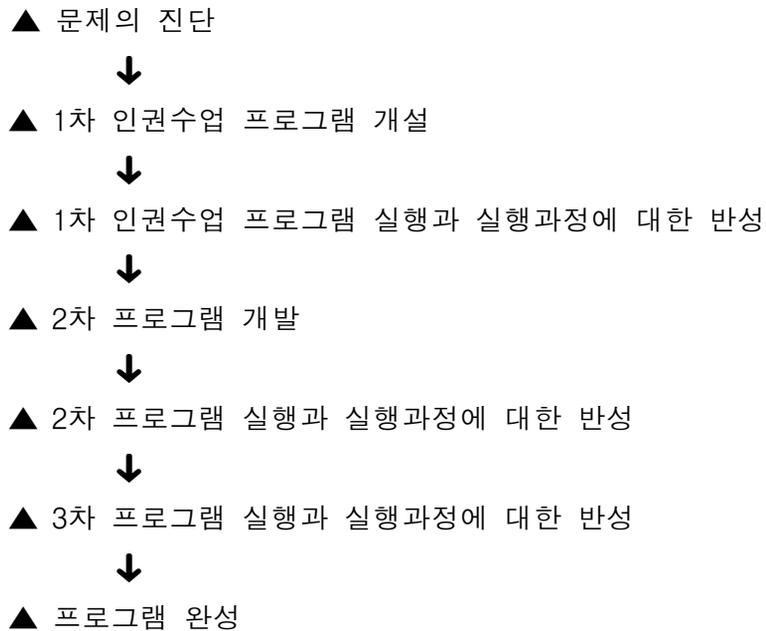
‘인권은 학습과 함께 경험을 통해 체득되어야 한다.’

(휴 스타키 Hugh Starkey)

- 인권수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 연구의 인권수업은 아이들의 참여 중심적이고 활동 중심적인 수업, 체험을 중시하는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1차 수업(2006년 7월~8월 시행)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등학생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공부방 아이들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고, 2차 수업(2007년 1월 시행)은 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상자료실의 영상자료를 대출하여 영상수업으로 진행하였다. 3차 수업(2007년 8월 시행)은 2차 수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강조하는 수업, 특히 지역사회 여러 단체와 연결하여,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의 성교육 강의를 지원받았고, 성교육인형극의 공연을 지원받아 진행하였다. 동시에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인형극을 무지개극단에서 들여오는 등의 입체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의 참여와 경험을 유도했다.

3) 수업모형 구안 과정 - 인권수업의 모형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V. 수업 진행 및 연구 결과

1.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파올로 프레이리) - 공부방에서 인권교육 적용의 실제

가. 1차 수업의 실제(2006년 7월~8월에 진행)

- ▲ 1차 인권수업 실행목표 -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남의 권리도 존중한다.

▲ 1차 인권수업 전체 프로그램

차 시	제 목	내 용	기 대 효 과
1	<권리 알기> ○ 저학년 :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 고학년 : 그림으로 배우는 권리	○ 저학년 : 권리 알기. 권리는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임을 알기 ○ 고학년 : 권리와 다양한 권리의 유형에 대해서 알기	권리의 개념과 종류를 알고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임을 깨닫는다.
2	우린 다르지만 소중해요	모습은 달라도 누구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누구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3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행복추구권)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행복을 추구할 가치가 있음을 알기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타인에게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다.
4	장애 체험하기	장애 체험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점들을 체험하기	장애인들이 누리지 못한 권리, 누려야 할 권리를 생각해 본다.
5	굶고 있는 아이들	우리나라, 북한, 세계 여러 나라에 굶주리는 아동이 있음을 알기	기아상태의 아동들에게 생존권이 있고 지원 및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다.
6	. 고학년 : 노동하는 어린이 . 저학년 : 소중한 나, 내가 지켜요	고학년-아동들이 경제적 착취와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기 저학년-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 알기	○ 고학년 : 아동들이 착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 저학년 : 아동들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안다.
7	신체적 특징은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신체적 특징은 각각 장점이 있는 개인의 성일 뿐이고 신체의 장애 따라 차별받지 않아 함을 이해하기	단지 외모는 차이일 뿐임을 알고 차별하지 않는다.
8	그림으로 그리는 인권 이야기	아이들이 실제로 느끼고 생각하는 권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그동안 배운 다양한 권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9	인권나무 심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될 수 있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실천을 약속하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다짐할 수 있다.
10	인권선언문 만들기	아이들이 일상에서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약속하기	인권의 실천을 약속하고 실천한다.

▲ 1차 인권수업 적용의 실제

가. 권리 알기/우린 다르지만 소중한요/행복할 권리가 있어요(1~3차시 수업 내용)

1) 프로그램 설정 이유 및 수업 방법

이 1~3차시 프로그램은 행복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임을 알게 하고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설정된 것이다. 또한 아동들에게 아동권리의 역사적 배경과 권리의 내용을 알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임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아동들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동시에 타인에게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설정된 프로그램이다. 아동들이 그림과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리를 알고 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했다.

2) 1, 2, 3차시 수업 지도안

〈고학년 1차시〉

◆ 인권교육 프로그램 :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고학년용

1. 그림으로 배우는 권리
활동주제 그림으로 배우는 권리
학습목표 자신의 권리를 그림에서 찾아 분류해 봄으로써 다양한 권리의 유형에 대해 안다.
주요자료 활동지 1~10, 가위, 풀
관련인권조항 아동권리의 모든 조항
주안점 아동들에게 아동권리의 역사적 배경과 권리의 내용을 알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임을 깨닫게 한다.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권리의 종류에 대해 외우도록 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들에게 다양한 권리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차시는 두 번에 나누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두 번에 걸친 수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또한, 한 조항이 여러 권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정	활동 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p>1차시</p> <p>■ 동기유발</p> <p>T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있어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할 시간을 준다.) 우린 그것을 권리라고 합니다.</p> <p>T 오늘은 우리가 가진 권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p>	5분	㉔ 활동지 모둠을 이뤄서 자리에 앉도록 한다.
전개	<p>T 우리 아동들의 원리에 대해 여러 나라가 함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해요. 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p> <p>T (그림카드를 나눠준다. 모둠별로 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림카드들을 앞에서 설명한 4개의 권리로 나누도록 한다.) T (모둠별로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전지에 붙여 보도록 한다.)</p>	35분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한다.
	<p>2차시</p> <p>■ 지난 시간에 분류했던 내용을 벽에 붙이고 비교해 보기</p> <p>T (다른 조원들의 분류와 비교해 보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유도한다.)</p> <p>T (아동들의 권리를 지켜 주는 아동권리협약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서로 지켜 줄 수 있도록 격려한다.)</p>	30분	㉔ 활동지
정리	<p>T (유엔아동협약의 4개 기본권, 3개 원칙, 1개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p>	10분	

〈저학년 1차시〉

◆ 인권교육 프로그램 :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저학년용

1.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학습목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원하는 것 모두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을 이해한다.
주요자료 활동지 1~4, 사인펜(색연필), 가위
관련인권조항 아동 권리 관련 모든 조항
주안점 아동들이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권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특권으로, 아동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한다. 상황에 따라 강조되는 권리가 다를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세요. 1학년의 경우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활동지*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카드)를 미리 오려서 준비해 주세요.

과정	활동 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T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T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 사람씩 이야기해 봅시다. 	5분	4명 정도가 한 모둠을 만들어 자리에 앉도록 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T (그림카드를 나눠주고 각자 오려 보도록 한다. 빈 종이에 없는 다른 것들 중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직접 그려 보도록 한다.) ■ 우리 성장에 필요한 것 T (24장의 카드 내용 모두가 삶에 필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T (만일 가질 수 있는 카드가 14장뿐이라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모둠별로 토의하게 한다.) T (다시, 카드를 5장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카드를 남길 것인지 모둠별로 토의하게 한다.) ■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T (모둠별로 골라온 5장의 카드를 칠판에 붙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25분	㉔ 활동지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T (고른 것을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해 준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권리임을 알린다.) T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권리의 내용과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T (과제로 내가 아닌 다른 아이들의 권리를 생각해 보고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10분	

<고·저학년 2차시 (공통으로 진행)>

◆ 인권교육 프로그램 :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저학년용

2. 우린 다르지만 소중해요

학습목표 모습은 달라도 누구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주요자료 활동지 6~8

관련인권조항 아동권리의 모든 조항

주안점 아동들이 권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권리에 대해 알도록 하며, 자유롭게 자신들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이야기와 자기 자신의 주변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동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교실 전체를 이동하면서 활동함으로써 아동의 활동성을 이끌어 주세요. 「너는 특별하단다」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과정	활동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p>■ 동기유발</p> <p>T 사람들이 모두 다르지요? 우린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T (아동들의 답변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며 활동으로 들어간다.)</p>	5분	4명 정도가 한 모둠을 만들어 자리에 앉도록 한다.
전개	<p>■ 이야기 나누기 : 지니와 자신의 장점 찾기</p> <p>T (지니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질문지도 나눠준다.) T (두 명씩 짝을 만들어 기자 역할을 하는 아동이 상대 아동에게 질문지의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질문하고, 대답한 내용을 적게 한다.) T (지니의 이야기를 통해 지니의 장점을 찾고, 자신의 장점도 찾아볼 수 있게 한다.)</p> <p>■ 이야기 나누기 : 서로의 장점 칭찬하기</p> <p>T (선생님이 방송국 앵커 역할을 하면서 질문지의 질문을 기자에게 물어본다. 기자 역할을 하는 아동이 자기 짝의 장점을 발표하면 친구들이 모두 박수를 쳐 준다. 기자 한 명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다같이 아래와 같이 외치도록 한다.) “너는 소중하단다.” / “난 그런 네가 참 좋아.” T (선생님이 발표한 아동을 자연스럽게 안아 주며, 인터뷰의 내용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 아동의 장점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해 준다.)</p>	30분	㊤ 활동지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한다.
정리	<p>T (아동들에게 사람들은 모두 다르지만 누구나 좋은 점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p>	5분	

〈고·저학년 3차시 (공통으로 진행)〉

◆ 인권교육 프로그램 :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고학년용

3.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학습목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존엄하고 가치가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다.

주요자료 종이, 필기도구, 상자

관련인권조항 헌법 제10조 :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주안점 행복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임을 알게 한다. 행복추구권이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설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생활할 권리라는 것을 알게 한다.



행복추구권을 설명할 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동시에 타인에게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해 주세요. 또한 모든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과정	활동 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T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T 여러분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나요?	5분	
전개	■ 토론학습 T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 원하는 것이 똑같은가요? T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자신에게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적어서 행복상자에 넣어 주세요. T 행복상자에서 쪽지를 하나씩 꺼내어 읽어 보세요. 나와 내 친구가 생각하는 행복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30분	㉚ 상자, 종이, 필기도구
정리	■ 표현하기 T (반 친구들 각자 행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T (다른 사람의 권리와 행복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5분	

나. 차이와 차별알기, 장애 체험하기, 굶고 있는 아이들, 노동하는 어린이 (4~7차시 수업 내용)

1) 프로그램 설정 이유 및 수업 방법

이 4~7차시 프로그램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조 ‘우리가 누구든,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 그리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영어를 쓰는 한국어를 쓰는, 서울말을 쓰는 사투리를 쓰는, 무슨 종교를 믿든, 또한 장애인이든 아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에 의거하여 외모나 신체적 특징은 개개인의 장단점이 있는 개인의 특성일 뿐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또한 경제적 착취와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하고, 북한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 굶주리는 아동이 있음을 알게 하며, 이 아동들에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특히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차이로 인식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놀리거나 차별해도 된다는 아이들의 고정적인 인식을 시각장애인이 되어 장애현상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누리지 못했던 권리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

2) 1, 2, 3차시 수업 지도안

〈고·저학년 4차시 (공통으로 진행)〉

◆ 인권교육 프로그램 : 『인권교육실천사례집(2004)』 22쪽

4. 신체적 장애 현상 경험하기

※ 활동의 과정

- 전개 : 눈감고 장애물 피하기 / 장애 체험하기
- 정리 : 실천의지 다지기(장애우들이 느낄 불편한 점을 발표하기)

※ 주안점

아동이 시각장애인이 되어 장애 현상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점들을 체험하고, 장애인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권리(통행권 등)를 다시금 생각해 보며, 이를 통해 사회의 일원인 장애인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게 한다.

과정	활동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T 장애우들은 평소에 어떤 불편을 겪을까요? T 여러분은 장애우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5분	
전개	■ 눈감고 장애물 피하기 / 장애 체험하기 T 눈을 눈가리개로 가린 상태에서 곳곳에 있는 장애물들을 혼자서 피해갈 수 있을까요? T 도우미 친구의 도움을 받아 공부방 바깥 곳곳을 돌아다녀 볼까요?	25분	장애물(자전거, 쓰레기통 등), 눈가리개
정리	■ 실천의지 다지기 T (체험활동을 통해 안 장애우들의 불편함을 발표하게 한다.)	10분	

〈고·저학년 5차시 (공통으로 진행)〉

◆ 인권교육 프로그램 :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저학년용

12. 굶고 있는 아이들

학습목표 기아 상태의 아동, 북한 아동 등의 생존권에 대해 알고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주요자료 활동지 18~19, 편지지, 편지봉투, 필기도구

관련인권조항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 :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주안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북한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굶주리는 아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우리나라 외에도 전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아동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국가나 주변에서 이러한 아동들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세요. 또한 아동들에게는 지원 및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과정	활동 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T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는 아동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T 우리 주변에는 생활이 어려워 밥을 굶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5분	
전개	■ 활동지 읽고 토론하기 T 선생님이 나눠주는 자료의 이야기를 잘 읽어 보세요. T 우리나라에도 굶주리는 아동이 있어요. 특히 북한에는 많은 아동이 굶어죽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10분	㉔ 활동지
	■ 사랑의 편지 쓰기 T (아동들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게 한다.)	15분	㉔ 편지지
정리	■ 느낌 나누기 T (아동들이 쓴 편지를 모아서 상자에 넣고, 교사가 무작위로 뽑아서 읽어 준다.)	10분	

〈고학년 6차시〉

◆ 인권교육 프로그램 :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고학년용

23. 노동하는 어린이

학습목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아동의 노동이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 이해한다.

주요자료 활동지 35~37

관련인권조항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2조 : 경제적 착취와 노동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이나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해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주안점 왜 이크발이 카펫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하고, 이크발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개인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이크발과 비슷한 사례를 미리 찾아 두세요. 왜 아동 노동 착취가 행해지는지 사회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	활동 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T 카펫을 많이 만드는 나라에서는 5살짜리 아이가 만든 카펫이 가장 비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T (아동들의 손이 작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5분	
전개	■ 이크발 이야기 알아보기 T (활동지를 제시한다.) ■ 이크발 이야기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를 읽어 보고 대안을 찾아본다. T 누가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T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요? T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0분	㉔ 활동지
정리	■ 정리하기 T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동들이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이크발처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5분	

〈고·저학년 7차시〉

◆ **인권교육 프로그램** :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저학년용 (고학년도 같이 사용)

18. 신체적 특징은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학습목표 외모나 신체의 특징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이해한다.

주요자료 활동지 33~34

관련인권조항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 우리가 누구든,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 그리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영어를 쓰는 한국어 쓰는, 서울말을 쓰는 사투리를 쓰는, 무슨 종교를 믿든, 또한 장애인이든 아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주안점 저학년 아동들 사회에서 나타나는 약자에 대한 차별, 외모에 대한 차별을 심화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내 마음의 선물』, 『오체불만족』, 『애덤킹! 희망을 던져라』 등의 도서를 아동이 읽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저학년 아동들은 힘이 세거나 예쁜 친구를 무조건 따라하고 외모가 떨어지거나 장애가 있는 친구를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아이들이 신체적 특성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개인의 특성일 뿐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과정	활동 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T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신체적 특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T 어떤 특징이 좋은 특징이라고 생각하나요? T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10분	
전개	■ 무엇을 봐야 할까요? T (활동지를 제시하며,) 다양한 특징들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T 먼저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활동지의 예시를 읽어 준다.)	15분	㉔ 활동지
	T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10분	
정리	■ 단지 외모는 차이일 뿐임을 알기 T 진짜 멋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5분	

다. 우리가 원하는,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리기/인권나무 심기/인권선언문 만들기 (8~10차시 수업내용)

1) 프로그램 설정 이유 및 수업 방법

8~10차시 프로그램은 실천적인 면을 위해 설계되었다. 1차 인권수업의 마무리 단계로서 앞 차시에서 배운 권리에 대한 지식, 자신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한다는 인권에 대한 가치, 태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의 나무(인권나무)도 심어보고 인권선언문을 만들어 서로 약속, 다짐하는 실천의 시간으로 설계되었다.

아동들이 스스로 일상에서, 작지만 지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임을 강조, 격려하며 인권나무 심기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게 준비했고 아동들이 지키고 싶은 주제를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했다. 또한 아이들이 자신이 정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행동임을 강조했다.

2) 8~10차시 수업 지도안

〈고·저학년 8차시〉

◆ 인권교육 프로그램 :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저학년용 [고학년도 같이 사용]

23. 그림으로 표현하는 인권 이야기
학습목표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주요자료 크레파스, 도화지
관련인권조항 아동권리 전반
주안점 그동안 배운 권리를 중심으로 아동들이 실제로 느끼고 생각하는 권리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다양한 권리를 먼저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절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의 문답을 통해 자연스럽게 권리에 관한 생각이 표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작품으로 연계하는 것도 좋고, 다른 반원들의 내용도 게시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과정	활동 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p>■ 동기유발</p> <p>T 우린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T (아동들의 답변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며 그것이 그림으로 표현되도록 한다.)</p>	2분	4명 정도가 한 모둠을 만들어 자리에 앉도록 한다.
전개	<p>■ 그림으로 말하기</p> <p>T (종이와 크레파스를 나눠주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다.) T (아동들이 그리는 것을 주저한다면 아래의 질문을 통해 유도할 수 있다.) - 우리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로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그것이 지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대해 그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T (그림 그리기가 끝나면 아동들이 그린 그림의 내용을 별도의 종이에 써 보도록 한다.)</p>	30분	아동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한다.
정리	<p>T (발표를 원하는 아동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나머지 친구들의 것은 게시판을 활용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p>	8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고른 것 모두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며,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고 · 저학년 9차시>

◆ 인권교육 프로그램 :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저학년용 [고학년도 같이 사용]

23. (솔로몬 공부방에) 인권나무 심기

학습목표 권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원하는 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주요자료 사진기, 종이, 펜, 종이나뭇잎, 나무그림

관련인권조항 아동권리 전반

주안점 아동들이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누가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인권나무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산을 이용하여 모빌처럼 만들 수도 있고, 교내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정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정	활동 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p>■ 동기유발</p> <p>T 오늘은 인권식목일로 정하고 나무를 심어 보려고 해요. T 어떤 나무를 심어 볼까요? T 바로 풍성한 인권나무예요. 여러분이 잎을 만들고 선생님은 줄기를 만들어서 풍성한 인권나무를 만들어요.</p>	5분	시작 전에 칠판이나 게시판에 나무 줄기를 만들어 붙여 놓는다.
전개	<p>■ 인권나무 만들기</p> <p>T (색종이로 나뭇잎을 만들어 거기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대해 적어 넣는다.)</p> <p>■ 인권나무 공동작품 만들기</p> <p>T (한 사람씩 나와서 인권나무에 나뭇잎을 붙이도록 한다.) T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면, 다른 질문들을 하고 그 답을 적은 나뭇잎을 붙여서 나무가 풍성해지게 한다.) - 추가질문 예 :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T (나무가 완성되면 모두가 격려의 박수를 치게 한다.)</p>	30분	
정리	<p>T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T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이를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다고 말한다.)</p>	5분	

<고·저학년 10차시>

◆ 인권교육 프로그램 :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저학년용 [고학년도 같이 사용]

24. 인권선언문 만들기

학습목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유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주요자료 도화지, 펜, 크레파스 등

관련인권조항 아동권리 전반

주안점 아동들이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자신들이 지키고 실천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약속하게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동들이 주체가 되어 행동해야 한다는 것과 약속은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만 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아동 스스로 자신이 일상적인 삶에서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직접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정	활동내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p>■ 동기유발</p> <p>T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속상하게 한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p>	5분	4명 정도가 한 모둠을 만들어 자리에 앉도록 한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한다.
전개	<p>■ 인권을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짐 한 가지</p> <p>T 앞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겠지요! 오늘은 우리가 꼭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하나씩 하려고 해요, 그 약속을 도화지에 쓰고 예쁘게 장식해 보세요.</p> <p>■ 우리의 약속 다짐하기</p> <p>T (다른 친구들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야기 나누며, 그 친구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는 다짐을 한다.)</p>	30분	교사의 이야기 속에서 아동들이 차별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도록 한다.
정리	<p>T (약속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p> <p>T (아동들과 함께 게시판에 약속들을 전시한다.)</p>	5분	

나. 1차 인권수업의 반성과 2차 인권영상수업의 실제 (2007년 1월~2월 진행)

▲ 2차 수업의 실행 목표 : 인권이 실현되고, 인권이 실현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 2차 인권수업 전체 프로그램

차시	제 목	내 용	기 대 효 과
1	강아지똥	‘강아지똥’을 감상하고 그 느낌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쓸모 있음을 알게 된다.
2	별별이야기 중 동물 농장편	양들이 사는 농장에 사는 염소 한 마리의 이름을 지어주고 영화를 감상하고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기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3	핑크트엔과 안톤	핑크트엔과 안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쓰기	가족과 진정한 의미의 우정을 깨닫는다.
3	우리 사이 짱이야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못되게 굴었던 점을 되돌아보고 서로 사이좋은 친구가 되어가는 준호, 아람이에게 편지쓰기	장애가 있는 친구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 주는 마음을 갖는다.
5	장애 체험하기	눈을 가린 채, 물건을 찾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의 얼굴 그리기. 눈으로 볼 수 없으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시각장애 체험소감 나누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한다.
6	우리들의 약속	성폭력예방비디오를 보고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견 나누기	성폭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안다.
7	어린이 권리를 위한 인권만화 시리즈	지구촌 시대의 다양한 환경, 문화, 인종이 등장하는 만화를 보며 아동의 권리 배우기	아동의 다양한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안다.
8	인권밥상 차리기	음식은 어린이의 권리를 비유한 것으로 모듬별로 밥상에 꼭 필요한 음식(어린이의 권리)을 준비하여 인권밥상에 차린다.	어린이들이 인권이 존중받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다.

▲ 2차 인권영상수업의 실제

가. 강아지똥 - (인권영상수업 1차시)

1) 프로그램 설정 이유 및 수업 방법

권정생님의 원작을 작품화한 클레이 애니메이션인 ‘강아지똥’(시골길 돌담 외 판구석에 홀로 뒹구는 강아지똥에게 모두들 하찮고 쓸모없다고 놀려대지만 어느 날 민들레의 거름이 되어 별처럼 아름다운 민들레를 피운다는 내용)을 감상하게 한 후 아이들의 일상과 접목하여 자신의 소중함, 그리고 상대방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게 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설정했다. 활동지를 작성한 다음 이야기를 나누어봤다.

2) 활동지 : 「강아지똥」

1. 나는 아무 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2. 나보다 운동이나 공부 못한다고 친구를 얹잡아 보거나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3. 영화 ‘강아지똥’을 보고 느끼거나 깨달은 점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 보세요.

나. 별별이야기(If You Were Me : Anima Vision)’ 중 동물농장편 (인권영상수업 2차시)

1) 프로그램 설정 이유 및 수업 방법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사회적 소수자 차별이야기인 ‘동물농장편’(양들이 사는 농장에 염소 한 마리가 살고 있다. 양들은 자신과 다르게 생긴 염소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어느 날 염소는 양들이 흘려놓은 털들을 주워 모아 뜨개질을 시작한다. 코피가 떨어지는 노력 끝에 양털 옷은 완성되고 양 옷을 입은 염소는 마침내 양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하지만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양은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된다.) 이야기는 요즘 왕따 문제도 심각하고 학교폭력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 이 프로그램을 설정했다. 또한 이 수업 후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따돌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수업 방법은 먼저 염소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지은 이유와 ‘동물농장’을 본 감상문을 작성하고 발표해 보기로 했다.

2) 활동지 : 「동물농장」

1. 염소의 이름을 지어 주세요. 왜 그런 이름을 붙였나요?
2. ‘동물농장’을 본 생각과 느낌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 보세요.

다. 우리 사이 짱이야(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제작),시각장애 체험하기 (인권 영상수업 4, 5차시)

1) 프로그램 설정 이유 및 수업 방법

‘우리 사이 짱이야’는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뇌성마비소년인 아람이와 천방지축 말썽꾸러기이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준호와의 우정을 담고 있다. 영화 상영 시간도 30분으로 짧아서 한 시간 수업으로 적절했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인 아람이가 짱이 된 것을 싫어하고 귀찮게만 여기다가 서서히 서로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려 낸 이야기가 공부방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음’을 내딛는 방법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영화 감상 후 활동으로는 영화의 주인공인 아람이와 준호에게 편지쓰기를 시도해 보았다.

이어 5차시에는 눈을 가리고 시각장애 체험을 실시해 보았다. 방법은 시각장애인인 루이 브라이의 얘기를 들려준 다음 눈을 가린 채, 아이들에게 물건을 찾아보라고 하고 이어 자리에 앉힌 후 종이에 지금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의 얼굴을 그려 보라고 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써 보라고 했다. 이어 눈가리개를 풀고 장애체험을 한 감상을 말해보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이나 고통을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알아야 이해하고 이해해야 실천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으므로.

2) 활동지(4차시)

- 「우리 사이 짱이야」에 나오는 아람이와 준호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활동지(5차시) : 「시각장애 체험」

1. 선생님이 지시하는 물건을 찾아보세요.
2.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 보세요.
3.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으면 무엇이 불편한지 말해 보세요.
4. 장애체험을 하고 난 뒤의 생각과 느낌을 써 보세요.

라. 우리들의 약속(초등 성폭력 예방 비디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경기도교육청이 만듦) (인권영상수업 6차시)

1) 프로그램 설정 이유 및 수업 방법

‘우리들의 약속’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치마 들추기, 이메일로 누드사진 보내기, 가슴 만지기, 속옷 끈 잡아당기기 등의 소재를 통해 성폭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애니메이션으로 흥미롭게 담아 낸 초등학교 고학년용 성폭력 예방비디오로 이 비디오 감상을 통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남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이 비디오 시청 후, 우리 몸과 관련하여 생활 속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정해 보게 하고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는 감상문을 써 보는 활동을 하였다.

2) 활동지(6차시)

1. 「우리들의 약속」비디오를 감상한 소감을 써 보세요.
2. 자신이 일상 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말해 보세요.

마. 어린이 권리를 위한 인권만화 시리즈(유니세프 만듦), 인권밥상 차리기
(인권영상수업 7, 8차시)

1) 프로그램 설정 이유 및 수업 방법

‘어린이 권리를 위한 인권만화 시리즈’(유니세프 만듦)는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세계인이 되기 위해서 익혀야 할 여러 나라의 문화와 생활,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가난한 나라의 고통 받는 어린이 실상과 어린이를 위한 위대한 노력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영상 교육 자료이다. 이 영상 자료는 각 나라 사람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인종이 등장하며 다양한 문화를 보여 주는데 특히 전쟁이나 기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아동들은 그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시켜 준다. 아이들이 잘 모르는 아동들의 권리를 다양한 상황, 문화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해 준다.

이 ‘어린이 권리를 위한 인권만화 시리즈’를 감상하고 기억나는 권리를 적어 보게 하고, 이어서 8차시에는 어린이의 권리를 음식에 비유하여 모듬별로 여러 음식을 준비한 후, 공동밥상을 차리는 프로그램, ‘인권밥상 차리기’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2차 인권수업을 마무리했다.

◆ 활동 안내 : 「인권밥상 차리기」

【인권수업 8】 인권밥상 차리기

어린이의 권리를 음식에 비유하는 것으로 모둠별로 여러 음식을 준비한 후 공동 밥상을 차리는 프로그램이다. 모둠별로 준비한 음식을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밥상에 올려놓으면 다른 모둠에서 그러한 권리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한다.

1) 열매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실현되어야 할 권리를 메뉴로 표현하면서, 어린이들이 인권을 존중받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2) 활동 내용

- ① 참여자들은 모둠별로 모여 앉는다.
- ② 진행자는 앞에 전지를 붙이고 인권 밥상을 크게 그려 놓는다. 그리고 각 모둠별로는 색연필, 색종이, 가위, 풀, 싸인펜 등을 나눠준다.
- ③ 인권 밥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각 모둠별로 인권 밥상에 올릴 음식들을 색지와 색연필 등을 이용해 꾸민다. 음식은 필히 올려야 하는 것과 부수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 등으로 나누어 장만한다.
- ④ 인권 밥상에 올릴 음식 장만이 끝났으면 각 모둠별로 장만한 음식을 발표한다. 발표가 끝나면 그 음식을 밥상에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 토론하게 하고 결정하게 한다.
- ⑤ 각 모둠별 발표가 끝나고 밥상 음식 차리기가 끝났으면 진행자(선생님)는 밥상에 올린 음식과 올리지 않은 음식들을 종합 정리한다.

3) 준비물

전지, 색종이, 매직, 색연필, 싸인펜, 가위, 풀, 양면테이프, 찬반카드
(개인당 1개씩)

다. 3차 수업의 실제 (2007년 8월 진행)

▲ 3차 수업의 실행 목표 : 몸의 소중함, 몸의 권리를 알고 실천한다. /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차별하지 않는다.

▲ 3차 인권수업 전체 프로그램

차시	제 목	내 용	기대 효과
1	성교육인형극 상연 : '나의 몸은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 몸을 가리키는 명칭을 올바르게 알고 말하기. 우리 몸의 소중함 알기. 성추행, 성폭력에 대하여 예방하기	나의 몸의 소중함을 알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2	성교육 강사 초빙하여 수업하기 : '나의 몸은 소중한 것이에요.'	성폭력의 사례, 성폭력을 당한 사람의 고통,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성폭력을 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을 알기	나의 몸의 소중함을 알고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다.
3	우리 몸이 원하는 것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안전하게 보호할 권리가 있음을 알기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태도를 갖는다.
4	동화 속에도 차별이	양성 평등 - 남녀가 하늘 일엔 구별이 없음을 알기 동화 속에 나타난 성차별적인 부분을 양성 평등하게 바꾸기	남녀가 하는 일엔 구별이 없음을 안다.
5	장애인 인식개선 인형극 상연 : '벽을 넘어 우정으로'	장애인인 민지는 자신의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또 비장애친구들은 서로의 모습이 다름을 인정하고 친구가 됨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난다.
6	청각장애, 지체장애 체험	청각장애, 지체장애 체험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차별을 이해하기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7, 8	차별 없는 세상 그리기 한술비빔밥 해 먹기	소수자, 약자, 노인, 젊은이, 인종, 외모 등등을 떠나 모두 평화롭게 사는 세상 그리기 함께 준비하여 밥 지어 먹기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고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회복한다.

▲ 3차 인권수업의 실제

가. 성교육

〈성교육 1〉 ‘나의 몸은 소중한 것이예요’ 인형극 감상(1차시)

1) 프로그램 설정 이유 및 수업 방법

인형극을 통하여 우리 몸을 가리키는 명칭 (특히 고추, 잠지, 불알 등등)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우리 몸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며 성추행, 성폭력에 대하여 예방하는 아동인형극이다. 이 인형극감상을 통하여, 아이들은 우리 몸의 명칭을 올바르게 배워서 명칭을 제대로 말하고, 우리 몸의 소중함을 배우며, 남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알며, 이렇게 소중하게 태어난 자신의 몸을 남이 함부로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만약에 만지면 ‘싫다’고 거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보호하는 것과 상대방의 몸도 다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고 자신과 타인의 몸의 권리를 일상생활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2) 활동지

【성교육 1】 나의 몸은 소중한 것이예요

1. 어떤 것을 새로 알게 되었나요?
2. 가장 재미있던 부분은 어디였나요? 왜 재미있었나요?
3. 인형극을 보고 느낀 점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성교육 2〉 ‘나의 몸은 소중한 것이예요’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의 성교육 강사 초빙 수업) - 2차시

〈성교육 3〉 ‘우리 몸이 원하는 것’ - 3차시

1) 프로그램 설정 이유 및 수업 방법

우리 몸의 소중함, 성폭력의 사례, 타인이 나의 몸을 만지려할 때의 거부,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고통,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 이성교제 시 의사소통 방법, 성폭력 상담, 성상담해주는 곳의 안내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소

중한 몸을 보호해 나가는 방법을, 타인의 소중한 몸도 지켜주는 방법을 배웠다.

이어 3차시에도 ‘나의 몸의 권리’를 정리해 보고 ‘몸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를 통하여 앞으로 나의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약속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차시에 이어 2,3차시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이 생활 속에서 몸의 권리를 누려나가는 실천면을 강조했다.

2) 활동지

【성교육 2】 나의 몸은 소중한 것이예요

1. ‘성폭행’ ‘성폭력’이란 단어로 삼행시 짓기
2. 성교육 수업을 한 소감 쓰기

【성교육 3】 우리 몸이 원하는 것 <활동지 생략>

<성교육 4> ‘동화 속에도 차별이 (양성 평등) - 4차시

1) 프로그램 설정 이유 및 수업 방법

동화 속 장면을 통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이 나타난 것을 지적해 보고 남녀가 하는 일에는 구별이 없음을 알고 성차별적인 표현을 양성평등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봄으로써 ‘몸의 권리’를 일상생활의 실천으로 발현시키고자 고안되었다.

2) 활동지 <생략>

나. 장애인 인식 개선 수업 (5~6차시)

<5차시> 장애인 인식 개선 인형극 관람하기 - ‘벽을 넘어 우정으로’

<6차시> 청각장애 체험, 지체장애 체험하기

1) 프로그램 설정 이유 및 수업 방법

장애인인 민지가 자신의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

습, 친구들이 처음엔 민지를 멀리하고 괴롭혔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가꾸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함께 걸음’을 하고 더불어 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고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만 받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민지가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해 보았다.

5차시에 이어 6차시에 청각장애 체험, 지체장애 체험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장애우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체감해 보았고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고 장애인의 권리가 획득되어지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했다. 5, 6차시 역시 생활 속에서의 인권의 실천적인 면을 강화한 프로그램이다.

2) 활동지

【장애인 인식 개선 수업 1】- 인형극 관람 후 감상화 그리기 (5차시)

【장애인 인식 개선 수업 2】 청각장애 체험, 지체장애 체험하기 (6차시)

【청각장애 체험】

1. 선생님의 입모양만 보고 무엇을 나타내는지 단어를 알아맞혀 보세요.
2. 말하지 않고 친구에게 연필과 지우개를 빌려 보세요.

【지체장애 체험】

3.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발가락으로 청각장애체험 시의 느낌과 생각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세요.

다. 차별 없는 세상그리기(7차시), 한솔비빔밥 해 먹기(8차시)

1) 프로그램 설정 이유 및 수업 방법

7차시는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읽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평등한 삶을 사는 그날까지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약속을 정하고 그런 삶을 담은 감상화를 공동으로 그려 보았다. 이어 공부방 아이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모듬별로 한솔비빔밥을 비벼 먹는 과정을 통하여 더불어 밥을 먹는다는 것,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했다.

2) 활동지(7차시)

1.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2.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날까지, 나의 작은 약속을 정하고 실천해 봅시다.

2.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 인권수업 결과 분석

1) 1차 인권수업 결과 분석

(1) 참여관찰일지

[인권수업일지 1] 권리 알기 - 7월 31일 월요일

고학년은 2교시에 ‘그림으로 배우는 권리’를 그림카드를 준비해서 수업했는데 고학년 아이들 몇은 오리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림카드를 오려 붙이고 빈 카드엔 저학년과 마찬가지로 그림카드에 없는 나의 권리를 그려 보라고 했다. 영찬이는 컴퓨터와 돈을 그렸고 정환이도 컴퓨터 모니터를 그렸다. 혜진이는 어린이도 돈과 보석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어서 우리들의 권리를 4개의 기본권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해 보았는데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그래도 이런 기본권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알았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 수업의 감상을 적어 보라고 했더니 “카드를 붙이는 것은 재미있으나 권리를 기본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려웠다”, “우리에게 권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등등의 내용이 많았다.

오늘 고학년 첫 수업은 좀 어렵고 분량이 많아서 내일은 쉬운 수업 자료를 준비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영찬이가 ‘권력’이라고 대답해서 모두 웃었지만 ‘폭력’이라고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권리’라고 정정해 주었다.

[인권수업일지 2] 우리 다르지만 다 소중한요 - 8월 1일 화요일

더 큰 문제는 6학년 영준이가 자신의 장점을 재미있게 ‘눈뿔 꺾다, 눈이 두 개다, 코가 두 개다, 머리 크다’라고 써서 발표를 하자마자 순식간에 6학년 친구들

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 흉내를 내는 것이다. 처음엔 몰랐는데 앞에 앉은 4학년 인 유정에게 물어봤더니 장애인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누구나 못난 것이 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다. 누구나 다 장애가 있다.”라고 말하자 유정이가 얼굴이 파래져서 “전 장애인이 아니에요.”라고 급하게 말하는데 그 낱양스는 굉장히 뭐랄까 장애가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놀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장애인 인권 교육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 흉내를 내는 사람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단 몸이 좀 불편한 것인데 그것을 흉내 내면 안 된다.”라고 정리했다. 장애우 체험이나 장애우의 인권수업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인권수업일지 4] 장애 체험하기 - 8월 3일 목요일

눈가리개를 벗은 아이들은 한결같이 ‘무서웠다’라는 말을 내뱉었다. 건물을 다 돌고 마지막 아이가 들어오자 소감문을 작성했다. 오늘은 6학년 드림이랑 영준이, 영찬이가 꽤 진지하게 소감문을 열심히 썼다. “장애인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장애인들이 불편하고 힘든지 알았다. 이제는 장애놀이를 하면서 장애인들을 흉내 내는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쓴 글도 있었다.

아이들도 처음으로 장애인 체험을 해 보았고 나도 장애 체험은 처음이고 이런 수업도 처음 해 본다. 장애우들이 이동하거나 통행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 번 말하고 장애인들의 통행권, 이동권이 당연한 권리임을 아이들에게 말해주었다.

다음 겨울 방학에 ‘인권수업’을 한다면 시각장애인의 체험 말고 휠체어를 빌려서 타는 체험학습을 해 보고 싶다.

힘들다

[인권수업일지 7] 차이와 차별 알기 그리고 차별하지 않기 - 8월 8일 화요일

‘신체적 특징은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라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저학년 부터 시작했다. ‘차이와 차별, 침해’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를 들어주고,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특징을 말해 보았다. ‘신체’라는 말이 나오자 어제처럼 자동으로 ‘변태’라는 말이 나왔다.

사람의 특징으로 눈, 코, 입, 머리, 귀, 손, 발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다른 말이

없어서 내가 ‘가슴’ 그랬더니 금세 아이들은 이제 ‘저질’ 그러는 것이다. ‘차별 받을 이유가 아니에요’의 활동지를 가지고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얼굴이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남자와 여자,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의 장단점을 말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남과 다르면 놀림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뚱뚱하거나 얼굴이 검다면 놀림을 받아도 되고 놀려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엿보여 인권수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또한 얼굴색이 검거나 하얀 사람의 차이를 말하는 시간에 공부방에 자원봉사하러 오신 아주머니께서 “난 하얀 얼굴이 되게 부러워.” 하는 바람에 수업 방향이 다소 헝크러졌으나 ‘놀리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인권침해이고 차별이니 이 수업을 받은 우리들은 그러지 말자’고 약속하는 것으로 저학년 수업을 마감했다.

고학년도 저학년과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차별을 당하거나 차별한 경우를 말해보자고 하니까 대부분이 ‘그런 것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서 형제 간, 나이, 외모, 성적, 신체적 특징 등을 차별한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하니까 ‘집에서 엄마가 남동생만 좋아하고 나만 혼낸다, 뚱뚱하고 못생긴 경우에는 놀리거나 아무렇게나 대한다’는 대답이 많았다.

오늘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아이들이 차이와 차별을 모르면서 수많은 차별행위를 하며 산다는 것이다. 물론 수업을 하는 나도 그럴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남이 나를 무시하고 놀려도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점과 나와 다른 아이는 언제든지 놀려도 된다는 생각이 참 깊다.

[인권수업일지 8] ‘우리가 원하는(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리기 - 8월 9일 수요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자유롭게 그려 보라 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음대로 하는 세상, 공부가 없는 세상, 컴퓨터 게임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먹고 자고 놀고 하는 세상을 그려 냈다. 저학년 아이들은 고학년보다 더 열심히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그리느라 땀을 뻘뻘 흘렸다. 남을 차별하지 않은 세상,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이라고 여러 번 말해도 마음대로 그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수진이, 혜원이, 지수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친한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세상을 그려냈는데 나도 그 세상에서 살고 싶다. 상훈이, 재근이, 종욱이는 커다란 컴퓨

터 모니터 앞에서 그저 마우스를 움직여 슈퍼마리오를 하는 세상을 그려 내느라 정신없다.

[인권수업일지 9] 아름드리 한 그루 인권나무를 심다 - 8월 10일 목요일

오늘 수업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인권나무를 심자고 하며 먼저 나무의 몸통을 크게 오려 붙여놓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권 수업이 끝나면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의 잎을 만들어 달기로 했다. “친구랑 싸우지 않아요, 욕하지 말자, 친구를 발로 차지 말자, ‘존나’라는 말을 쓰지 말자,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요, 나도 권리가 있어요, 남의 권리도 존중해요, 장애인을 놀리지 않겠어요, 차별하지 말아요” 등의 잎을 달고 ‘자유, 평등, 평화, 인권, 권리’ 등의 예쁘고 맛있는 열매도 달았다. 저학년, 고학년 할 것 없이 예쁜 색종이를 서로 골라 가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태성이가 “선생님 저 나무 잘 자랄까요?”라고 물어보길래 “네가 한 약속을 잘 지켜야만이 인권나무가 쑥쑥 자랄 거라고, 겨울 방학 때 와서 이 인권나무가 잘 자랐는지 꼭 보자.”고 말했다. 인권나무를 다 만들어 붙인 다음 아이들은 인권나무 앞에서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크게 읽어보고 ‘인권나무 심기’ 수업을 마무리했다. 겨울 방학 때는 인권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어디에 한 학기 동안 묻었다가 여름에 읽어보며 한 학기를 돌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또한 다음에도 알록달록한 색지와 색한지, 색종이를 이용한 수업도 많이 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보다 색한지를 참 좋아했다. 좀 더 많이 사서 준비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오늘 수업은 아이들 모두 잘 동참해서 풍성한 인권나무를 심었다. 우리들의 인권나무가 겨울 방학 때까지 씩씩하게 잘 자랄 것을 바라고 믿는다.

[인권수업일지 10] 솔로몬 공부방의 인권선언의 날 - 8월 11일 금요일

오늘은 공부방의 ‘인권선언의 날’로 정했다. 우리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앉은뱅이책상에 엄마가 준비해주신 ‘인권떡’을 푸짐하게 차려 놓고 눈사람보다 큰 수박 두 덩이 자르고 음료수를 준비하고 수업을 시작했다.

먼저 어제 수업에 이어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인권선언문’을 작성해보기로 했다.

“동생을 일부러 안 때린다, 욕하지 말자, 교실에서 마구 뛰어 다니지 말자, 친

구를 놀리지 말자,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랑 떠들지 않기, 오빠랑 싸우지 않기, 남의 권리도 존중해요, 다굴 안하기,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기” 등등의 인권선언문을 작성하여 다시 읽으며 우리들의 인권을 온 세계(?)에 선포했다.

이어 2주 동안 인권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써 보라고 했더니 “인권수업에서 배운 대로 하겠다, 상대방을 존중할 거다,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쓰지 않겠다, 차별이 무엇인지 알았다, 인권수업과 악수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멀리했는데 그러지 않겠다,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로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왜 존중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남의 별명을 부르지 않겠다, 어떤 친구를 막 대했던 거를 반성하게 되었다, 장애인을 흉내 내지 않겠다, 푸른샘 선생님이 보고 싶을 것 같다” 등등의 느낀 점을 말하는 것을 보고 힘들었던 마음이 뿌듯해졌다.

인권떡과 수박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이제 짧지만 길었던 인권수업의 날을 마감했다. 아쉬움이 남는지 수업이 끝났는데도 가지 않아서 서로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어제 인권나무를 심고 이어 우리들의 인권을 선포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한 것은 잘한 것 같다.

우리들의 인권이 쑥쑥 더 성장하기를 바라며 2주의 인권수업일지를 마친다.

2) 1차 인권수업 분석

2주 동안 진행된 1차 인권수업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처음엔 ‘권리’라는 의미도 모르다가 ,또는 ‘권력’과 혼동하고 있다가 몇 번의 수업이 진행되면서 자신에게는 권리가 있음을 서서히 인식하게 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 주변 특히 장애인, 얼굴이 까맣거나 몸이 뚱뚱하거나 즉 신체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차별해도 된다는 생각이 일상화되어 있음이 노출되었다. 특히 장애인은 놀려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배어 있었으나, 시각장애 체험 이후, 수업 시간만큼은 장애인을 흉내 내는 행위는 없어졌다.

그 다음의 문제는 얼굴이 까맣거나 뚱뚱한 경우의 아이들이 공부방에서도 계속 공개, 비공개적으로 무시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행위가 수업시간, 쉬는 시간, 간식 시간에도 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가 신체적으로 남과 다르면, 무시당하고 차별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다. 또 놀리는 아이들은 친구가 똥똥하거나 얼굴이 까맣다면 놀려도 된다는 생각이 내면화 되어있다는 점이 ‘신체적 특징은 차별이 될 수 없어요’라는 수업 이후에도 계속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남았다.

이어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리기’ 8차시 수업을 했을 때도 아이들은 7회에 걸친 수업의 영향이 거의 없는 그림 - 친구랑 세 개의 마우스를 달고 컴퓨터 오락을 하는 - 을 그려 내는 것으로 보아 아이들의 권리의식은 아직 신장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9차시의 ‘인권나무 심기’ ‘인권선언문 작성하기’에서는 인권수업이 끝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친구에게 욕하지 않기, 발로 차지 않기, 장애인을 놀리지 않기, 남의 권리를 존중해요, 차별하지 말아요.’라고 말하고 있어 대조되는 면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아이들의 권리의식이 2주 동안의 인권수업으로 누적되어, 조금은 신장되었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인권나무 심기’의 수업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고, 교사(필자)를 비롯한 다른 학생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한 가지는 꼭 해 보라고 강력히 유도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남의 권리도 존중한다’는 1차 인권수업 실행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인권에 대한 유의미한 경험과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아이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이 요청되었다.

또 한 가지 1차 인권수업에서 특이한 면은 학생 자원봉사자가 아닌 동네의 아주머니들이 자원봉사하러 나오셨는데 고등학생자원봉사자나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인권의식이 심각함을 위의 ‘인권수업일지 7’에서처럼 곤잘 노출되었다. 이 점은 인권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부방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가정으로 돌아가 그 어른들과 살고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른들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2차 인권수업 결과 및 분석

(1) 참여관찰일지

• 제목 : 「강아지 똥」

권정생 님의 ‘강아지똥’ 영화를 함께 보았다. 처음엔 강아지똥이 주인공이라며 아이들이 더럽다고 그러더니 점점 강아지똥의 귀여운 모습에 반해 아주 재미나게 보았다. 일곱 살짜리 아이들이 어찌나 열심히 보는지 감상 태도도 감동적이었다. 함께 수업을 도와주시는 공부방 봉사자들도 함께 보았는데, 이 영화가 정말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다. 아이들은 흙덩이가 강아지똥을 버리고 가버리는 장면에서도 많이 울었고, 낙엽이 떨어져 죽는 부분에서도 많이 슬퍼했다. 혼자 남은 강아지똥이 민들레에게 기쁘게 자신의 몸을 주어 스며드는 것을 보고도 울면서 그것은 그래도 그것은 기쁘다고 했다. 첫날부터 아이들은 빨간 토끼눈이 되어 마음까지 빨갱게 되는 것 같았다. “세상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는 것 같다.”고 고학년 아이들은 제법 어른스런 말을 하는 아이도 있었다. 은영이가 “나는 한번도 나 자신이 쓸모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도 쓸모 있게 쓰이면 좋겠다.”고 말하길래 “은영이 너는 더 쓸모 있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라고 말해주었다. 보연이는 “지저분한 친구하고는 놀아주지도 않고 따돌렸는데 이제 같은 친구니까 함께 놀겠다.”라고 말했다. 정말 권정생 선생님은 불후의 명작을 만드셨고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도 정말 멋지시다. 이번 ‘영상으로 하는 인권수업’의 첫 시작은 ‘강아지똥’ 녀석의 공로가 지대하다.

• 제목 : ‘별별이야기’ 중 동물농장편

이 영화를 본 소감을 말해 보라고 하자 ‘염소를 걷어찬 양 아빠가 정말 밋다, 염소를 따돌린 양들이 정말 미웠다, 양들이 염소를 따돌려서 미웠다’ 등등의 얘기를 많이 했고 ‘나는 학교에 가서 이제 친구를 따돌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친구가 똥똥해도 놀리지 않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왜냐하면 염소가 양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뿔을 자르는 것을 보고 뭔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다고 염소처럼 죽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 ‘동물농장’의 얘기는 요즘 왕따 문제도 있고 학교 폭력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해가 쉬워 아주 적절한 영화라

는 생각을 했다. 어떤 아이는 양 아빠가 밋다고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서 양 아빠를 마구 때리려고까지 했다.

• **제목 : 장애체험**

여름방학의 장애체험에 이어 두 번째로, 그리고 어제 ‘우리 사이 짱이야’라는 영화를 보고 바로 이어서, 오늘은 장애체험을 실지로 해 보았다. 지난여름에는 눈을 가리고 공부방 주변을 돌아보는 체험을 했지만 이번에는 눈을 가리고 물건을 찾아보게 하고 자리에 앉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을 그려보게 하고 생각과 느낌을 간단히 적어보게 했다.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을 그리라고 했더니 사람을 그렸는데 얼굴, 목, 팔 다리가 연결되지 않고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코 위에 눈이 겹쳐져 그려져 있었다. 또 글자는 겹쳐져서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체험을 한 소감은 ‘불편하다, 답답하다, 힘들다, 갇갇하다, 물건 하나 찾기도 힘들다, 장애인들은 물건을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다, 아무 것도 안 보여 넘어질 거 같다, 장애인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 것 같다’ 등이었다. 아이들은 눈을 가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고 놀라기도 했고 그림이 우스꽝스러워 마구 웃기도 했지만 잠시나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고통을 헤아려볼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알아야 이해하고, 이해해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으므로…….

• **제목 : 우리들의 약속**

비교적 내용은 재미있고 쉬웠다. 아이들이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남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스케키 같은 아이들의 장난 같지만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며 성추행이나 폭력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비디오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내 몸에 상대방이 손을 대면 싫다고 거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자는 얘기를 하는 도중 공부방의 한 아이가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경우를 얘기하여 사실은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다. 그 아이와 둘이서만 자세히 얘기한 다음 그 부모님과 그리고 공부방 선생님들과 상의하였다. 공부방 아이들에게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부분이었고 다음 여름 방학에는 보다 성교육을 심화하여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능하다면 성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성교육 수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약속’을 정해 보았는데 그것은 ‘아이스케키 하지 않기, 성폭행을 하려는 경우 ‘싫다’라고 분명히 말하기, 만약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도움 청하기’ 등등이었다. 특히 이번 성폭력에 관한 비디오를 볼 때 아이들은 나에게 “선생님, 저질! 이런 거나 보여 주고.” 하면서 수업시간 내내 저질, 변태라고 말했는데 좀 더 개방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체계적이면서도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성교육의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 **제목 : 「어린이 권리를 위한 인권만화 시리즈」**

이 영상 자료의 좋은 점은 각 국 사람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인종이 등장하며 다양한 문화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고 가지 않은 나라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전쟁이나 기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그러니까 아동들은 그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시켜 주는 그런 자료였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아이들이 모르는, 물론 나도 잘 몰랐던 아동들의 권리를 다양한 상황을 보여 주면서 반복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비디오 내용을 따라 가다가 나중에는 아이들이 저절로 “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하면서 어린이들의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지를 함께 맞추는 활동을 하였다. 비디오 시청이 끝난 후 기억나는, 알고 있는 권리를 알고 있는 대로 적어 보는 활동을 하고 가장 많이 적은 아이에게는 사탕을 주는 활동을 했더니 아이들이 정신없이 적어서 결국 모두에게 사탕을 주게 되었다. 사탕의 위력이라고나 할까? 아이들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자료였다.

• **제목 : 인권밥상 차리기**

이번 인권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인권밥상 차리기’였다.

오늘은 아이들과 모둠별로 인권밥상을 차렸다.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들의 모든 권리를 되새기며 큰 도화지에 우리들의 권리가 듬뿍 들어간 푸짐한 밥상을 차렸다. 그러자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밥상을 차렸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밥상에 올라 간 것은 ‘놀 권리가 있는 피자, 놀 권리가 있는 불고기, 놀 권리가 있는 김밥, 놀 권리가 있는 햄버거, 놀 권리가 있는 아이스크림, 놀 권리가 있는

사탕'이어서 아이들이 놀 권리가 있음에도 충분히 놀지 못하고 초등학생인데도 벌써 성적이나 시험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비록 가짜 음식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던지…… 역시 모든 것의 최고는 음식, 먹는 것이다.

원래는 여러 메뉴를 만들어서 밥상에 차릴 때 서로 어떤 것을 올려야 하는지 토론(?)을 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완강하게 다 올려야 한다고 고집을 피워서 모든 음식을 다 인권밥상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인권수업을 2학기나 하고 있는 '인권요리사'이고 너무나 정성들여 하나하나 인권밥상을 차렸기 때문이다. 음식이 어찌나 예쁘던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스프룩 돌아 인권밥상을 차려 놓고 너무나 배가 고파 근처 시장에 있는 김밥과 떡볶이, 봉어빵을 다 사다가 먹으면서 “음, 이것은 놀 권리가 있는 김밥, 선생님,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떡볶이예요. 야, 이것은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는 봉어빵이야.” 하면서 배부르게 먹었다. 참 재미있고 즐거운 인권수업이었다.

이 '인권밥상 차리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방학에 만나서 더 즐거운 인권수업을 기약하며 제 2차 '꼬마쌤의 별별 수업'을 마감했다.

• 인권영상수업을 마치며

이번 인권영상수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영상 자료를 보는 것은 수업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몇몇 동네아주머니들과 아이들의 모습이였다. 영어, 수학 수업은 곧잘 동참하다가도 인권 영상 수업 시간만 되면 장난을 하거나 딴 짓을 하거나 심지어는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는(많지는 않았지만) 몇몇 아이들을 보면서, 또 영상수업을 시작하면 눈살을 찌푸리고 계시는, 도와주러 오신 동네의 아주머니들을 보면서, 영어, 수학 과목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살아가는 실천 행위를 배우는 이런 수업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았다고나 할까? 참 마음이 답답했고 괴로웠던 부분이기도 했다. 이런 단면들을 보면서 인권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어른들에게도 정말 필요하고 보급,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2) 2차 인권영상수업 분석

이번 2차 인권영상수업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시행했다.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눈과 귀에 즉각적으로 호소한다는 점이다. 눈과 귀에 동시에 작용하는 영화의 특성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상황, 사상,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장점 말고도, 많은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아이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다는 점, 배우의 역동적인 연기, 인물들의 심리를 도와주는 배경음악 등이 동원된 영화의 특수성으로 인권이 아이들에게 딱딱한 지식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적시고 마음을 적시는 따뜻한 정서적인 울림으로 피드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아지똥’을 보면서 모두 빨간 눈의 토끼가 되었고, “한 번도 나 자신이 쓸모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도 쓸모 있게 쓰이면 좋겠다.”고 말하며 자존감을 회복해 감을 볼 수 있다.

‘별별이야기의 동물농장편’을 보면서 폭력자인 양의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염소를 가엾어 하고 그리고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하는 염소에게 한심하다고 비판하고, 양의 아버지가 염소를 차별한다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 학교에 가서 반 친구들을 따돌리지 않겠다는 작지만 실천하려는 인권의식의, 성장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우리 사이 짱이야’ 만화영화를 보고 또 연이는 장애 체험으로 준호와 장애인인 아람이가 서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눈물 흘리고, “앞으로는 장애를 가진 친구뿐만 아니라 똥똥하고 지저분한 아이를 따돌렸는데 잘 대해 주겠다.”는 자신을 반성하는 태도를 많은 아이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신체, 외모의 다름’을 두고 차별했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반성으로,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차별 행위를 덜 할 가능성으로 볼 수 있고 2회에 걸쳐 진행된 ‘장애 체험 교육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성폭력예방비디오인 ‘우리들의 약속’을 감상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몸의 소중함과 남의 몸의 소중함의 인식, 그리고 성폭력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성에 대한 무지함과 이미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문제점으로 노출되어, 성교육의 절급함이 요청되었고 3차 인권수업의 목표와 내용을 수정,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린이 권리를 위한 인권만화 시리즈’로 아이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권리를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아동들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모두 있음을 인식했다.

마지막으로 ‘인권밥상 차리기’는 색종이, 색한지, 색도화지 등의 다양한 재료 준비가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모든 아이들이 적극 참여한 ‘먹을 것과 권리(인권)’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적절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판단된다. 권리 중에 으뜸은 ‘놀 권리가 있는 사탕, 놀 권리가 있는 과자, 피자, 김밥, 갈비, 햄버거, 놀 권리가 있는 아이스크림’인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 아이들인데도 충분히 놀지 못하고 시험이나 성적에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자원봉사하는 학생이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다가 필자가 인권수업을 하면, 공부방을 도와주러 오는 동네의 아주머니들은 부정적인 태도와 반응을 자주 보였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 무지요, 영어, 수학 등만을 중요시하는 입시구조에 길들여진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인권교육이 아이들에게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학교, 사회의 어른들에게도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함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3) 3차 인권수업 분석

1) 참여관찰일지

[성교육 1] 나의 몸은 소중한 것이예요(인형극)

고미숙 선생님은 먼저 우리 몸을 가리키는 명칭을 ‘고추’가 아닌 ‘음경’으로, ‘잠지’가 아닌 ‘음순’으로 정확히 부르라고 가르치셨다. 또, ‘자궁’이나 ‘태줄’, ‘질’ 등의 역할도 그림을 보여 가며 쉽고도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다. 처음에 고추, 음순, 음경 등이 커다랗게 쓰여진 대형책이 펼쳐지자 아이들은 킁킁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변태라고 하면서 책을 외면하기도 하는 등 난리가 났다. ‘질’이나 ‘자궁’을 얘기하니 아주머니들까지도 얼굴이 빨개지셨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그림이랑 인형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정자가 힘들게 모험을 하여 엄마의 몸속에 있는 난자와 만나는 과정도 보여 주셨다. 아이가 조금씩조금씩 엄마의 뱃속에서 태줄로 영양을

공급받고 배설하는 과정도 보여 주었는데 참 신기했다. 나 자신도 아기가 엄마의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는다고 생각은 했지만, 탯줄이 배설물을 내보내는 통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소중한게 태어난 나의 몸을 남이 함부로 만지게 해서 안 되며, 만약에 만지면 ‘싫다’고 거부하라고 가르쳐주셨다. 극에 등장하는 영کم이가 아름이 엄마가 안 계시는 틈을 타서, 영کم하게 아이스크림을 주고 유혹하여 아름이를 성폭행하려고 하자 가까스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자신의 소중한 몸을 남이 만지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셨다.

인형극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을 둘러보니, 주로 저학년 아이들이 대답도 하고 따라 하기도 하고 또 큰소리로 응원도 하면서 열심히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아이들을 도와주러 오신 동네 아주머니들도 열심히 보고 계셨는데, 아마 자녀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인 것 같았다. 고학년 아이들 중 몇몇은 유치하다면서 집중을 하지 않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인형극으로 하는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지루해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배우는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인형극 공연을 마치고 공연하신 분들께 어떤 아이가 질문을 했다.

“선생님, 남의 몸에 손대면 안 되니까 악수도 하면 안 되나요?”

“악수는 괜찮지, 괜찮아요.”

[성교육 2] 나의 몸은 소중한 것이예요

먼저 저학년 반부터 수업을 시작했는데 저학년의 반응은 사진처럼 무척 생동감이 느껴졌다. 질문도 많이 하고 대답도 잘하고 발표도 척척 하고 그랬다. 선생님께서 우리 몸의 명칭부터 물어보셨는데, 남자애의 중심부를 가리키며 “이 부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제 인형극의 효과인지, ‘고추’라 하지 않고 ‘음경’이라고 또랑또랑 대답했다. 선생님께서는 놀라워하셨는데 나중에 어제 인형극 때 배웠다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셨다. “우리 성기에 아무나 손대거나 만져도 되냐?”고 선생님이 질문하자, 대부분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럼 부모님도 우리 성기를 아무 때나 만지거나 보셔도 되냐?”고 그러니까 20명 중 15명이 “만져도 된다.”고 대답하자, 선생님께서 “부모님도 아무 때나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단, 부모님은 여러분의 몸(성기)이 아플 때, 그리고 씻겨 주실 때만

보여 드러라.”고 말씀하셨다.

또, 성폭력을 당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의 고통도 말씀해 주셨고, 만일 자신의 몸에 다른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강하게 말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만일 성폭행을 당한 경우엔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야 한다. 부모님을 죽인다고 했어도 꼭 말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고학년 반 아이들의 수업 분위기는 재미없어 하고 지루해 하고 유치하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수업 끝나고 몇몇 아이들이 “오늘은 변태수업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나갔다. 수업 내용은 저학년과 거의 비슷했으나 언어가 좀 더 어려웠다. 그리고 성폭력의 위험에 처했을 때 좀 더 강하게 의사표현을 하라고 하셨고, 급한 상황일 경우엔 돌멩이라도 주워 남의 집 창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긴박한 상황에서 “살려 주세요.” 그러지 말고 큰 소리로 “불이야!”라고 외치라고 하셨다. 요즘 사람들은 “살려 주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호루라기도 가지고 다니고 호신술도 배우라고 하셨다. ‘이성 교제’ 시에 사귀는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하면 ‘싫다’는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라고 하셨고, 동시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스킨십 역시 성폭력이라고 말씀하셨다. 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었지만 고학년 아이들 반응은 좀 저조했다. 고개만 숙이고 있는 아이도 몇몇 있었고 핸드폰 가지고 문자 보내며 노는 아이도 몇몇 있었다.

[성교육 4] 동화 속에도 차별이(양성평등 교육)

오늘은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어린 날에 많이 읽었던(지금도 어리지만) 동화들(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 공주, 백조 왕자, 신데렐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다.

먼저 저학년 아이들은 평등이나 양성 평등이란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백설공주는 꼭 집에서 설거지만 해야 될까? 곡괭이 메고 바깥으로 나가서 난쟁이처럼 일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돼요. 되지요”라고 대답했다.

백조왕자 그림을 보면서도 이렇게 질문했다. “왕자는 공주를 번쩍 안아주고 있는데 공주가 왕자를 번쩍 안아주면 안 되니?” 그랬더니 그것도 ‘된다’고 했다.

한 똑똑한 아이가 “왜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맨날 잠만 자요?”라고 질문을 해서 “맞아, 왜 동화 속의 공주들은 잠만 자고 하는 일이 없을까? 힘도 없고 이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할을 바꿔보자. 공주도 바깥에 나가서 씩씩하게 일하게 하자. 그리고 공주도 나가서 칼 차고 다니면서 싸우게 하자.”라고 말해주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게 했다.

1학년인 현민이는 백설공주가 곡괭이 들고 나가서 일하는 그림을 아주 멋지게 그렸다. 게다가 인어공주 이야기도 꺼내놓고서 인어공주 이야기를 인어왕자로 바꾸어 그림을 그리기까지 했다. 2학년인 화평이는 왕자는 자고 공주가 운전하는 현대판 공주를 멋지게 그렸다.

남녀가 일하는 것에는 구별이 없다는 메시지는 아이들이 충분히 공감한 것 같았는데 오늘 우리들의 활동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정리하다 보니, 왕자랑 공주랑 모두 함께 즐겁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공주 대신 왕자가 숲속에서 영원히 자고 있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헉! 이것이 나의 수업의 한계인가? 아님은 아이들의 한계인가?

고학년 수업 중에 “얘들아, 공주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우면 안 될까?” 그랬더니 저학년과는 다른 반응이 나왔다. “공주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은 좀 흉해요.”

헉! 저학년과 비교해 보면 고학년 아이들이 더 성역할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굳어져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로서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지나치게 신경 쓰는 데에서 나온 표현으로 생각되었다. “얘들아, 흉하고 안 흉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쉬면 좋잖아.” 이렇게 그 대화를 마무리했다.

서로 평등하게 일하는 것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하게 했더니, 혜진이는 난쟁이는 의자 위에서 설거지하고 공주는 나가서 일하는 것으로 멋지게 표현했고, 수희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문제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마법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남자가 와서 구해주길 기다리는 것이다. 신데렐라에서도 문제는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약혼을 청하는 것이다. 항상 여자들은 남자들이 먼저 하자는 대로 한다.’라고 정답(?)을 내놓았다.

[장애인 인식개선수업 1] 벽을 넘어 우정으로

저학년들과는 인형극을 보고 난 후 감상화를 조별로 그려 보자고 했더니 혼자 그리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어 혼자 그리기도 하고 둘이, 여럿이 그리기도 했다. 3학년인 재희는 무대의 색깔까지 잘 기억했다가 파란색으로 열심히 무대를 그렸고, 진이는 아주 선명한 빛깔로 ‘사랑해, 친구야!’란 그림을 그렸으며, 일학년인 나리와 다희는 서로 사이좋게 머리를 맞대고 그림을 그렸다. 다른 아이들도 인형극 때 보았던 장면을 떠올리며 열심히 그렸다.

고학년에서 유일하게 인형극을 보며 울었던 아이는 은영이다. 은영이는 글을 참 솔직하게 쓴다. 인형극을 보고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고 썼다. 다른 아이들도 “앞으로 장애인을 만나면 피하지 않겠다, 놀리거나 무시하지 않겠다,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많이 도와주어주세요.”라고 썼다. 그런데 저학년과 고학년의 한두 명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고 쓰기도 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동네 아주머니들은 성교육에 대해선 굉장히, 거의 열광적으로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지는 않으셨다. 인형극을 다 보고 나서도 성교육인형극을 보고 나서의 태도와는 많이 달랐다. 그때 “참 좋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여러 번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앉아만 계셨다.

왜 그런가 곰곰 생각해 보고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와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 답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성교육은 곧 자신의 딸의 직접적인 문제, 그러니까 성폭력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성폭력 예방도 해야 하는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자신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장애인의 문제라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형극을 통한 인권교육 성과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고정관념, 즉 장애인은 무기력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을 조금은 전환시킨 점일 것이다. 결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열등하지 않고 동등하다는 점만 똑바로 인식했어도 이번 수업은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일은 이어서 청각장애 체험, 지체장애 체험을 해 볼 것이다. 시각장애 체험은 이미 두 번씩이나 했으므로.

[장애인 인식개선 수업 2] 청각장애체험, 지체장애체험하기

저학년과 고학년 공통으로 청각장애체험과 지체장애체험을 했다.

간단하게 눈이 불편하면 시각장애인, 귀가 안 들리면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서 ‘그럼 말을 못하는 경우는 뭐라고 하나?’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멍어리’라고 해서 ‘언어장애인’이라고 알려주었다. 또,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하고 말하니 아이들이 ‘앉은뱅이’라고 말하여 ‘지체장애인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먼저 청각장애 체험을 했다. 내가 몇 개의 단어를 소리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 말하면 아이들은 그 답을 종이에 적는 방식이었다. 다섯 개의 단어를 말했는데 하나도 못 쓴 아이가 대부분이고 한 개, 두 개 쓴 아이도 몇 명 있었다. 물론 다 맞춘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특이한 것은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입모양만 보고 단어를 맞추는 게 정확했다는 점이다.

이어서 소리 내지 않고 연필과 지우개를 빌리는 활동을 했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수월했던 게 아이들이 상대방의 필통을 열어 연필과 지우개를 꺼내 들고, 그 아이 눈 앞에 보이면서 눈짓으로 ‘됐지?’ 정도의 동작을 하면서 가져와 버리는 것이다. 다음엔 이 활동보다는 말하지 않고(소리 내지 않고) 전화를 거는 활동을 해 볼 생각이다.

이어서 지체장애 체험으로, 청각장애 체험 소감을 손가락이 아닌 발가락을 사용하여 작성해 보는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발가락이 아파요, 답답해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신이는 “왜 이런 일을 뭐하게 해요? 짜증나게.” 하면서 마구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사건이 생겼다. 어떤 아이가 “손도 발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어요?” 이렇게 질문하자 예진이 어머니(이번 방학에 봉사하러 오신 동네 아주머니)께서 당황하시면서 “입을 그릇 가까이에 대고 먹지 않을까?”라고 말하시면서 입을 그릇 가까이에 대는 동작을 취하자 그 아이는 “아, 개 같애. 드러.” 그러는 것이었다. 그 옆에 있다가 이 상황을 보고 듣게 된 나도 당황해버렸는데 이후 마음이 참 착잡해졌다. 만약에 지체장애인들이 힘들게 식사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이들이 그 아이처럼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함부로 말해 버린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장애인들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잠시 아찔해졌고 두려움이 일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하나 생겼다. 이번 여름 방학에 처음 온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친구한테 “애자 같애. 너 애자야?”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있던 (공부방에 오래 다닌) 그 아이는 나를 쳐다보면서 “야, 너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나, 맞죠?” 그러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솔로몬공부방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그런 말 안 쓰기로 약속했는데…….” 그러자 그 아이는 민망한 듯 후다닥 가 버렸다. 아직은 많은 편견과 무시, 차별 등이 뒤범벅이지만 공부방 아이들이 위에서처럼 의식하고(내 앞에서만 그러는지는 몰라도, 아니 그래도) 잘 행동하려고 하면 마음이 환해진다. 쉽게 달라지는 않지만 우린 분명 변해가고 있다. 비오는 날의 일기 끝.

[차별 없는 세상 그리기]

고학년은 성적차별, 학력차별, 성차별,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 중에 성적차별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모둠이 많았다.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에 대한 선생님과 아이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얘기도 했고 심지어는 형제간에도 공부를 못하면 부모님도 다른 형제들도 무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돈 이야기도 많았다. 돈으로 인한 빈부차별,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내용도 많았고 못 생겼거나 똥똥하면 따돌림을 받는다고도 그랬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차별받고 차별당하는 주된 이유는 돈, 성적, 외모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오늘 아이들이 차별없는 세상을 그리는 것을 보면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음을 볼 수 있다. 5학년인 회원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얼굴이 검은 사람, 갈색인 사람, 하얀 사람, 연주황인 사람 등 다양한 피부색을 띤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장애인 비장애인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보이고 또 아주머니 머리를 뽀글뽀글 파마한 할머니 그리고 거미, 토끼 등 동물들까지 손을 잡고 노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슴이 뛰었다 인권수업 3학기째, 일 년 만에 나타나는 변화인 것이다. 난 심장이 쿵쿵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 !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인권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한솔비빔밥 해 먹기]

공동화를 그리는 활동에 이어 오늘은 인권수업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한솔비

빔밥 해 먹기'를 했다. 모듬별로 여러 가지 나물들,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당근 볶음, 무생채, 상추를 준비해 와 아주 커다란 볼에 넣고 뜨거운 밥이랑 참기름, 고추장을 넣었다. 위생장갑을 끼고 쓱쓱 짹쓱 마구 비벼서 모두 다 둘러앉아 맛있게 먹었다. 꿀맛이었다. 모두들 맛있게 먹었고 저학년 아이들은 훌리면서, 또 맵다고 아우성치면서도 그러면서도 거의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마지막 후식으로 인권수박을 잘라 먹고 2007년도 여름방학 3차 인권수업의 막을 내렸다. 내년에도 인권수업 마지막 날에는 '한술비빔밥 해 먹기' 활동을 해야겠다.

2) 3차 인권수업 분석

가. 성교육 분석

전문가에 의한 성교육인형극 공연과 이어 성교육 강사의 성교육 강의는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구체적으로 보호해가고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실천적인 수업이었다. 성교육에 대한 저학년 아이들과 초등학교 학부모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형이라는 매체를 이용한 인형극 공연은 저학년 아이들에게 흥미를 지속시켜 주어 끝까지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곳곳의 명칭을 제대로 부를 수 있게 유도하고 자신의 몸이 매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또한 동네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하여 아주머니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의 관한 수업에서도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성역할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강화되어 있는 현상도 노출되었으나 고학년의 아이들 중엔 “공주가 자신의 힘으로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 않고 왕자가 와서 구해주기만 한다.”고 공주의 소극적 행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요컨대 성교육에 있어서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는데, 이 이유는 인형이라는 매체가 저학년에게 더 동화적인 환상과 자극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이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두터워서 짧은 기간의 교육이나 수업으로는 많은 부분이 수정되기 힘든 것이라고 판단되기도 한다. 동네 자원봉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의 반응이 우호적인 까닭도 성교육이 자식을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특히 성폭력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지도할 수 없었던 바 이번 수업을 통하여 가정에서

자녀교육 시 유용한 정보와 교육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나. 장애인 인식개선 수업 분석

장애인 인식개선 수업은 작년 8월 처음 인권수업을 시작한 이래, 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수업의 성과는 막연히 ‘장애인이 힘들겠다, 또는 장애인을 도와주어야겠다’라는 추상적인 태도를 벗어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함을, 그리고 비장애인이 무기력한 존재가 아님을 제대로 이번 집중적인 장애인인식개선 수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인권교육에서도 1회적인 체험이나 수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업이나 활동을 통하여 인권교육이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차별 없는 세상 그리기’ 활동에서도 이제 아이들의 그림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전에 그림이나 글에서는 의도하여 언급하지 않으면 장애인, 다른 인종,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아도 장애인,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약한 동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림이 아이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때 아이들이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인정되는 세상이 평등하고 차별 없고 평화로운 세상임을 아이들이 가슴으로 심장으로 머리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원봉사하시는 동네의 아주머니들의 장애인인식개선 수업을 할 때의 반응은 성교육보다 냉담하고 저조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성교육은 자기 자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지만, 장애인인식 개선활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와도 별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3차 인권 수업의 목표인 ‘몸의 소중함, 몸의 권리를 알고 실천한다/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집약적인 수업으로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종합적인 분석

지난 3학기의 방학, (2006년도 여름·겨울방학, 2007년도의 여름방학)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공부방에서 실시되었던 인권교육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의 인권

의식, 인권감수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않는지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인권을 인건이라고 쓰고 적었던 2006년도 여름에서 일 년이 지나 이제 아이들은 “푸른샘 썸 인권수업 해요.”라고 말하기까지 일 년이 지나갔다. 정규교육의 공간도 아니고 지역의 뜻있는 사람 한 둘이 모여 시작된 이 공부방에서의 비정규교육, 즉 자원활동으로서의 인권교육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내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이 존중되는 편리함도 함께 했다.

2006년도 8월 여름방학에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남의 권리도 주장한다’라는 목표 아래 진행되었던 1차 인권수업은 아이들의 수업결과물과 교사의 참여관찰일지를 통하여, 인권과 권리의 개념을 인식하고, 나와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의식의 변화가 발견되었지만 그 변화는 작아서 인권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이 요청되었다.

이어 2007년 1월에 실시되었던 ‘영상매체를 활용한 인권수업’은 다채로운 간접경험으로 눈물 흘리고 분노하고 자신과 친구와 이웃의 인권을 돌아보는 풍요로운 인권체험의 시간이었다. 2차 인권수업의 성취를 “성찰 없는 삶은 새로운 세상, 기존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을 제한하고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 정서를 만든다. 나는 개인의 감정과 의지, 존엄성과 가능성이 파괴된 것에 대한 분노에서 평화와 인권에 대한 갈망이 성숙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갈망의 공감 이야기말로 사람이 사람으로 숨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연대의 힘이 아닐까?”²⁸⁾라고 말한 정유진의 말로 대신한다. 아이들은 눈물 흘리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인권의 실천을 약속하는 시간이었다.

2007년의 8월 여름방학에 실행한 3차 인권수업의 의미는 공부방 아이들의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을 찾아 성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일 것이다. 3학기에 걸쳐 시행된 인권교육의 힘으로 아이들의 결과물에서 자연스럽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이 많이 신장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크지는 않지만 소박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헤아려 보면, 인권수업이 3학기 방학에 걸쳐 연계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과 국가인권위원

28) 경합하는 가치로서의 ‘국가안보’와 ‘개인의 안전’, 정유진, 2005년도 인권논문수상집, 51쪽

회의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기타 인권프로그램을 공부방 아이들의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는 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상자료실의 영상물을 초등학교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여 감상하고 활동했다는 점, 그리고 여러 인권 프로그램 중에서 공부방 아이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성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는 점, 체험 위주의 학습과 다양한 재료의 준비로 아이들의 관심도를 높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입체적인 인형극이나 전문가를 섭외하여 적절한 인권교육의 질을 제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VI. 결론과 제언

1. 결 론

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 자원활동자이며,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이버 인권배움터에서 인권을 학습하는 인권학습자인 동시에, 공부방 아이들에게 알맞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인권의식을 불어넣으려 했던 인권수업의 서툰 교사로서 보낸 지난 14개월 간의 나의 고민과 흔적과 몸부림, 나의 실천행위를 이 논문에 정리하여 담아내기엔 한국의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고등학생의 인권환경에선 눈물 나게 버겁고 고통스러웠음을 이제 고백하고 싶다. 오전에는 공부방에서 인권수업을 하고 오후에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버리고 몸도 많이 지치곤 했다.

지난 2006년 여름, 이 공부방에서의 1차 인권수업의 경험을 논문으로 정리하고자 시도해 보았지만, 짧은 여름방학, 많지 않은 여유 시간이 대한민국 고등학생인 나 자신을 도저히 배려해 주지 않아 시도에만 그쳤다. 그러는 가운데 2차(2007년 1월), 3차(2007년 8월) 인권수업이 진행되었고, 부족하지만 지난 일 년 남짓한 3학기 방학 동안, 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 인권교육, 인권수업의 경험, 배우고 실천하고 나눈 경험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이다.

나름대로 인권수업 자료를 모으고 편집하고 수업 방법을 모색하며 초등학교 아이들의 인권감수성²⁹⁾을 신장하려 꿈틀대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나 많은

29) “인권감수성이란 인권문제가 재개되어 있는 특정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한계를 느꼈다. 2차 ‘인권영상수업’을 실시하자 아무런 관심도 없던, 동네의 아이들을 도와주겠다고 오신 아주머니(공부방의 학부모)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나? 왜 영어 수학만 가르치지 시험도 안 보는 그런 것만 가르치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왔고, 2차 인권수업 후 성교육이나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절급함을 얘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인솔하여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도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프로그램의 예약을 취소하는 상황까지 갔다. 그러나 3차 인권수업 중 성교육이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몸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으로 어필되고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지 공부방을 둘러싼 어른들의 인식도 조금은 달라지지 시작했다.

내가 처음 공부방에서 자원활동을 시작하던 중학교 2학년 때의 공부방 아이들의 원초적인 모습, 그러니까 수업시간에도 발차기를 하며 서로 싸우고 활쾅고, 원색적인 욕으로 씨팔씨팔대던, 자신과 조금만 다른 점이 있으면 좁은 공부방에서도 놀리고 무시하고 따돌리던, 상대방이 자신을 욕하고 놀려도 대응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던, 수업 시간에 ‘애자(아이들은 장애인을 줄여 ‘애자’라고 함) 흉내’를 내던, 자신이 똥똥하다는 이유로 ‘돼지새끼’라고 놀려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던,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면 공부방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따돌리던, 그런 일상을 ‘인권’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공부방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나눔의 시간이라면 나와 아이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에서 인권교육, 인권수업의 첫발은 떼어졌다.

인권수업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영어, 수학을 가르칠 때보다 훨씬 열심히 참여했고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 온몸을 다 던져 참여했다. 그러나 3학기 방학을 지내오는 동안, 도와주러 오시던 동네의 아주머니를 포함하여 공부방 아이들의 학부모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것들이 노출되었다. 그것은 아이들이 인권수업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자신들이 배운 거,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을 보고 난 후부터이다. 드디어 조효제가 말한 ‘뜨거운 주제인 인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이죠. 인권감수성이 왜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하면, 바로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과정이기 때문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배움터, 인권지식Q&A, 2006, 7, 이인영

권³⁰⁾을 어른들도 비로소 아이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이다. 처음엔 권리를 권력으로 알던 아이들이, ‘인권’을 ‘인건’으로 쓰던 아이들이, 나 자신은 쓸모없으며 권리가 있는 줄도 모르던 아이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마음과 몸이 다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고 더불어 나오는 다른 것들에 대한 존중심, 인정, 어른들의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환경에서 똑같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장했던 아이들이 자신들의 키만큼 키워왔던 고정관념을 지워가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친구를 괴롭히고 짓밟으면, 즐거웠던, 우쭐했던 시간에서 해방되어, 부끄러움의 성찰의 시간을 갖고 내가 뵈 모르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무시당했던 시간이 당연한 시간이 아니었음을 나도 아이들도 덩달아 깨달아 가던 시간이었다. 내 친구가 고통받지 않고 평화로워야, 내 이웃도 나와 같은 권리를 누려야, 서로 행복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음을 조금씩 알아가던 시간이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 인권나무를 튼튼하게 심고, 지킬 수 있는 약속, 인권선언을 선포하며, 장애우 친구도 비장애 친구와 같이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알아가며, 내 몸의 소중함, 내 친구 몸의 소중함도 체득해 가며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공부방에 인권밥상을 풍성하게 함께 차렸던 것이다 이것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인권교육의 의미이다.

그러나 이 인권교육이 자원봉사활동과 접목되어,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이 만난 그 자리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거나 꽃이 필 가능성을 예단해 볼 수는 있지만 자원봉사활동으로서 인권교육이 열매를 맺으려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특성들이 강력하게 요청된다. 자원봉사활동은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수요자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하고, 배치하고 조정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수행하는 체계적인 자원봉사프로그램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인권교육 또한 산발적,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조직되어 인권교육과 만난다면 자원활동으로서의 인권교육, 또는 인권교육을 통한 자원활동이 아름답게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학교 교육에서도 처음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소양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종 단체에서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확대·강화시켜 자원봉

30) 인권의 문법, 조효제, 2007, 서문 9쪽

사활동의 첫발을 떤 중고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면, 현재의 중고등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제언

나는 아동이고 학생이다. 인권을 배울 권리가 있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인권을 배워나갈 기회를 박탈당하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백만 청소년들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단 한 번도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될 혐의가 짙은 이 땅의 고등학생이다. 내가 무식, 용감하게 인권교육을 실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제 인권교육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인권이 정지된 교실에서, 인권과 무관한 선생님과 인권을 포기한 무기력한 동지들과, 하루를 지내고 돌아오면 또 인권과 무감한 어른들과 맞대면을 하고 영어와 수학만 잘하면 세상이 평화로운 반인권적인 환경에서 우린 무력무력 자라나고 있다. 기분 나쁘면 친구에게 욕 세례를 퍼붓고 마음에 안 들면 나의 친구를 무자비하게 때고 나보다 더 약하거나 다르거나 부족한 친구를 만나면 따돌리고 무시하고 차별하며 더 강한 폭력자 앞에서 비굴해지며 얼마를 더 견디며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인권교육에 대한 무성한 이론과 담론만을 펼치면서 비인권적인 환경에서 방치되어 성장하는 아동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인권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하게 내세우고 있는 기성세대는 많지만 서툴지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교실, 단체, 활동가들은 많지 않았다. 더구나 자원봉사활동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연구한 경우는 단 한 건의 사례도 없었다.

둘째,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에서 하는 인권교육만으로는 반인권적인 이 환경을 극복해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권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인권적인 정서를, 인권의식을, 인권감수성을 기를 수 있단 말인가?

셋째, 공부방 자원활동으로 인권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편협한 고정관념의 질음을 확인했으며 고학년보다는 동네의 어른들이 더

편협했다. 곧, 가장 심각한 인권의식의 부재현상은 역으로 어른들, 고학년, 저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평생교육으로 이제 자리 매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 쪽만의 교육으로는 잦은 갈등, 충돌만이 예상되며 결코 인권적인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된다.

넷째, 셋째와 관련하여 인권교육은 어린아이 때부터 그 나이에 알맞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평생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부방에서 가장 열심히 한 아이들은 형, 오빠 언니, 누나를 따라 온 유치원 일곱 살짜리였음은 무엇을 입증하는 것인가? 나는 2006년도 국제 청소년 인권회의에 국가청소년위원회 선발 청소년 대표로 참여한 바 있는데, 여러 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가르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책자로 인쇄하여 가져온 바 있었다. 나는 공부방에서의 인권교육사례를 발표하는 데 그쳤던 것, 그리고 네덜란드 청소년이 가져온 책 *A book of lesson plans and teaching suggestions for Humanist Ethical Education*(각 연령에 맞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워크북)에서 7세부터 인권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껏 잊지 못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이트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용, 고학년용, 중학생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긴 하다. 하지만 내 자원활동 경험으로는 인권교육은 유치원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실시되어야만 인권교육의 부재로 인해 파생되는 폭력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인권감수성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수백만 학생들이 방학 때면 주민자치센터로, 아파트관리소로 시간 때우기 식의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다. 이 수많은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 일정 부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도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더 배우고 실천하게 되면 자원활동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 경우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아시아인권센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이버배움터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인권에 대한 이해, 장애차별예방과정, 성차별 예방과정 등을 이수함으로써 부족하지만 인권감수성을 띄워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의 뿌리가 될 수 있고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 삶의 전반적인 가치,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인권교육밖에 없다. 서둘러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 우리 가까이서, 바로 여기서’다.

<참고 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간행 · 소장 문헌

-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길잡이, 2002
- 구정화 외,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2004
- 우리 교과서의 인권이야기, 2002
-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2004
- 피부색은 달라도 모두가 평등합니다, 2004
-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2005 - 초등학교용 인권교육 교재
- 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2006 - 중학교용 인권교육 교재
- 사람이 곧 하늘이다, 2006 - 고등학교용 인권교육 교재
-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2006 - 유엔의 초·중등학교 인권학습 활동 안내서
- 교사를 위한 인권 교육 기본 용어, 2004
- 조태원, 초등학교 인권교육의 실태 분석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서기남, 도덕과 교육에서 ‘인권교육’의 방안 및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승희, 다르게 함께 사는 세상, 2003
- 인권동화책 및 매뉴얼을 활용한 인권교육 워크숍 자료, 2003
- 인권동화책을 활용한 인권교육 워크숍 자료, 2002
- 인권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국가인권교육계획 관련 토론회 자료, 2003
- 유럽·미국의 인권교육 실천과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 인권교육 국제 워크숍 자료, 2006
- 학생인권 증진 인권교육 토론회 자료, 2006
-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005
- 2006 교원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자료, 2006
- 김동배,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2005
- 권미영,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2006

▲ 기타 문헌

- 파울로 프레이리 외,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아침이슬, 2006
-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 땅콩 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우리교육, 2003
-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 이용숙 외, 교육현장 개선과 함께하는 실행연구방법, 학지사, 2005
- Gary D. Borich, 효과적인 수업 관찰, 아카데미프레스, 2005
- 조용환,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2002
- 심우엽, 교육연구방법, 도서출판 하우, 2005
- 오영재 외, 현대 교육학의 이해, 교육아카데미, 2005
- 김희수,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방법론, 일문사, 2006
- 강순원, 평화·인권·교육, 한울아카데미, 2000
-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 계획 관련연구, 2003
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교육연구소,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2005년도 인권교육
개념모색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외, 교과교육에서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자료집,
- 인권운동사랑방, 1회 민간단체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자료, 2000
- 두리하나공부방 외, 공부방 통통 인권생활수칙, 2007
- 인권운동사랑방, 제4회 어린이 인권캠프 ‘인권과 친구하기 2002’, 2002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 길잡이, 도서출판 사람생각, 1999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역, 아이사의 인권교육 : 호주·인도·홍콩 편, 도서출
판 사람생각, 2000
- 유엔인권센터 엮음, 인권교육의 이론과 실제 - 학교에서의 실천적인 활동
지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출판 오름, 1997
- 국제사면위원회, 인권교육의 기법 - 청소년을 위한 인권학습 자료집, 인간
과 복지, 1997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용 : 평화의 시작 -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위
한 교수/학습 지침서, 1995
- 허영식, 민주시민의 교육 방법, 1997, 학문사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인권교육의 기법 - 청소년을 위한 인권학습자료집,
인간복지, 1997
- 이성록, 자원봉사 어드바이저, 미디어숲, 2005
- 주성수, 청소년 자원봉사와 지도, 중앙일보사, 1996
- 2004 한국교육평론 : 소외계층의 교육,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2004

가 작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 제안



안소정 · 정재숙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요 약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사안들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넓게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국민의 의식부터 좁게는 국내거주 외국인이 겪는 부적응 문제까지 그 범위는 실로 넓고 방대하다. 그러나 이들이 겪는 문제를 간단히 종합하자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인종과, 출신국과, 사회 경제적 지위와 성별로 인해 박탈당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그들의 상황적 특성으로 인해 인권에 대한 논의가 더욱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들은 대부분 저개발국의 출신으로 모국의 가정과, 한국에서의 가정을 부양하고 책임지는 노동자인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특성이 복잡하게 얽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혼의 과정에서는 중개업체의 개입으로 남편에 대한 허위정보를 받아 결혼 이후의 삶이 평탄치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으로 인해 매매혼의 성격을 띠어 인간으로서 대우받기 보다는 소유물로 여김을 받는다. 결혼 이후에는 배타적인 사회문화와 언어의 문제, 가정에서의 고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은 언어나 생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하여 사회제도적인 정책수립과, 그에 알맞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제도적인 변화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권교육이다.

인권교육은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학습을 일컫는 말로 인권에 대한 지식,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기술을 교육하게 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며 단기적으로는 인권 취약 층이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서 익힘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찾으며 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인권교육자체가 인권의 필수 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의 인권교육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물론 공교육 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일반시민과, 취약층에 대한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위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명시되어 있는 바이다.

고로 본 연구에서는 인권취약계층, 구체적으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하는 필요성과 실제교육현장에서 사용될 수 매뉴얼을 제작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인권의 가치 이해, 인권에 대한 지식 습득,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술을 익힌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크게 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문에 실린 매뉴얼은 진행자를 위한 것이며 참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워크시트는 연구의 뒤에 첨부되었다. 물론, 이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진행자 교육, 언어로 인한 진행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한계를 지니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고안된 인권교육 교재라는 의의를 지닌다.

목 차

I. 서 론	171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연구방법	171
II.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논의	173
1.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상황의 특성	173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현황	177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현황	179
III.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인권교육	181
1. 인권교육	181
2. 인권교육 대상자로서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182
IV.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교육을 위한 매뉴얼 제안	184
1. 프로그램 구성	184
2. 실제 매뉴얼 제안	189
V. 결 론	225
* 참고자료	227
* 첨부자료	237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 제안

I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지난 2006년 국내 거주 외국인인 약 53000명 통계청(2006), 90일 이상 체류의 국인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1%에 해당한다. 이처럼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넓게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국민의 의식부터 좁게는 국내거주 외국인이 겪는 부적응 문제까지 그 범위는 실로 넓고 방대하다.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중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 등은 34000여 명으로 전체외국인의 6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인종적인 차별, 경제사회적 지위 차별, 언어의 어려움, 법적 안전망의 부재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강제로 포기 당하게 되는 입장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여성의 경우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지닌다. 국제결혼의 84%정도가 여성인데, 이들은 대부분 모국 가정의 경제를 부양함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노동자라는 위치를 가지며(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약 60%가 취업상태), 외국인이며, 여성이라는 복잡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취약지역에 노출되기 쉽다. 고로 이들의 권리증진, 즉 인권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는데,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단계가 바로 인권교육이다. 인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분위기와 환경이 잘 조성될 수 있는 까닭이다. 또한, 인권 취약 계층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인권신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준다.

우리나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 동남아 출신이며 결혼정보

업체의 브로커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러한 입국 경로에서는 남편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전해질 가능성이 크며, 한국어 구사력의 부족으로 이주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편견과 매매혼의 성격을 가지는 결혼으로 인해 한국에서 동일한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아 삶의 질이 오히려 저하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에게 주어지는 정부나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어 교육, 지식 전달 수준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직접 주어지는 인권교육의 경우는 단발성의 캠프이거나 1회 교육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인권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초, 중, 고등학교의 공교육단계와 일부 민간단체에서의 인권교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공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이 부각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한 것이나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일반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인권교육은 공교육이나, 공직인 뿐만 아니라 사회의 시민, 취약계층에게도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고 UN인권 권고방안에 명시되어 있다. 이미 국외에서는 취약계층-특히 여성-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집 제작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언어로 이주여성을 위한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한다.

고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단계인 이주여성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된 기존의 국내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및 사례 분석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매뉴얼 제작에 있어서는 Lister의 3분류법을 기본으로 삼고 국내, 외에서 발표된 인권교육 수업 모형을 비교·연구하여 한국에 사는 이주민여성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보았다. 또한 인권에 대한 의식의 개선 및 행동의 변화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실천 기술들을 이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제결혼 이주자는 여성으로 저개발국가로 분류되는 중국,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등지 출신자로 제한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며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 알아본 뒤, 3장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 4장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실제 매뉴얼을 제안한 뒤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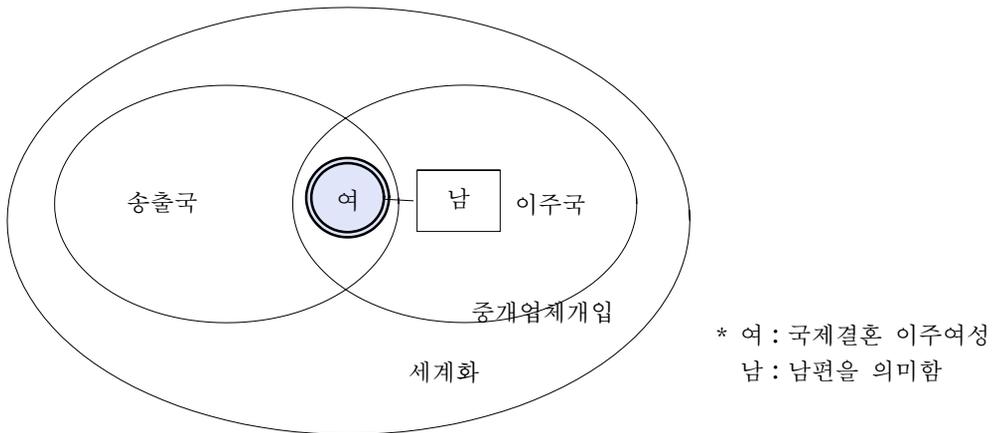
II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하여

1.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상황의 특성

인권은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인간으로서 지니는 천부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권은 시대와 사회적인 환경,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특징을 가지며 상황적인 맥락에서 해석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과거에 인간의 인권이라 생각했던 시민권, 정치권 영역에서 벗어나 제 3의 사회권을 인권의 중요요소로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인권을 확장하고 새로운 인권개념을 창조해나가는 인권운동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늘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2006, 심영희).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논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조류와 환경적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인권 역시, 국제결혼이나 이주화가 두드러지기 전에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최근 외국인의 인권문제가 부각되고 이들의 사회부적응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화두가 되고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복합적인 상황에 있으며 그로 인해 이들의 인권역시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림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위치



[그림-1]에서 나타나듯, 이주여성은 세계화라는 조류위에서 두 국가의 시민자

격을 지니고 있으며, 송출국의 친정과 이주국에서의 시댁의 생계를 부양하며 1), 다른 두 문화를 접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는 아내, 어머니라는 지위를 가지는 복합적인 위치에 서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 외에도 한 인간으로서 여성이 지니는 위치까지 함께 생각해야 이들의 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 이들이 서 있는 위치의 특성을 인권과 관련시켜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세계화와 여성의 이주화

세계화의 개방물결을 타고 전 세계 국가를 움직이는 자본주의는 국가 간의 발전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로 인해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경제격차가 생기고,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생계를 위한 이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저개발국가의 젊은 여성들이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를 ‘여성의 이주화’라고 한다. 여성의 이주화의 중요한 특성이 국제결혼의 증가이다. 해외취업보다 절차가 간소하며 비용이 저렴하여 계층 상승을 꿈꾸는 젊은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세계화로 인한 국가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면서 여성의 이주화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발전격차가 심화되어, 선진국 남성의 저개발지역 여성에 대한 착취가 증가하고 있다. 가난과 실업이 만성화된 나라의 여성은 자신과 가족의 경제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유한 나라의 남성과 결혼을 통해 이주하고 있다²⁾. 저개발국에서의 빈곤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여성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이주화가 저변에 국제결혼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결혼이 단순히 선진국 남성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당국 여성들의 적극적인 선택이 뒷받침 되어 있음을 의미 한다.

3)실제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중국 계열이 약

1) 현재 국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취업률은 60%정도이며, 이는 아동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들이 가정의 생계 부양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설동훈, 2006, 5p 참고)

2) 설동훈(2006)

3) 꾸준히 상승하던 국제결혼 비율은 2007년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보다 3.4천 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6년 “방문취업체”시행 예고로 중국교포 등의 국내 입국과 취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외국인과의 혼인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로 현

60%이며 저개발국으로 분류되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국가의 여성들은 해외취업을 위해 이주하는 것보다는 국제결혼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며 간단하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국제결혼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결혼은 기본적으로 매매혼의 성격⁴⁾을 띠기가 쉽기 때문에 선진국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착취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현재 국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2) 출신국가의 특성 : 저개발국

국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은 대부분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 저개발국이다. 이들 국가의 빈곤과 지속적인 실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주변 일본, 한국, 미국 등으로 끊임없이 이동한다.

이러한 출신국의 경제적인 위치로 인해, 다른 선진국으로 이주 후에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가 쉽다. 이는 현재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 결혼 여성의 피해의 경우가 대부분 저개발국가의 출신임을 떠올려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이주국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적절한 도움이나 해결책을 제안하지 못하는 이들 송출국은 이주국민의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이주여성들은 이주국인 한국에서도 인종적 차별과, 경제 사회적 차등대우를 받음과 동시에 자신의 모국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적 배제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게 된다.

(3) 한국사회 결혼시장 : 국제결혼의 증가

2006년 외국인과의 혼인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보다 3.4천 건 감소하였는데, 이는 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국제결혼이 처음으로 감소하게 된 것이라 의미가 있다. 그러나 통계를 살펴보면 2006년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의 40%가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한국 결혼시장의

재 한국으로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오는 여성들의 목적이 결혼 이외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4) 대부분의 국제결혼은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이때 결혼비용 등을 명목으로 치려야 하는 금액이 존재한다.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부분이다.⁵⁾

이는 한국사회의 고학력화와, 여성의 경제참여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한국 남성들이 국외에서 배우자를 찾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의 결혼시장의 왜곡과 앞서 살펴 본 저개발국가 여성의 이주화와 맞물려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행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교류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며, 결혼 자체를 위한 목적이 강하여 결혼 이후에 이주여성과 남편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 쉬운 기반이 된다. 가정에서 이주여성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재하기 보다는 소유품,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왜곡시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인권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국가의 차이로 인한 언어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 외에도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문화를 이주여성에게 강요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단일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한국의 문화는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 속에 이주여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4) 기타 :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주여성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이다. 이들을 통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94%)이 돈을 지불하였는데, 이 때 남편(50%)이, 또는 외국인 여성(18%)이, 아니면 부부 모두(14%)가 돈을 지불하였다⁶⁾. 이로 인해 여성의 상품화가 심화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 시에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소개비를 받는 등의 불법적 방법을 통해 이윤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주여성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며 이로 인해 많은 여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남편 측에서 지불하는 소개비 명목의 돈으로 인해 이주여성을 일꾼을 부리듯 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는 이주 이후 이주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갈등부분이다. ⁷⁾

5) 통계청(2007)

6) 설동훈(2006), 4p 참고

7) 한국염, 여성이민자의 현황과 과제 : 1~3p 참고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현황

- 가정에서의 인권실태를 중심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들의 인권실태는 어떠한가. 앞서서 환경적 차원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를 다루어 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가정에서의 인권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는 국제결혼 이후 언어, 문화 등의 이질감으로 가정에 고립되듯 지내는 이주여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겪는 인권문제는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사적영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타인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경우가 발생하여 겪는 인권침해 현상들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남편과의 갈등 - 성적 문제, 폭력, 언어적 인격모독 등

표의 결과를 살펴보면 언어문제와 함께 남편과의 관계가 가정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의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간 매매혼의 성격을 띠는 국제결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이후 이주여성들은 지불한 ‘돈’값을 해야만 하는 존재로 여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집의 일꾼 등으로 대우를 받으며 가정에서 동등한 입장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존재로 여감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수많은 인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편과의 불화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 성적 문제, 학대, 집안예의 고립 등이 있다. 언어상의 어려움과 한국 내에서 가정은 사적 영역이며 이웃에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해서 가정에서 여성들이 인권침해를 수시로 당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수면으로 드러나는 일은 매우 적다.

〈표 1〉 가정생활에서 힘들다고 여기는 문제

(단위 : 명,%)

자녀 양육	가사 노동	남편과의 관계	언어 문제	인종 차별	시댁과 관계	문화 적응	경제적 문제	기타	응답자	무응답	전체
6 (15.4)	1 (2.6)	8 (20.5)	8 (20.5)	2 (5.1)	3 (7.7)	4 (10.3)	3 (7.7)	4 (10.3)	39 (100)	168	207

출처 양정화(2005)

〈표 2〉 폭언, 폭행의 유형

(단위 : 명,%)

신체적 폭력(구타)	정신적 폭력(폭언, 멸시)	경제적학대	성적학대	응답자	무응답	전체
7(36.8)	5(26.3)	1(5.3)	6(31.6)	19(100)	188	207

출처 양정화(2005)

8) 또한 이들이 남편에게 당하는 폭력의 종류는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가정에서 신체의 안전이라는 기초적인 인권 역시 잘 보호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 자녀양육 문제

국제결혼여성의 인권침해 연장선상에는 그녀들의 자녀들 또한 포함되어있다. 그들은 혼혈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적인 차이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많은 차별을 받는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나 주변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고 어떤 곳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방치하는 여성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여성들의 인권보장은 그들의 자녀의 인권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이다. 그 외에도 자녀양육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힘들어도 이혼할 수 없다고 응답하는 여성이 많으며, 이주여성들은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대부분 양육권을 받을 수 없어 앞서 살펴본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참고 사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3〉 이혼할 수 없는 이유

(단위 : 명,%)

모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2 (10.5)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니까	1 (5.3)
자식을 빼앗길까봐	8 (42.1)
가족이나 친척의 만류로	1 (5.3)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희망 때문	2 (10.5)

8) 남편의 폭력이 여성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사고 외에도, 국제결혼을 하는 가정의 남성은 주로 경제력이 부족하고 장년층인 경우가 많아 아내와 나이차이가 나면서 의처증적인 태도-폭력이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구타하는 남편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어서	1 (5.3)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서	2 (10.5)
기타	2 (10.5)
응답자	19(100.0)
무응답	188
전체	207

출처 : 양정화(2005)

또한, 이주여성의 아동의 경우 언어 구사력이 부족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발달이 늦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학업수준 저하 및 집단 따돌림 등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정당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다름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알려줌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울 수 있도록 어머니의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 또한 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하다.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현황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라는 사회현상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과 맞물려 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이들의 체류 및 이혼에 관련해서도 기존 한국의 남성에게 유리한 제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인권을 보장받기 쉽지 않다.⁹⁾

서비스 및 교육의 측면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결혼 여성들이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남편과의 갈등과 언어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결혼 이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방문교육 서비스 및 각종 민간단체(지역대학 및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그 외에도 문화특강과 같이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적응하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주여성 긴급전화 및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개발한 생활법률정보매뉴얼,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생활매뉴얼 등이 개발되어 있다.

9) 국가인권위원회(2004),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소라미(2004), 국제결혼 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 및 과제 참조

〈표 4〉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단위 : %)

항 목	전체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생계비 지원	10.2	89.8	3.9	96.1	16.7	83.3
의료비 지원	11.6	88.4	7.3	92.7	16.2	83.8
물품 지원(식료품, 의류 등)	7.2	92.8	2.9	97.1	11.8	88.2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등)	5.9	94.1	3.6	96.4	8.4	91.6
식사(반찬) 배달 서비스	16.3	83.7	9.9	90.1	23.3	76.7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12.0	88.0	4.5	95.2	19.7	80.3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12.9	87.1	7.2	92.8	18.8	81.2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등)	9.7	90.3	8.1	91.9	11.5	88.5
약물(알코올)상담	4.4	95.6	1.6	98.4	7.4	92.6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7.5	92.5	6.6	93.4	8.4	91.6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교육	8.6	91.4	2.4	97.6	15.0	85.0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8.5	91.5	3.0	97.0	14.3	85.7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	22.4	77.6	7.6	92.4	36.6	63.4

(2005)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자료집

그 외에도 문화특강과 같이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적응하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주여성 긴급전화 및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개발한 생활 법률정보매뉴얼,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생활매뉴얼 등이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매뉴얼은 일상생활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직접적인 인권교육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자료집이 공식적으로 이주여성들에게 배포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처럼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책은 주로 서비스와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 결혼 이민자의 일차적인 과제이므로 이들을 위한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이 필수적인 것인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습득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또한 명백한 것이다. 그로 인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서비스는 이미 활발히 진행되어 그 규모 또한 확장되고 있는 실태이다.

그러나 언어의 습득이 이들의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는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여성의 보다 질 높은 삶을 위해서

는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인권교육이 수반된 형태의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의식의 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닌 인권교육의 경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Ⅲ.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교육

1. 인권교육

(1) 인권교육이란

‘유엔인권교육 10년 선언(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DHRE(1995~2004))’은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권교육이란 아래의 다섯 가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둔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이다.” 즉, 첫째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둘째,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완전한 발전 추구, 셋째, 모든 국가, 선주민, 인종·국가·민족·종교 및 언어집단 간의 이해, 관용, 성의 평등 및 우호관계의 증진, 넷째,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 다섯째,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활동의 증진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 가치, 기술을 기르고 증진시키는 모든 학습과 과정을 의미한다. 즉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의 가치를 깨닫고 이에 대한 태도를 길러내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실천적 개념의 교육을 의미한다. 기존의 사회나 도덕교육과 다른 점이 여기에 존재한다. 인권에 대한 지식이 인권에 대한 보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실천적인 학습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실제 생활로 연장되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권교육은 지식적 강의 과정과 함께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경험적 과정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가지는 권리에 대한 이해와 체득은 사회의 갈등 상황에서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사회의 연대의식을 증

진시킨다. 또한 인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성숙을 필요로 하며,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이는 한 국가가 고양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며, 복지국가를 표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결국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감수성의 증진으로, 인권이 인간으로서 지니는 당연한 권리임을 모두가 재인식하도록 돕고, 모두가 자신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에 각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 인권교육의 대상자로서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1) 인권교육의 대상자

그렇다면 현재 국제결혼 이민자를 위한 인권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인권교육의 대상¹⁰⁾은 크게 취약집단, 특수지위, 기관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취약집단) 여성, 아동, 노인, 소수자, 난민, 선주민, 극빈자, HIV보균자/에이즈 환자 등

(특수지위) 경찰, 교도관, 변호사, 판사, 교사와 교과과정 개발자, 군대, 국제공무원, 개발담당공무원, 평화유지단, 민간단체, 언론, 행정 공무원, 국회의원 등

(기 관) 교육기관, 교육자, 민간단체, 노동자와 피고용인 조직, 노동조합, 대중매체, 종교단체, 지역사회조직, 가족, 독립적인 정보화센터, 자원센터, 훈련센터

현재 국내의 인권교육은 대부분 1회성 행사로서 주로 특수지위 대상자 및 기관, 즉 공교육과정과 국가기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각 기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도 자기개발, 교양의 성격을 띠는 것이 많아서 인권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전반적인 인권소양을 함양하는 데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확충될 것을 기대하는

10) 유엔총회문서,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http : //www.sarangbang.or.kr/kr/edu/eduis.html](http://www.sarangbang.or.kr/kr/edu/eduis.html)

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증대되면 인권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문화적인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상당수의 인권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인권교육에서 언급되어야 할 필수적인 대상은 바로 취약계층이다.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민간단체에 의해 캠프나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는 단발적인 행사로 기획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교육하기가 쉽지 않다. 그 외에도 인권에 대한 교육은 물론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자체의 역사가 짧은 한계가 있고, 취약계층의 경우 생계와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인권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사치의 일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인권교육의 특성상 당장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취약계층이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여도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의 직접적 장면에서 서있는 당사자로서 취약계층이 자신의 권리를 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교육의 장애요인- 인력 및 교재의 부족

이주민여성의 경우 언어의 어려움과 타지에서의 생활로 인해 인권교육보다는 언어교육, 그 외 생활에 필요한 교육들을 선호하고 있으나 그러한 교육들과 함께 반드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들을 위해 개발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교재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된 진행자가 부족한 현실로 인해 실제 교육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11)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교육 보다 앞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기관 및 공교육 내의 실태를 통해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는 문제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연구에서 국가기관, 시민단체, 공교육 내 인권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이 교재와 인적 자원의 부족이라는¹²⁾ 결과가 나타났다.

11) 국가인권교육 현황의 조사에서 면접단체는 인권교육의 어려움에 인력과 교재의 부족을 가장 큰 항목으로 꼽았다. 국가인권위(2003) 27-28p

12) 국가인권위원회(2003) 인권교육실태와 발전방향, 24, 69, 103p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인권교육 교재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초·중·고등 학생용 인권교재와,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시리즈, 인권사랑방에서 출판한 인권교육 길잡이, 깨어나 일어나 : 아이들이 쓴 인권이야기(stand up your rights)와 같은 교재가 있지만 이들은 대개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소양교육이며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 시행되는 인권교육의 교재가 아니다. 물론 이주여성 인권센터에서 발간한 생활안내책자도 존재하나 이 또한 인권교육을 위한 직접적인 교재는 아니다. 그러나 국외의 경우 온라인 인권도서관¹³⁾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매뉴얼을 받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인권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를 활성화 하여 교재의 개발과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인권교육의 인식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인권교재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교재의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점차 증가하는 국제결혼의 추이에 알맞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제 교육 매뉴얼을 제안하고자 한다.

IV.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교육을 위한 매뉴얼 제안

1. 프로그램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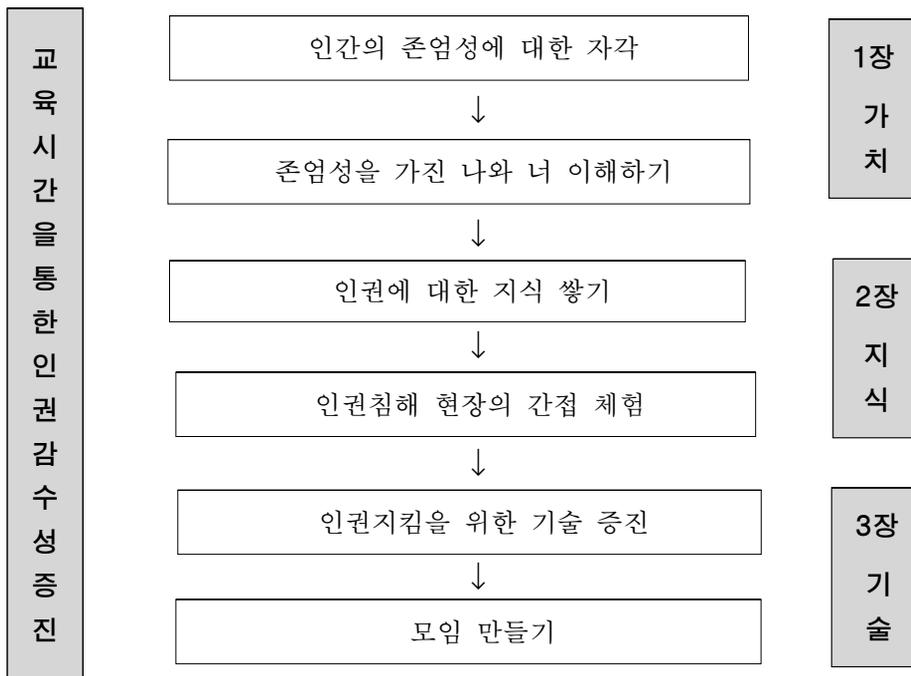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권교육 매뉴얼은 Lister의 3분류법을 기본적인 틀로 사용하여 인권에 대한 지식, 인권의 가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술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 더하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권교육 수업모형과 학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인권모형을 참고하였고 그 내용은 이러하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인권을 모르는 초보자에게 권리와 인권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자각하기 → 인권침해 상황과 조건을 파악하고 그것을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하기 → 인권변호를 위한 변론 보조능력을 키우기 → 국제적 유대감 갖기의 순서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3) www.hrea.org <Human Rights Education Library>

고 제시하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인권위원회에서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사고하기 → 인권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 인권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인간의 권리를 서로 연대하며 지켜내기 → 연대하는 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모임 들기의 순서로 모형을 제시하여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국내 연구에 의한 인권 딜레마 토론을 통한 인권교육 수업모형(문미희,2005)에서는 인지주의 가정을 기본으로 삼아 개인의 사고능력 발달이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실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인지능력발달이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상적인 연구이기는 하지만 인권감수성을 높여 인권의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위성향 중심의 인권교육 수업모형(박상준 ,2003))에서는 인권의 중요성을 기르기 위해 체험과 실천을 중시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네 가지 인권교육 수업모형을 참고하여 사람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상담과 사회복지의 실천기술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구성단계로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앞서 제시한 수업모형 모델을 바탕으로 매뉴얼 제안 시 내용면에 있어서 국내외 인권교육 교재들과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매뉴얼을 참고하였으며 신문기사나, 사례를 통해 직접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피교육자가 한국에 사는 이주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이주여성 인권 센터’에서 발간한 ‘이주여성생활법률정보 매뉴얼’을 사용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적, 상담적 요소들을 첨가하여 더욱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이주여성이 언어상의 문제로 인해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교육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림과 영상의 활용 및 체험과 그룹활동, 사례분석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1장은 인권의 가치를 알고 인권에 대한 바른 태도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순서가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인권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천부적이 권리임을 인식하기 전에, 인간이 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과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이해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교육의 시작과 함께 피교육자들 간의 친근감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장은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인권에 대한 지식을 다룬 장이다. 세계적으로 인권보호의 근거가 되는 세계인권선언을 인권침해 사례와 엮어서 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신들이 가진 권리가 무엇이며 권리를 침해 받을 때에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장은 1,2장의 배움을 토대로 실제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시연을 통해 익혀볼 수 있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교육자들과 그룹구성원들을 통해 인권존중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인권의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교육자를 위한 매뉴얼

인권교육을 위한 매뉴얼은 교육자를 위한 매뉴얼과 피교육자를 위한 워크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첨부자료를 첨부하여 프로그램 진행시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

구들을 제작해 보았다. 이 글에서는 피교육자가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받기 위해서 교육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교육자에게 우리가 의도한 매뉴얼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진행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활동 지침을 함께 실어두었다. 첨부된 워크시트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나 그림으로 배우고 느낀 바를 표현하도록 하되, 사용에 있어서는 교육시간과 상황 교육자의 역량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권교육이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 유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원칙은 되도록 준수하되 교육자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권교육 매뉴얼은 Lister의 3분류법에 따라 인권에 대한 지식, 인권의 가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술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순서적인 차이는 존재하며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차이는 존재하지만 결국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초로 인권의 가치를 인식하며 그러한 인권의 개념을 자신의 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 ■

■ 소개의 글 & 매뉴얼 사용방안

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은 지난 2005년에는 한해 결혼하는 부부의 16%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양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근래의 국제결혼은 90년대 이전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률이 높았던 것과 달리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비율이 확연히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06년 행정자치부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자의 약 85%정도가 여성이라고 한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이주하는 여성의 수는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지 우리는 되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국의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이주민인 동시에 여성이며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여성의 출신국이 주로 개발도상국임을 떠올려 볼 때에 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다양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자신의 인종과 성별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마땅한 권리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언어,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편견, 국제결혼에 대한 다양한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비단 그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폭력, 학대와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를 온 몸으로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이주여성의 경우 언어의 문제와 위에 언급한 문제로 가정에 고립될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실제적인 피해의 정도는 더 클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드러난 것이 적다고 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겪는 인권문제를 함구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문제 완화와 장기적으로는 인권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요즘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 사회의 곳곳에서 고민하고 논의하며 제안하는 등의 정책 입안 혹은 실제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움직임 등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들 개인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기에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침해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아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 반드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유에 연유하여 매뉴얼이 제작되었다.

이 매뉴얼은 인권에 대한 지식, 가치,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을 위한 기술 익히기 장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진행자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마지막 장에는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워크시트를 첨부하였다. 피교육자가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쉽게, 상세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교육자에게 우리가 의도한 매뉴얼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다만, 인권교육이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 유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원칙은 되도록 준수하되 교육자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뒤에 첨부하는 피교육자를 위한 워크시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가감할 수 있다.

교육자가 준수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진행되는 동안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 ‘인권’에 대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권고하는 원칙은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5-6명의 그룹을 형성한 뒤 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주입식의 교육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삶을 통해 인권에 대해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룹 원과 이야기 하는 과정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그룹의 형성은 교육자가 임의로 할 수 있으나 되도록 언어의 장애가 활동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같은 국적이거나, 같은 언어 사용자들끼리 그룹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를 권유한다.

세 번째 원칙은, 그룹 내에서 오가는 이야기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며 이들이 하는 이야기로 인해 도리어 가정에서 다시 폭행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는 그룹 구성원들에게도 유의시켜야 한다.

네 번째는 교육에 참가하는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참여시간 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언어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림카드나 놀이를 통해 체득할 수 있기를 적극 권한다.

■ 이 매뉴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교육 매뉴얼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인권의 가치를 알기 위한 선과정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익히게 될 것이며 2장은 인권에 대한 지식

과,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3장을 인권에 대한 가치와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익힐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각 장은 다시 세분화 되어있다. 이는 점진적으로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함이며 주로 그룹 활동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아래의 표는 각 매뉴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틀이다. 각 장의 제목과 간단한 설명이 적혀있다. 각 장을 소개하는 글은 되도록 비유를 사용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으며, 교육자[진행자]를 위한 프로그램 목표와, 활동에 대한 안내를 첨부하였다.

■ 1장 인권 매뉴얼 ->[장의 제목]
 1-1 인권이란 무엇인가 ->[소제목]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활동에 대한 도입]

활동하기 exercise 1-1	
진	목표 Objective :
행	진행자 활동안내 Guide Line :
자	[이번 활동을 위한 활동안내]
안	
내	활동도구 : [준비물]

■ 활동 2-2 세계인권선언

(1) 가정 [영역]	
사례1) [해당사례 설명]	
세계인권선언의 보장조항	[사례에 해당하는 조항]
사례대처교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목 차 ■

* 소개의 글

* 목차

1장 인간의 존엄성 [인권의 가치]	197
1-1 동일한 출발선 위에서	197
1-2 나의 42.195km	198
1-3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	199
1-4 나=너, 님은 점 찾기	201
1-5 우리교실 규칙만들기	202
2장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에 대한 지식]	203
2-1 인권랜드 탐험	203
2-2 세계인권선언 알아보기	204
2-3 상황 속으로	216
2-4 상처 입은 흙 인형	217
2-5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	219
3장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술 익히기 [인권지킴을 위한 기술]	221
3-1 Say No!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221
3-2 함께 모이기	223
3-3 다양한 정보들을 사용하기	224
*워크시트 : 별첨	230



1 장 인간의 존엄성

1-1 동일한 출발선 위에서

인간은 모두 어머니의 뱃속에서 열 달간 잉태되어 보호받으며 지내다가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무수한 경쟁에서 이긴 정자가 고귀한 난자를 만나 생겨난 작은 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이 열 달간 태 속에서 자라가는 과정은 생겨난 것만큼이나 놀랍기만 합니다. 눈과 입이 형성되어지고 작은 발톱과 손톱도 형성되고 제 기능을 다하는 오장육부도 생겨납니다. 이는 어떤 사회,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에 상관없이 너와 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불변의 진리이죠. 이는 인간이 소중하게 여김을 받으며 자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 줍니다. 인간은 피부색, 국적, 교육정도에 상관없이 존재함 자체로 귀하고 생명은 존중 받아 마땅한 것이지요.

활동하기 exercise 1-1 <i>From the Beginning</i>	
진 행 자 안 내	목표 Objective : 인간이 천부적으로 가진 권리를 알기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는다. 생명 탄생에 관한 기사, 영상 등을 통해 인간이 가진 생명의 귀중함을 느낄 수 있다.
	진행자 활동안내 Guide Line : 1. 생명탄생 영상시청 : 인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시청각자료를 통해 본다. 2. 인간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생명의 신비함을 깨닫는다. 3. 그룹 원들끼리 ‘워크시트’를 통한 활동 및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소요시간 : 50분]
	활동도구 : 생명탄생에 관한 영상, 워크시트



1-2 나의 42.195km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같은 거리를 뛰지만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뛰는 것이 아니듯 우리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고유한 가치관, 생각,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페이스를 지킬 때에 훌륭한 경기를 치러낼 수 있습니다.

아직 인생을 완주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신은 인생이라는 마라톤 코스 위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힘들었던 구간은 언제인지, 길가에서 물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어서 달리기 쉬웠던 곳은 어디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돌아봅시다.

활동하기exercise 1-2 *Finding Unique Myself*

진행자 안내	<p>목표 Objective :</p> <p>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존엄한 인간이며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안다.</p>
	<p>진행자 활동안내 Guide Line :</p> <p>1. 자신의 인생그래프를 그린 뒤 그룹 구성원에게 설명한다. : 힘든 과정을 이겨낸 구성원이 있다면 나머지 성원이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도록 유도</p> <p>2. 현재의 삶을 주관적인 점수로 표현하도록 한다. : 10점 만점에 현재 생활은 몇 점인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 본다.</p> <p>3. 워크시트에 자신의 장단점을 표현하고 그룹 원끼리 발표하도록 한다. : 발표 시, 그룹 구성원들이 서로의 장점을 찾아서 말해주도록 유도한다. [소요시간 : 40분]</p>
	<p>활동도구 : 인생그래프 시트[첨부자료], 워크시트</p>



1-3 함께 달리는 사람들

2인 3각 경기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선 뒤 가운데 두 발을 묶어서 뛰어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금세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내 옆에는 함께 길을 동행하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내 옆에 있는 이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 가면 언젠가는 결승라인을 밟게 될 것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닌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달릴 수 있습니다.

함께 발을 묶어 뛰고 있는 파트너들이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서로 국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함께 라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이들을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인가요?

활동하기 exercise 1-3 Finding Precious Your friends!

진 행 자 안 내	<p>목표 Objective :</p> <p>참가자들과 서로 하나가 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룹 구성원들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다.</p>
	<p>진행자 활동안내 Guide Line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인3각 경기에 대한 소개로 타인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알린다. 참가자들 전원이 서로를 알 수 있도록 진행자의 진행 하에 간단한 소개를 한다. 참가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관계증진을 위한 간단한 게임을 진행한다. [게임예시 참고] (그룹활동) Ice-break time : : Ice-break시트의 질문들을 통해 그룹 앞으로 함께 교육받을 그룹원들에 대해 알아가도록 한다. 이때, ice break 시트를 참조하되 자유로운 질문은 가능하며, 언어소통이 어려운 경우 그룹 내에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유도하라.
	<p>* 게임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가 달라졌어요- 함께(5분)

⇒ 방법

- ① 모르는 사람과 짝을 짓게 한다.
 - ② 서로서로 파트너의 외모 중에서 번갈아 다섯 가지를 바꿔준다(하나는 좀 웃기게)
 - ③ 다섯 가지의 변신이 완료되면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
- ⇒ 이 ice break 게임은 낯선 사람과의 관계와 프로그램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준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관찰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게임이다.

2. 참말을 찾아라- 4-6명 그룹활동/(10-15분)

⇒ 방법

- ①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4가지 정보를 종이 적어두는데 한 가지는 거짓말이어야 한다.
 - ② 완성하면 각 사람은 차례로 그들의 목록을 낭독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짓말이 무엇인지 추측하여 적어 둔다.
 - ③ 모두가 읽기를 마치면, 그들의 목록을 다시 읽고 거짓말을 밝혀낸다.
- ⇒ 이 게임은 타인에 대해 일반적인 부분에서 매우 빨리 알아가도록 해준다. 참과 거짓말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게임이다.

3. 당신은 어디에?- 4~15명, 그룹별 진행 (25분)

⇒ 방법

- ① 각 그룹에 단어카드를 5~10장을 나누어 준 뒤 다양한 아이템을 적도록 한다. 색깔, 옷, 음식, 영화 이름 등 자유롭게 적도록 한다(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 ② 작성된 카드를 모두 거둬들이고 진행자가 각 그룹에서 카드를 몇 장씩 뽑는다. 뽑아낸 카드를 연결해 문장을 만들고 해당되는 사람을 즉석에서 찾게 한다.
예 : 뽑은 카드가 빨간색, 스웨터, --영화, 일 경우 빨간색 스웨터를 입고 --영화를 본 사람을 찾으세요! 식으로 외치는 것이다.
- ⇒ 다소 번잡해질 수 있는 게임이지만, 구성원들이 해당 사람을 찾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며 이동하면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게임이다.

활동도구 : Ice-break 질문지[첨부자료], 워크시트



1-4 나=너, 님은 점 찾기

우리는 각기 다른 특징과 자신만이 가진 고유함이 있음을 앞의 순서들을 통해서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다른 우리들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 코, 입의 개수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 했던 기억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슬픔도 기쁨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이기도 하네요.

활동하기exercise 1-4 My issue = Your issue

진행자 안내	<p>목표 Objective : 서로의 공통점을 찾음으로써 동질감을 형성하며 신뢰감을 느낄 수 있다. 인권교육 이전에 참가자들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돕는다.</p>
	<p>진행자 활동안내 Guide Line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가자들 전원이 둥근 원을 만들어 서도록 한다. : 되도록 크게 만들되 구성원과 거리를 지나치게 멀게 해서는 안 된다. 2. 지도자가 외치는 문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한 걸음씩 원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 (ex)자신이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세요. 3. 이 상태에서 지도자는 다른 문장들을 2~4개 정도 만들어 이어 진행한다. : (ex)‘이 분들 중 지금 사시는 곳이 마포구인 분들만 한 걸음 원 안으로 더 들어오세요. ‘그렇다면, 자신이 결혼한 지 3년 이상 된 분들...’ (이같이 서로의 공통성을 찾아가는 게임이다) 4. 초반에는 진행자가 이끌되 참가자들이 익숙해지면 참가자들로 하여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p>TIP>서로의 공통성을 찾아냄으로 더 친근감을 가지도록 하는 효과도 있지만, 인권에 대한 교육 이전에 참가자들이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자신이 느끼는 문제가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바로 너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한도에서 이러한 문장을 던져줄 필요가 있다.</p>
	<p>활동도구 : 없음</p>



1-5 우리교실 규칙 만들기

앞의 활동들을 통해 나와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습니까?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함께 해나갈 사람들인 만큼 더 많은 시간과 관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서로를 위한 약속을 정해봅시다. 서로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약속들이 필요한지 이야기 해보고 교실 전체와 나누어 봅시다.

활동하기 exercise 1-5 <i>Rule for each other</i>	
진 행 자 안 내	<p>목표 Objective :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서로를 위한 약속을 정하여 지킬 수 있다.</p>
	<p>진행자 활동안내 Guide Line : : 인권교육을 받는 동안 참가자들의 실천이 따르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한다.</p> <p>1. 그룹 내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끝나면 서로를 존중해 주기 위해 어떤 약속들이 필요한지 종이에 적도록 한다. : (ex)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는다.</p> <p>2. 그룹의 대표들이 나와서 발표 한 뒤,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정한 약속을 정리해 색전지 위해 적는다.</p> <p>TIP> 참가자들이 정한 약속을 정리한 시트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교실에 부착한다.</p> <p>[소요시간 : 40분]</p>
	<p>활동도구 : A4(그룹별 1장), 색전지</p>



2 장 인권에 대한 이해[인권에 대한 지식]

2-1 인권랜드 탐험

놀이공원에 가면 자유이용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이용권을 구입하게 되면, 그 곳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놀이기구를 많이 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가 자유이용권임을 알지 못할 때 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회에 일종의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인간으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바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여기에 새겨진 항목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공원이 망가지거나, 때때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유이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외면해버리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권리들은 없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알아야 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 불리는 자유이용권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다.

활동하기 exercise 2-1 Welcome to 'Human rights' Land

진 행 자 안 내	<p>목표 Objective :</p> <p>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자각.</p>
	<p>진행자 안내 Guide Line :</p> <p>1. 인권랜드 안의 놀이기구 알아보기 :</p> <p>① 그룹별로 종이카드(카드에 있는 항목 모두가 인권이다.)를 나누어 준다.</p> <p>② 그룹별로 시간을 주어 카드에 쓰인 것들 중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종이카드를 선택하도록 한다.</p> <p>③ 진행자는 각 그룹의 선택을 발표하도록 하고, 카드항목의 전부가 우리의 인권임을 말해준다.</p> <p>2. 인권랜드 ‘자유이용권 팔찌’ 만들기 : 첨부된 종이를 잘라 ‘인권랜드’ 자유이용권을 만들게 한다. 이것은 놀이동산의 자유이용권과 같은 원리로 구성된 것으로 ‘인권’을 더 재미있고 가깝게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p> <p>[소요시간 : 40분]</p>
	<p>활동도구 : 인권카드(첨부자료), 인권팔찌(첨부자료), 가위(테이블 별 3~4개)</p>



2-2 세계인권선언 알아보기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천부인권’ 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늘이 부여한 권리로 다른 인간이 침해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과거에서부터 무수한 노력을 통해 인권을 확립하고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계인권선언’ 발표입니다. 인권은 한 국가, 사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보호되어야 하며 각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선언문입니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각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책을 입안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선언문은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들도 찾아보고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세계적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에 수록된 우리의 권리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시다.

활동하기 exercise 2-2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진행자 안내	<p>목표 Objective :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보장되어 있는 개개인의 인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사용할 수 있다.</p>
	<p>진행자 안내 Guide Line : 1. 사례를 통해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상황을 살펴본다. : (1) 가정 (2) 직장 (3) 아동의양육 (4) 기타 상황 으로 구성되어 있다. TIP> 사례를 보여줄 때, 이 진행자의 역량에 따라 스킷 대본을 마련하여 참여자가 ‘role play’를 하거나 짧은 영상을 이용한다. 2. 인권침해부분에 대해 세계인권선언에서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방법을 알려준다. : 필요하다면 워크시트에 필요한 정보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소요시간 : 사례 당 30분(30*10=300분)-사례는 session 마다 적절하게 나누어서 진행.]</p>
	<p>활동도구 : 워크시트</p>

■ 활동 2-2 세계인권선언 알아보기

(1) 가정에서	
<p>사례1) 모욕을 당할 때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날 며느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창피한거죠.” (27세 여성) “남편은 내 머리를 보고 촌스럽다면서 ○○ 사람 같다고 말해요.” (32세 여성) [생활법률정보매뉴얼]</p>	
<p>활동안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그룹별로 ‘세계인권선언’ 조항들을 나누어준다. ② 침해 받은 사례의 주인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도록 한다. ③ 의견이 모아진 뒤 전체 발표를 통해 각 그룹이 찾아본 조항을 비교해보고, 추가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진행자가 제시하여 준다. 	
<p>세계인권선언의 인권보장 조항</p>	<p>제 5조 :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p>
<p>사례 대처교육</p>	<p>교육예시 :</p> <p>“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느낄 때,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호나 습관, 문화가 한국문화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의 선호나 문화는 그냥 차이일 뿐입니다. 경제적 차이나 인종적 차이, 민족적 차이가 문화적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집가족들이나 남편이 자신을 무시할 때, 그 느낌을 직접 말하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속상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불쾌해요.’ 등 자신의 느낌을 말하세요. 그리고 ‘이건 오해인 것 같아요.’, ‘그건 이리이러한 일로 그렇게 된 거예요.’라고 설명도 해보세요. 비록 처음에는 가족들이 쉽게 수긍하지 못한다 해도 자신에 대해서 계속 표현한다면 점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커질 거예요.” [생활법률정보매뉴얼]</p>
<p>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p>	<p>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범죄로 취급되어 처벌될 수 있다. ⇨ 경찰에 신고, 국번 없이 112 ⇨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 : 욕설이 모욕적인 발언 녹음 혹은 들은 사람들의 인적 사항 파악</p>

(1) 가정에서	
<p>사례2) 매매 “남편은 결혼하기 위해 중매업체에게 큰돈을 지불했기에,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나는 일을 많이 해야 하고, 돈은 도로 갚아야 한다고 말해요.” (23세 여성) [생활정보매뉴얼 중]</p>	
세계인권선언의 인권보장 조항	<p>제 4조 :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p>
사례 대처교육	<p>교육예시 :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저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라고요. 이것 역시 처음에는 가족들이 쉽게 수긍하지 못한다 해도 자신에 대해서 계속 표현하고 가족들에게 자각시켜 준다면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생활법률정보 매뉴얼]</p>
도움 받기	<p>이런 발언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모욕을 당할 때와 같이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에 신고 112 ⇨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 : 육설이나 모욕적인 발언 녹음 혹은 들은 사람들의 인적 사항 파악을 통한 증인 확보

(1) 가정에서	
<p>사례3) 술과 폭력 “남편은 정기적으로 술을 마셨고, 그럴 때면 때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편의 폭력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듯 했다.” (33세 여성) [생활정보매뉴얼]</p>	
세계인권선언의 인권보장 조항	<p>제 3조 :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 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 5조 :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p>
사례 대처	교육예시 :

교육	<p>“한국사회의 술 문화는 유별하며 술을 지나치게 먹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남편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술의 힘을 입어 폭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술과 폭력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혹, 남편이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세요.</p> <p>‘술 때문이겠지’ 라고 남편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남편의 폭력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p> <p>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하여 관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개인적인 일이거나 사사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힘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범죄행위이며, 도덕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일입니다. 폭력적인 태도와 행동을 비폭력적인 대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폭력도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사랑의 매라든지, 교육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핑계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타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정보 매뉴얼]</p> <p>TIP> 폭력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p> <p>① 일단 피하라. : 남편이나 시집식구들이 구타하면, 우선, 안전이 중요합니다. 폭력을 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세요.</p> <p>② 도움을 요청하라. : 국번 없이 112! 경찰에 신고하고, 국번 없이 1577-1366! 여성단체에 전화하세요. 친구나 이웃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습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③ 직접적 행동으로 저항한다. : 우선 ‘때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구타가 계속되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구타시, 맞은 정도를 증거자료로 남기세요. 사진을 찍어도 좋고, 병원진단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언어적 폭력이 있으면 녹음도 하세요. 이러한 행위가 가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자신에게는 자신감이 됩니다.</p> <p>④ 대처방법을 미리 생각한다. : 위의 대응방법들은 갑자기 실행되지 않습니다. 폭력이 발생하면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폭력적인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평소에 행동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하여, 필요한 돈과 여권은 평소에 챙겨둡시다. 이 경우 갈 곳이 없다고 집 밖에서 그대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한 경찰(112)이나 가정 폭력상담소(1577-1366) 및 관련습터 등에 연락을 해서 보호를 요청합니다. [생활정보법률 매뉴얼]</p>
----	--

<p>도움 받기</p>	<p>⇒ 경찰에 신고 112 / 가정폭력상담소 1577-1366</p> <p>⇒ 신고 시 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 10px 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text-align: center;">고 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text-align: center;">가해자 격리, 상담소 위탁</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text-align: center;">검사, 판사 심사</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 10px 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text-align: center;">처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text-align: center;">피해자의 처벌여부결정</div> </div> <p>⇒ 가정폭력사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자료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병원진단서, 병원진료기록 : 멍이 들거나 피가 나는 등 외관상 명백한 상처가 있을 경우는 물론이고 상처가 있지 않더라도 아픈 곳이 있으면 일단 병원에 가서 다치거나 아프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를 받아두세요. 멍이 든 곳이나 상처가 생기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폭행현장 주변 목격자를 확보하여 두는 것도 좋습니다. ② 몸에 생긴 상처나 부서진 가구의 사진 ③ 폭언이나 폭행현장이 녹음 또는 녹화된 자료 ④ 목격자의 진술, 112신고 확인 ⑤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자료 등
--------------	---

(1) 가 정 에 서

사례4) 외부세계와의 단절, 고립
 이주여성인권연대에 상담을 해 온 한 이주여성은 같은 국적의 친구들과의 접촉을 차단당한 경험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시어머니는 친구들이 전화를 할 때면 내가 옆에 있는데도 화장실에 있다고 하며 바꿔주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다. “어머니 나 답답해요. 나 친구가 필요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친구들이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여보, 내 방은 화장실이 아니야. 왜 계속 화장실에 있다고 해. 내 마음 많이 답답해, 나 친구가 필요해.” (2006.9/6) [www.ildaro.com]

세계인권선언의 인권 보장 조항

제 12조 :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례 대처교육

교육예시
 “이 경우는 구체적인 시안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즉,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문을 밖에서 잠그는 등 '감금'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범죄로 취급되어 처벌된다. 그러나 집 주변에 장을 보러 간다든가 가벼운 산책을 다니는 것 정도는 허용하지만 밖에 나가 친구나 친척을 만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범죄에 해당할지 여부가 다소 분명치 않습니다. 이 때, 위 금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남편이나 시부모가 폭언, 폭행을 행사하면 112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생활정보메뉴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전문상담원을 통해 자국어로 상담 받을 수 있다.
- ⇒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정보가 필요할 때, 생활상담
- ⇒ 상담 후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소, 쉼터, 변호사, 병원, 여성단체, 복지단체 등과 연결 가능

(1) 가정에서

사례5) 강제적 성관계

“남편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그럴 때면 내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때렸다. 특히 술에 취했을 때는 더 심했다. 한번은 생리 중이었기에 섹스를 거부했지만, 남편은 강제로 했다. 강제로 여러 가지 자세를 요구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했다.”(21세 여성)
 [생활정보매뉴얼]

세계인권선언의 인권 보장 조항	제 3조 :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 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 5조 :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	---

사례 대처 교육	교육예시 : “결혼이란 부부가 성관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편이 성관계를 원하면 당연히 응해주는 것이 아내의 의무라고 오인합니다. 아내는 원하지 않아도 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도 원하지 않는 경우, 아내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남편이 성관계를 강제로 한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부부강간에 대한 법을 공식적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최근 별거한 부부 사이에 일어난 강제적인 성관계를 법원이 강간이라고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관계에서도 강간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포르노적 상상력을 갖습니다. 여성들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남성적으로 강하게 나가면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남성들의 착각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남성 멋대로 생각하지 않도록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남성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성도 성적욕망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성적 쾌락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여성의 행복추구권입니다. 그러니 원하지 않을 때는, 분명하게 거절하세요. “노”. 자신이 거절한다고 해서 남편에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 원하는 자유와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생활정보 매뉴얼]
----------	--

도움 받기	▷ 상황 발생시 전화로 117, 112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현장 출동 한다.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에서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찰서 민원실에서 여성 경찰관의 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 고소장을 제출 가능 TIP>남편이 강간을 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감금을 했다면 처벌 가능 ① 몸을 씻지 말고(몸을 씻었더라도) 산부인과 병원으로 가서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검사와 상처치료를 받는다. 이 때 가해자의 정액이나 음모 등을 채취한다. ②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고, 피해 당시 입었던 속옷이나 겉옷 등 증거물을 모아 종이봉투에 보관한다. (비닐봉투는 옷가지에 묻는 내용물을 변질시킬 수 있으므로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게 좋다) [결혼이민자 한국생활 가이드북-여성가족부]
-------	--

(2) 직 장 에서	
<p>사례1) 노동착취 및 부당대우</p> <p>입국 전 계약 당시에는 8시간 근무에 월급 651,000원을 받기로 하고 기숙사 비용과 식비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입국해 보니 근무시간이 11시간이고, 잔업수당도 계산해 주지 않았다. 세금과 식사비도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했다. 잔업 수당을 요구하면 회사가 어려워져 줄 수 없다고만 했다.” (타데로 메리, 여, 31세, 필리핀)</p> <p>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하는 회사도 상당하다. 또 재계약 결정권도 사업주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회사는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무리한 작업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와 강제출국 같은 위협을 받기도 한다. 2005.08.15 (www.ildaro.com)</p>	
세계인권선언의 인권보장 조항	<p>제 6조 :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p> <p>제 7조 :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p> <p>제 8조 :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p>
사례 대처 교육	<p>교육예시 :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고용한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다.)</p> <p>법제68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p> <p>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8세 미만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를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p>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p> <p>법제69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p>
도움 받기	<p>법적 보호가 가능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여성센터 등의 도움을 구한다.</p>
기타 정보	

(2) 직 장 에 서

사례2) 성추행

“스물여섯 된 중국인 여성 왕하(가명)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파주시 금촌에 있는 한 섬유공장에 취직되어 일하게 되었다. 사장은 새로 입사한 왕하에게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이 많을 것이라며 이불이며 생활 용품들을 장만해 주었다. 왕하는 친절하게 대하는 사장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장을 아버지처럼 잘 따랐는데 어느 날 밤, 술을 잔뜩 마신 사장이 기숙사에 와서 왕하를 겁탈하고 말았다. 왕하는 무섭고 겁이 났지만 이 공장을 나올 경우 오갈 데도 없고 수중에는 돈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한국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요청할 수 없었다. 그 후 사장은 상습적으로 왕하의 방에 와서 그녀를 강간했다고 한다.”

지난2002년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여성노동자 중 10% 이상이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한국인 상사가 55.6%, 한국인 남성 노동자가 27%로 82%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3.10.27 (www.ildaro.com)

<p>세계인권선언의 인 권 보 장 조항</p>	<p>제 3조 :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 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p> <p>제 14조 :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p>
-----------------------------------	--

<p>사 례 대 처 교육</p>	<p>교육예시 :</p> <p>1. 성희롱의 기준을 안다.</p> <p>직장 내의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행위자는 직장 내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 부하직원 등이다. 성희롱 장소는 직장내외를 불문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예 : 부서 회식장소, 체육대회 등). 성희롱 여부의 판단은 단 1회의 행위 또는 수회에 걸친 반복 등 횟수에 무관하며, 가해자의 성희롱 의사 유무를 불문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p> <p>* 성희롱의 사례</p> <p>① 육체적 행위</p> <p>·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② 언어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를 포함한다) ·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시각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스 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④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p>2. 신고하기 : 다음과 같이 성추행, 성폭행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사업주나 관련 단체에 즉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한다.</p>
<p>도움 받기</p>	<p>⇒ 사업주에게 신고</p> <p>다음과 같이 성추행 혹은 성폭행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사업주는 고충 처리기구 또는 인사팀, 노무팀 등을 통하여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접수, 상담하고 구체적 내용을 조사하여 성희롱이 명백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 노력을 해야 한다.</p> <p>⇒ 지원단체 및 기관에 연락</p> <p>사업주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빨리 피해 장소를 빠져 나와 가까운 지원단체 및 기관에 연락(1577-1366) => 지방 노동사무소 혹은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다.</p> <p>[국제결혼가정을 위한 생활매뉴얼 중 6.여성 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편 참고]</p>

(3) 자녀 양육 및 교육

사례1) 한국어 문제 및 기타 교육 문제

외국인엄마' 전국1만여 명 한국말 서툴러 자녀학습 더더

6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 소아정신과. 필리핀 엄마 에그린(가명·33)과 한국인 아빠(38) 사이에서 태어난 성주(5·가명)는 전남 무안에서 살다 엄마와 함께2001년 12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광주로 왔다. 성주는 한창 말을 배울 시기에 엄마한테 언어 자극을 받지 못했다. 처음엔 잔뜩 움츠린 표정으로 “안 해” “줘” 등 묻는 말에만 짧게 반응하다 최근 언어 치료사와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 성주는 이날 종이 겹치기 놀이를 그만하자는 말에 “더해”라고 반응을 보여 엄마를 기쁘게 했다. [한겨레 2004.11.7]

12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임옥씨는 초등학교 4학년인 딸 소망이의 교육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임씨는 학기가 바뀔 때마다 선생님을 찾아가 아이를 부탁한다. 학업이 뒤떨어지거나 흑시라도 차별을 받을까봐서다. “우리 아이가 비뚤어지면, 그것은 나와 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한겨레 권태선 기자]

교육안내)

이주여성에게 있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알게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코시안이라고 불리는 이주민여성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게 하는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도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유엔어린이인권협약’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전체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에 따르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세계어린이
인권선언의
인권보장
조항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택셈⇨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례대처
교육

교육예시 :

1. 아동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참여자들이 인식하도록 돕는다.

"여러분이 가진 인권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 또한 동일한 인권을 가집니다. 특히 아이들은 성인보다 자신의 인권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로서 여러분이 아동들의 권리를 잘 인식하고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는 그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다."

2.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77-5432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에서의 조기적응을 지

	<p>원하기 위해 한국어·다문화교육, 가족상담, 취업교육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국 38개 지역에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80개 지역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음.</p> <p>A.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문화이해교육, 정보화교육 B. 가족생활상담 및 정보제공 C. 자녀보호 D.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지원 및 지도자 양성 E. 정서적·문화적 지원 F. 친정어머니(멘토) 및 후원가족 매칭 G. 결혼이민자가족 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H. 다문화 사회 수용 분위기 조성 I. 유관기관·단체와 협의체 구성·운영 J. 관내 결혼이민자 지원 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 등</p> <p>②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 지리적인 접근성 등의 문제로 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1577-1925</p> <p>A. 교육지원 : 한국어교육, 부부·가족생활 교육, 문화이해 교육 B. 자녀지원 : 언어지도, 학습지원, 학교생활 적응지원, 양육기술, 자녀보호 C. 상담지원 : 이민자 및 가족(이민자 상담 시 의사소통의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 시 1366 연계 지원) D. 모성보호 지원 : 출산 전후 가사도우미 지원(출산, 육아, 가사) E. 정서적 문화적 지원 : 친정어머니(멘토) 및 후원가족 매칭 F. 지역공동체 다문화사회 수용 분위기 조성 등</p>
<p>도움 받기</p>	<p>⇒ 결혼이민자 지원기관 : 1577-5432 ⇒ 지원단체 및 기관에 연락 : 찾아가는 서비스 1577-1925</p>



2-3 상 황 속 으 로

지금까지 실제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겐 어떤 것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실제 삶 속에 적용하여 봅시다.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장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 속의 장면들은 때때로 낯설기도 하고 당신의 상황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당신이 인권피해 당사자라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그룹 구성원들과 토의하여 봅시다.

활동하기exercise 2-3	
진 행 자 안 내	<p>목표 Objective :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인권 침해 상황들을 영화, 드라마를 통해 재조명할 수 있다.</p>
	<p>진행자 안내 Guide Line : :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들을 ‘인권’이라는 새로운 틀에 비추어 바라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참여자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준다.</p>
	<p>1. 인권이 존중 받지 못하는 현장이 담긴 드라마, 영화 등 영상자료 시청 2. 그룹별로 어떤 부분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지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한다. 3. 또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앞서 배운 사례를 응용하여 발표해보도록 한다. 그룹별로 그림이나 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첨부한 기관의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알도록 해준다.</p>
	<p>TIP> 자신이 인권침해 당사자인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하도록 유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소요시간 : 45분]</p>
<p>활동도구 : 인권침해사례를 다루고 있는 영상(참고 : SBS 긴급구조 S.O.S 프로그램 영상, 드라마, 영화 등), 워크시트</p>	



2- 4 상처 입은 흙 인형

여러분의 앞에 뻗뻗하고 깨끗한 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그 지폐를 사정 없이 구겼다고 생각해봅시다. 이제 그 지폐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만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폐는 구겨지더라도 여전히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인권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며, 다양한 환경에서 지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때때로 우리의 권리가 무시 받고 존중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알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타인들의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과 이웃의 가치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활동하기 exercise 2-4	
진 행 자 안 내	<p>목표 Objective : 일상 속에서 우리의 형상이 주변 환경으로 인해 쉽게 상처받을 수 있음을 안다. 그만큼 자신의 인권을 지켜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 자신 역시 타인의 인권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깨닫고 타인을 더욱 존중하며 행동할 수 있다.</p>
	<p>진행자 안내 Guide Line : * 찰흙으로 인형을 만들고, 감각으로 체험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주변 환경이나 주변의 시선에 의해 자신만의 고유함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도록 해야 한다. *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 또한 우리가 쉽게 공격하여 상처를 줄 수 있음도 언급한다.</p>
	<p>방법 : 1. 찰흙으로 각자의 모습을 만든다. 2. 둘씩 짝을 지어서 상대방의 찰흙형상을 손가락으로 찢러 망가트리도록 한다. 3. 서로의 기분이 어떠한지 감정을 서로 말하도록 한다.</p>

“자신의 모습이 망가졌을 때, 기분이 어떠했나요? 서로 나눠보세요.”

4. 이 순서가 끝나면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행동과 함께 메시지를 전달한다.

“○○씨의 모습은 처음에는 이렇게 완벽했는데(찰흙인형을 가리키며) 아침에 일어나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아침 지어야 하는데…’ 하시는 시어머니의 편잔에 이만큼 찌그러지고(손가락으로 찰흙은 조금 누르면서 망가트린다), 밖으로 나가는 남편의 ‘여권이 나에게 있으니 한국 국적을 따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험박스런 말에 이만큼 또 찌그러집니다. (손가락으로 찰흙은 조금 누르면서 망가트린다.) 아침을 지어놓고 정리를 한 뒤, 돌아서서 쉬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가 아무 말 없이 뜨거운 햇살아래 끊임없이 어제와 같이 일을 함으로써 조금도 쉴 틈이 없는 통에 또 이만큼 ○○씨의 모습은 찌그러집니다 (손가락으로 찰흙은 조금 누르면서 망가트린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인권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 의해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찰흙인형이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찰흙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찰흙으로 다시 인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권이 침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우리의 인권인지 알고 귀중히 여기면서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자신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겨진 지폐가 여전히 가치를 지니듯 여러분의 인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펴고 만들어 여러분의 인권을 지키기 바랍니다.”

[소요시간 : 35분]

활동도구 : 찰흙, 워크시트



2- 5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

바다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항해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나 바람이 불어 때때로 주변에 정박하더라도, 헤매지 않고 결국 목표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위해서는 항해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튼튼한 배와 항해 전에 배를 손질해 줄 사람, 그리고 바다에서는 등대에서 일하는 이들의 안내가 꼭 필요합니다.

앞서 인권랜드로 입장한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인권들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탈 수 있는 놀이기구들을 설치하고, 고장 나지 않도록 관리하며, 놀이기구가 고장 나서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달려와 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권랜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연구하고 조사하여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또한 사회제도가 여러분의 인권을 보호하게끔 만들어지도록 다양한 정치활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관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차후에 우리도 한 사람의 참여자로서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활동하기 exercise 2-5	
진 행 자	<p>목표 Objective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며, 자신도 이러한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다. *참여자 자신들 또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안다.
안 내	<p>진행자 안내 Guide Line :</p> <p>모든 인권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힘이 없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과 단체가 있</p>

음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심리적 지지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락망을 제시하여 어려움에 봉착 시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1.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사람, 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토의하도록 한다.
2. 국제, 국내에서 노력하고 있는 인권단체 들 중 주요한 단체들에 대해 소개한다.
3. 이주민 여성들을 위한 인권단체들을 소개한다.

[소요시간 : 60분]

활동도구 : 인권단체소개, 워크시트



3 장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술 익히기

3- 1 Say No! 자신의 의견표현하기

인권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을 지켜나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일 것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왔고, 한국어에 서투르다는 이유로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의 의견을 결코 궁금해 하지도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훈련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행하는 실천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Yes라고 말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인권이 침해 받는 현장에서 당신의 감정과 의견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룹 구성원들과 연습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데 점차 익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하기exercise 3-1 Say No!	
진 행 자	목표 Objective :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에 비해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진행자 안내 Guide Line : *한국어가 서투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망설여 할지도 모르나, 끊임없이 격려하여 간단한 의견이라도 말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한국어 수업시간과 겹쳐서 진행해도 유익할 것이다. 드라마 대본이나 영화 대본을 제공한 뒤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거절하고 화를 내는 역할을 맡도록 한다.
안 내	

	<p>1. 자신의 감정, 의사 표현하기</p> <p>⇒ 지난 한 주간, 감정이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나누게 한 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토의 하도록 한다.</p> <p>2. 고발정신</p> <p>⇒ 앞에서 사례를 통해 배운 기관을 숙지하고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음을 알고, 상황을 설정해 주었을 때 실행해볼 수 있다.</p> <p>3. 역할시연</p> <p>⇒ 드라마, 영화의 대본을 준비하고 영상을 보여 준 뒤 각 그룹에서 주인공을 맡아 직접 시연하여 표현하고, 거절해보는 연습을 한다.</p> <p>[소요시간 : 90분분]</p>
	<p>활동도구 : 영상, 워크시트</p>



3- 2 함께 모이기

나뭇가지 세 개의 일화를 떠올려 봅시다. 얇은 나뭇가지 하나는 부러뜨리기 쉽지만, 두 개, 세 개가 되면 부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야호'라고 소리를 외친다고 해서 산 밑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 명, 스무 명, 백 명, 천 명이 될 때는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동료 나뭇가지가 있습니까. 혹은 함께 야호-라고 소리칠 사람이 있습니까.

활동하기 exercise 3-2	
진 행 자 안 내	<p>목표 Objective : 인권을 지키는 방법으로 함께 모이고 의견을 모아 활동할 수 있음을 알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알고 참여를 시도할 수 있다.</p>
	<p>진행자 안내 Guide Line :</p> <p>* 지금까지 교육한 내용이 정보제공과 개인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면, 이번 장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활동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다.</p> <p>* 교육을 받으며 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은 힘이 없고 약해서 할 수 없다고 반응할 수 있다. 이 때, 격려하며 작은 것들이 합쳐져서 힘을 내는 경우를 보여주거나 경험하도록 하라.</p> <p>▷ 활동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이(이면지나 폐지도 좋다)를 개인에게 나누어 준 뒤 반으로 접어 잘라 보도록 한다. 2. 종이를 두 번 접어서 찢어보게 한다. 3. 종이를 세 번 접어서 찢어보게 한다(손으로) <p>이 과정을 반복하여 찢을 수 없는 단계까지 유도한다.</p> <p>▷ “얇고 이미 쓰고 버린 종이라서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종이들이 겹쳐지고 자신들끼리 뭉칠 때 종이 입에도 찢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함께 모이고 의견을 모을 때에 그 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위 여러분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통점 속에서 함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모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은 가까운 단체에 도움을 청해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소요시간] 30분</p>
	<p>활동도구 : 종이</p>



3- 3 다양한 정보들 사용하기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장롱을 뒤지고, 온 집안을 뒤지며 귀중한 것들을 훔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당시는 잠에서 깨서 도둑이 들어온 것을 눈치 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도둑이 당신의 귀중한 것들을 다 훔쳐가도록 두겠습니까? 당신은 도둑을 향하여 뛰어 들어 때려눕힐 수도 있고, 조심하면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도둑이 온 것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나머지 그저 도둑이 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동입니다. 혹은 요즈음은 문자로도 신고가 되는 곳이 있어서, 이 정보를 당신이 알았다면 조용히 신고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것을 무단으로 빼앗으려는 사람, 상황이 나타날 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당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도둑을 막기 위해 집의 안전을 단속하고, 도둑이 들었을 때 해야 하는 행동요령을 배우고 익혀두면 유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의 인권을 망가뜨리려는 사람이나 상황이 올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행동으로 옮기도록 노력 합시다.

활동하기exercise 3-3	
진행자 안내	목표 Objective :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노력해야 함을 깨닫고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한다.
	진행자 안내 Guide Line : *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지난 활동 들을 잠깐씩 언급해 가며 간단하게 정리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룹별로 자신들에게 가장 유용했던 부분을 생각해보게 하며, 그것이 왜 유의하였는지 전체 토의시간을 통해 나누도록 합니다.
활동도구 : 워크시트	

V. 결 론

지난 8월에 이루어진 유엔 보고서 한국 심의 과정에서 유엔감사관들은 한국의 단일 아이덴티티 강조문화가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순수혈통, 단일민족이라는 말의 뜻에는 단일민족외의 사람에게는 불순한 혈통이 흐른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 형성된 사회적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인종차별의 잠재적 가능성은 곧바로 ‘비’단일민족인 한국내의 외국인의 인권과 직결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최근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는 시대적인 상황과도 맞물려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이주민 여성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어느 누구보다 크다.

이러한 한국의 문화와 다양한 복합적 요인들이 맞물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요소와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함은 이주여성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요구하며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연유에서 부족하나마 인권교육매뉴얼을 제안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이들을 위한 인권교육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나 여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이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실행되어 피드백을 통해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양적으로 부족하여 매뉴얼의 제작과 활용에 한계가 있었고 이는 매뉴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추후 연구과 활용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니는 한계는 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인권교육재공의 부족성이다. 이주여성의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지적능력은 충분하지만, 언어적인 어려움과 적응상의 문제로 활동을 쉽고 간단하게 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따랐다.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인권교육가가 양성 되어야 이러한 한계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안한 매뉴얼은 다분히 감성적이고 체험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또한 체계성이 부족하여 아직 보완해야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히 국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매뉴얼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들을 위해 인권교육을 따로 시행할 수 없을 때, 한국어 수업이나 다른 정보수업시간에 본 매뉴얼의 부분들이 도입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 자료 ■

[국내자료]

- 김선아(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김행전(2005) 중학생의 인권의식 조사연구
박승희(2005) 다르게 함께 사는 세상 : 장애인 인권교육
박재규(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설동훈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미래
인력연구원
설동훈(2006), 국내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 실태
소라미(2004), 국제결혼 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 및 과제
안혜옥(2006), 국제결혼 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
양정화(2005),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이갑진(2007), 사회과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론 연구
이금연(2001), 국내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이명준(2000) 인권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
이세라(2006) 중등학교 사회과 교실에서의 인권교육 수업모형 개발
이영아(2005), 이주여성의 실태와 문제점, 안양이주노동자의 집
Lee In kyung(2006), Migrant women through marriage and their rights in Korea
이혜경(2005),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인권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조금주(2006)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염(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있어 이주단체 입장에서
본 정부정책의 문제와 과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과 과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2005), 이주여성 현장에서 본 이주여성 정책과 입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Tsay Ching-Lung(2005), 대만 이주신부들의 결혼생활 : 결혼에 따른 이주결과 연구,
타이완 경제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2005), 국민인권의식조사 총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2002),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06), 이주와 인권 국제 포럼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2004), 인권교육 실천 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2005), 인권상담사례집
 김성미경 외(2006), 2006년 제2차 여성정책 워크숍 자료집, 인천발전연구원 여성
 개발센터
 미래인력연구원(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발표회 자료집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한국생활 가이드북
 이대훈 외(2003), 인권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여성인권센터(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인권운동 사랑방 인권교육실(2001)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2000) 1회 민간단체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통계청(2007), 2006년 혼인통계 결과
 통계청(2006), 2005년 혼인통계 결과
 통계청(2007), 2006년 이혼통계 결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5), 생활법률정보매뉴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2),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생활매뉴얼
 행정자치부(2006), 국내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Hugh Starkey 외(2006), 유럽·미국의 인권교육 실천과 한국 인권교육의 방안 워크
 샵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편(2005), 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국가인권위원회 편(2005), 인권교육실천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편(2005), 사람이 곧 하늘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문미희(2005), (예비교사를 위한)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한국학술정보
 성공회대인권평화연구소 엮음(2002),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 삼인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2000), 아시아의 인권교육-호주,인도,홍콩편-사람생각
 차우규(2003)중학생과 함께하는 민주인권교육-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외자료]

Sonia Parras Konrad(2004), Breaking the Silence,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UNESCO(2006), Passport to Equality

국가인권위원회(2004), Report on main activities in 2003 business plan for 2004

Felisa Tibbitts- Case studies in Human Rights Education

국제인권팀(2007), UN Human Rights News

(2001)Human rights in education as prerequisite for human rights education

(2006)International Human Rights Training Program-Equitas

(2006)Promo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Asian cultures :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women's rights

www.hrea.org

www.pdhre.org

* 별첨 : 교육 참여자용 워크시트 및 자료

1. 활동별 워크시트

2. 기타자료

- ① 나의 인생그래프 [활동 1-2]
- ② Ice Break [활동 1-3]
- ③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침해사례 [활동 2-2]
- ④ 무료진료기관 [활동 2-2]
- ⑤ 인권단체소개 [활동 2-5]
- ⑥ 인권카드 [활동 2-1]
- ⑦ 인권팔찌 [활동 2-1]
- ⑧ 도움이 필요할 때
- ⑨ 세계인권선언 [활동 2]
- ⑩ UN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활동 2]

■ 활동 1 인권의 존엄성 ■

활동 1-1 동일한 출발선 위에서

1. 영상시청 뒤 아래의 빈칸을 채워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그룹과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예 : 우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하다]

인간은_____때문에_____하다.

2. 자신의 느낌을 간단한 그림이나, 글로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사용하기 편한 언어-예 : 모국어-로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활동 1-2 나의 42.195km

1. 자신의 인생그래프를 그린 뒤 그룹과 나누어 보세요. [첨부 워크시트 참조]

그리고 현재의 삶은 어떠한지 이야기해 봅니다.

*현재 당신의 삶의 만족도를 5점으로 표현한다면 몇 점입니까?

-1점 향상 혹은 5점이 되기 위해 어떤 것이 변하거나 충족되었으면 좋겠습니까?

2. 자신의 장단점을 표현한 뒤 그룹 성원과 이야기해 봅니다. 그룹 성원은 발표자의 장점을 함께 찾아 이야기해 봅니다.

■ 활동 1 인간의 존엄성 ■

(활동 1-3은 첨부시트 활용)

활동 1-4 인간의 존엄성/ 나=너, 닮은점 찾기

1. 공통점 찾기 활동 후에 느낀 점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나누도록 합니다.

활동 1-5 인간의 존엄성/ 우리교실의 규칙정하기

1.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 할 약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작성해 봅시다.

■ 활동 2 인권이해하기 ■

활동 2-1 인권랜드 탐험

1.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선택해 봅시다.

2. 한국으로의 이주 후에 모국에서 누리던 권리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룹 성원과 나누어 주세요.

활동 2-2 세계인권선언 알아보기

1. 각 인권침해 사례를 보장하고 있는 인권선언 항목을 찾아서 토의해 보세요.
[한 사례에 해당하는 다양한 인권선언항목을 찾아 이야기 나누어도 좋습니다]

2. 각 사례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기록하여 사용합니다.

■ 활동 2 인권이해하기 ■

활동 2-3 상황 속으로

1. 시청한 자료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2. 자료 화면처럼 당신이 인권을 침해 받는 당사자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자유롭게 응답하되, 활동 2-2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활동 2-4 상처 입은 흙 인형

1. 찰흙인형을, 상대방이 망가트릴 때 기분이 어떠하였나요?
2. 주변에서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에도, 당신이 지키고 싶은 당신의 인권은 어떤 것입니까?

■ 활동 2 인권이해하기 ■

활동 2-5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

1.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혼자라서 혹은 힘이 약해서 억울함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생활에서 인권이 보호받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 중, 당신이 꼭 기억할만한 기관은 어떤 곳입니까

■ 활동 3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술 익히기 ■

활동 3-1 Say No! 자신의 의견 표현하기

1. 지난 한 주간 동안, 당신이 원치 않았지만 거절하지 못해서 해야만 했던 일이 있습니까?
2. 남편에게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났을 때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 역할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한 후, 느낌은 어떠합니까?

■ 활동 3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술 익히기 ■

활동 3-2 함께 모이기

1. 여러분의 그룹 내에서 공통으로 가진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여러분은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 함께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생각해봅시다.
[예 : 시간, 장소, 규칙]

활동 3-3 다양한 정보를 직접 이용하기

1. 이번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 중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2. 당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3. 앞으로 인권에 대해서 더 배우고, 당신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첨부 1■

활동 1-2 나의 42.195km

■나의 인생그래프■

만족도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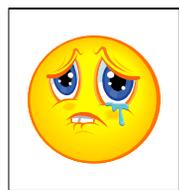
나이

■첨부 2■

활동 1-3 함께 달러가는 사람들

■ ICE BREAK 질문지 ■

1. 당신은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나요?
2. 어린 시절 좋아하던 놀이는 어떤 것이었나요?
3. 어린 시절 가장 기뻐던 시간은 언제였나요?
4. 어린 시절 가장 슬펐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5.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요?
6. 당신이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한국 음식은 무엇인가요?
7. 한국드라마 중 즐겨보는 것이 있나요? 어떤 드라마 인가요?
8.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은 어떤 것이었나요?
9. 지금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10. 다음 번 당신의 생일날, 어떤 선물이 가장 받고 싶나요?
11. 당신의 남편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12. 지금 당신의 기분을 표현하기에 가장 가까운 그림은 다음 중 어떤 것인지 말해보세요.



■첨부 3■

(1) 가 정 에 서	
<p>사례1) 모욕을 당할 때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날 며느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창피한거죠.” (27세 여성) “남편은 내 머리를 보고 촌스럽다면서 ○○ 사람 같다고 말해요.” (32세 여성)</p>	
세계인권선언의 인권보장 조항	
사례 대처교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기 타 정 보	
<p>사례2) 매매 “남편은 결혼하기 위해 중매업체에게 큰 돈을 지불했기에,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 다고 말해요. 나는 일을 많이 해야 하고, 돈은 도로 갚아야 한다고 말해요.” (23세 여성) [생활정보매뉴얼 중]</p>	
세계인권선언의 인권보장 조항	
사례 대처교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기 타 정 보	

(1) 가 정 에 서	
<p>사례3) 외부세계와의 단절, 고립</p> <p>이주여성인권연대에 상담을 해 온 한 이주여성은 같은 국적의 친구들과의 접촉을 차단당한 경험을 이렇게 털어놓았다.</p> <p>“시어머니는 친구들이 전화를 할 때면 내가 옆에 있는데도 화장실에 있다고 하며 바꿔주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다. “어머니 나 답답해요. 나 친구가 필요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친구들이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여보, 내 방은 화장실이 아니야. 왜 계속 화장실에 있다고 해. 내 마음 많이 답답해, 나 친구가 필요해.” (2006.9/6) [www.ildaro.com]</p>	
세계인권선언의 인권보장 조항	
사례 대처교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 타 정 보	
<p>사례4) 술과 폭력</p> <p>“남편은 정기적으로 술을 마셨고, 그럴 때면 때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편의 폭력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듯 했다.” (33세 여성) [생활정보매뉴얼]</p>	
세계인권선언의 인권보장 조항	
사례 대처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단피하라 2. 도움을 요청하라 [신고] 3. 직접적 행동으로 저항하라 4. 대처방법을 미리 생각하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경찰서 [112]
기 타 정 보	<p>[가정폭력사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자료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진단서, 병원진료기록 *몸에 생긴 상처나 부서진 가구의 사진 *폭언이나 폭행현장이 녹음 또는 녹화된 자료 *목격자의 진술, 112신고 확인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자료 등

(1) 가정에서			
<p>사례5) 강제적 성관계 “남편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그럴 때면 내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때렸다. 특히 술에 취했을 때는 더 심했다. 한번은 생리 중이었기에 섹스를 거부했지만, 남편은 강제로 했다. 강제로 여러 가지 자세를 요구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했다.”(21세 여성) [생활정보매뉴얼]</p>			
세계인권선언의 인권보장 조항			
사례 대처교육	⇨ 남편이 강간을 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감금을 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 ① 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전화로 [117,112]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 경찰서 민원실에서 여성 경찰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이주여성긴급전화[1577-1366]에서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 타 정 보	*참고> 가정에서의 긴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아홉가지 ① 여권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비상연락망] ③ 화재나 응급이 발생했을 때 119 로 전화한다. ④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1577-1366 으로 전화한다. ⑤ 성매매 신고를 하여 성산업 피해 여성을 돕는 긴급 전화번호는 117 이다. ⑥ 기독교 여성 상담소 02)2266-8275(전화상담)/02)365-4278(면담예약) ⑦ 열린가족상담센터 02)830-1816 ⑧ 이주여성지원단체 ⑨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비상연락망 작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직 장 에 서

사례1) 노동착취 및 부당대우

입국 전 계약 당시에는 8시간 근무에 월급 651,000원을 받기로 하고 기숙사 비용과 식비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입국해 보니 근무시간이 11시간이고, 잔업 수당도 계산해 주지 않았다. 세금과 식사비도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했다. 잔업 수당을 요구하면 회사가 어려워서 줄 수 없다고만 했다.” (타데로 메리, 여, 31세, 필리핀)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하는 회사도 상당하다. 또 재계약 결정권도 사업주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회사는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무리한 작업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와 강제출국 같은 위협을 받기도 한다. 2005.08.15 [www.ildaro.com]

<p>세계인권선언의 인권보장 조 항</p>	
<p>사례 대처교육</p>	
<p>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p>	
<p>기 타 정 보</p>	

(3) 직 장 에 서

사례2) 성추행

“스물여섯 된 중국인 여성 왕하(가명)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파주시 금촌에 있는 한 섬유공장에 취직되어 일하게 되었다. 사장은 새로 입사한 왕하에게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이 많을 것이라며 이불이며 생활 용품들을 장만해 주었다. 왕하는 친절하게 대하는 사장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장을 아버지처럼 잘 따랐는데 어느 날 밤, 술을 잔뜩 마신 사장이 기숙사에 와서 왕하를 겁탈하고 말았다. 왕하는 무섭고 겁이 났지만 이 공장을 나올 경우 오갈 데도 없고 수중에는 돈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한국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요청할 수 없었다. 그 후 사장은 상습적으로 왕하의 방에 와서 그녀를 강간했다고 한다.”

지난2002년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여성노동자 중 10% 이상이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한국인 상사가 55.6%, 한국인 남성 노동자가 27%로 82%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3.10.27(www.ildaro.com)

세계인권선언의
인권보장 조항

사례 대처교육

- ▷성희롱의 기준 알기
- *성희롱의 사례
- ① 육체적 행위
 -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② 언어적 행위
 -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③ 시각적 행위
 -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스 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④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다음과 같이 성추행 혹은 성폭행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사업주에게 피해를 말하여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 만약, 성추행 발생시
 - ▷ 사업주에게 조치요구
 - ▷ 사업주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빨리 피해 장소를 빠져 나와 가까운 지원단체 및 기관에 연락(1577-1366) => 지방 노동사무소 혹은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다.

(4) 자녀양육 및 교육

사례1) 한국어 문제 및 기타 교육 문제

외국인엄마' 전국1만여명 한국말 서툴러 자녀학습 더더
6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 소아정신과. 필리핀 엄마 에그린(가명·33)과 한국인 아빠(38) 사이에서 태어난 성주(5·가명)는 전남 무안에서 살다 엄마와 함께 2001년 12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광주로 왔다. 성주는 한창 말을 배울 시기에 엄마한테 언어 자극을 받지 못했다. 처음엔 잔뜩 움츠린 표정으로 “안 해” “줘” 등 묻는 말에만 짧게 반응하다 최근 언어 치료사와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 성주는 이날 종이 겹치기 놀이를 그만하자는 말에 “더해”라고 반응을 보여 엄마를 기쁘게 했다. [한겨레 2004.11.7] 12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임옥씨는 초등학교 4학년인 딸 소망이의 교육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임씨는 학기가 바뀔 때마다 선생님을 찾아가 아이를 부탁한다. 학업이 뒤떨어지거나 혹시라도 차별을 받을까봐서다. “우리 아이가 비뚤어지면, 그것은 나와 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한겨레 권태선 기자]

세계어린이 인권선언의 인권보장 조항	
사례 대처교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가족지원센터 ☎ [] 찾아가는 서비스 ☎ []
기 타 정 보	

사례2) 건강보험 가입문제
베트남 이주민 여성 옥분씨는 지난 5일 밤 아들 민우가 갑작스럽게 열이 많이 나는 걸 보고 병원에 급히 데려갔다가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입원 시, 감당할 수 없는 입원비로 고민하고 있다.

세계어린이 인권선언의 인권보장 조항	
사례 대처교육	<p>① 건강보험에 들고자 할 때, [공단지역본부 연락처 ☎]</p> <p>*서울지역본부 자격팀 02)2126-8862~6 대표전화 02)2126-8999 *경인지역본부 자격팀 031)230-7881~4 대표전화 031)230-7840~5 *대구지역본부 자격팀053)650-8870 대표전화 053)650-8900 *광주지역본부 자격팀062)250-5551 대표전화 062)250-5650 *대전지역본부 자격팀042)605-7141~3 대표전화 042)605-7100 *부산지역본부 자격팀 051)801-0561~4</p> <p>② 무료진료 절차 :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무료진료소 혹은 보건소,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 =>수술이 필요한 경우 무료 혹은 적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십자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으로 간다.</p>

(5) 기타 : 직업 및 경제적 지원

<p>세계인권선언의 인권보장 조항</p>	
<p>사례 대처교육</p>	<p>1. 직업훈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직업훈련 신청방법과 절차 : 고용지원센터 방문=>구직신청.등록=>상담=>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 신청=>직업훈련 참여, 직업훈련수당 지급</p> </div> <p>[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각 지역 종합고용지원센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한국고용정보원 02-2029-7000 홈페이지 www.hrd.go.kr <p>2.직업찾기</p> <p>[신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 고용지원센터(www.job.go.kr) <p>3. 자활근로 참여를 통한 취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신청방법과 절차</p> <p>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담당자가 고용지원센터와 자활후견기관에 의뢰=>신청자는 고용지원센터와 자활후견기관과 다시 상담=>적합한 자활사업 추천=>자활근로 참여</p> </div> <p>4. 위기 상황 시, 긴급복지를 통한 생활보장</p> <p>*신청방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긴급지원업무 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에 지원신청=>담당자 현장 확인=>지원=>심사</p> </div>
<p>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워크넷 홈페이지 [www.wokr.go.kr] ⇨ 시.도.자활근로 담당부서,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www.jahwal.or.kr 02)324-1892~3) ⇨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시.도 긴급지원업무 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 129
<p>기 타 정 보</p>	

■ 첨부 4 ■

■ 무료진료 실시 의료기관 현황 ■

* 국립의료원			
지역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국립의료원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3	02-2260-7068
* 지방의료원			
지역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의료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02-3430-0201
부산	부산의료원	부산시 연제구 거제2동 1330	051-507-3000
대구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중리동 1162	053-560-7575
인천	인천의료원	인천시 동구 송림동 318-1	032-580-6000
경기	수원의료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92-3	031-888-0114
	의정부의료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	031-828-5000
	안성의료원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55	031-674-7520
	이천의료원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44-1	031-635-2641
	금촌의료원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98	031-941-5811
	포천의료원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243-4	031-539-9114
강원	원주의료원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37	033-761-6911
	강릉의료원	강원도 강릉시 남문동 164-1	033-646-6910
	속초의료원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91-10	033-632-6821
	영월의료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72	033-370-9101
	삼척의료원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55-9	033-572-1141
충북	청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	043-279-2300
	충주의료원	충북 충주시 문화동 1655	043-841-0114
충남	천안의료원	충남 천안시 봉명동 39-1	041-570-7200
	공주의료원	충남 공주시 중동 330	041-855-4111
	홍성의료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72-3	041-630-6114
	서산의료원	충남 서산시 석림동 568-5	041-661-6114
전북	군산의료원	전북 군산시 지곡동 29-1	063-472-5000
	남원의료원	전북 남원시 고죽동 200	063-620-1114
전남	순천의료원	전남 순천시 매곡동 130-23	061-759-9114
	강진의료원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305-1	061-430-1114
	목포의료원	전남 목포시 용 해동 133-1	061-260-6500
경북	포항의료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1동 315	054-247-0551
	안동의료원	경북 안동시 북문동 470	054-858-8951
	김천의료원	경북 김천시 모암동 85	054-432-8901
	울진의료원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818	054-785-7015
경남	마산의료원	경남 마산시 합포구 중앙동 3가 3	055-249-1000

	진주의료원	경남 진주시 중안동 4	055-745-8000
제주	제주의료원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4-17	064-720-2222
	서귀포의료원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530-2	064-730-3101
*적십자 병원			
지역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시 종로구 평동 164	02-2002-8852-4
대구	대구적십자병원	대구시 중구 남산2동 937-1	053-252-4701-7
인천	인천적십자병원	인천시 연수구 연수3동 580-3	032-280-2114
경북	상주적십자병원	경북 상주시 남성동 33-27	054-530-3107
경남	통영적십자병원	경남 통영시 서호동 163-22	055-644-8901
	거창적십자병원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4-1	055-944-3251
* 시도지사 인증 의료기관			
지역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사)지구촌사랑 나눔회부설외국 인 노동자의원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137-22	02)863-9966
	다일천사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02)2212-8004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광주시 동구 학동 8	062)220-5095
	조선대학교	광주시 동구 서석동 588	062)220-3009
	광주기독병원	광주시 남구 양림동 264	062)650-5641
	광주현대병원	광주시 북구 용봉동 1129-2	062)570-0001
	서광병원	광주시서구 금호동 766-9	062)600-8000
대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301-723	042)220-9114
	대전선병원	대전시 중구 목동 10-7	042)220-8000
	산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	대전시 대덕구 범동 285-3	042)670-5114
	충남대병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042)220-7114
충북	한국병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25-5	043)222-7000
충남	이화여성병원	충남 천안시 쌍용동494-4	041)570-1204
전북	예수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300	063)230-8193
경북	안동성소병원	경북 안동시 금곡동 177	054)850-8821
경남	창원파티마병원	경남 창원시 명서동 504-1	055)270-1000
	창원중앙병원	경남 창원시 남양동 5	055)289-9111

■첨부 5■

* 14) 지자체 외국인 지원 기구 · 단체 현황

시·도	시·군·구	민간기구	비고
계		130개	
서울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종로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용산구	국제크리스천스쿨	
	성동구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광진구	지구촌한가족본부, 외국인근로자선교회, 외국인근로자의료지원단체	3
	양천구	서부여성발전센터	
	구로구	서울중국인의 집, 가리봉동이주노동자의집, 외국인동포신문센터, 서울조선족교회	4
	금천구	살구여성회	
	관악구	중국동포사랑의집	
부산		국제교류재단,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북구	장선종합사회복지관	
대구			
	중구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외국인 노동자상담소, 이주노동자인권문화센터	3
	달서구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전여성인권상담소, 성서공단이주노동자상담소	3
	달성군	달성구락봉사단	
인천			
	남동구	남동선교회, 하늘안선교회, 씨앗선교회, 외국인선교회, 방글라데시선교회, 중국인선교회, 한국외국인선교회	7
	서구	한국이주노동자인권연대	
광주			
	동구	(사)국제교류재단	
	북구	광주외국인학교	
	광산구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2
대전			
	중구	국제친교센터	
	대덕구	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	2
울산			
	북구	울산1218이주노동자지원센터	
	남구	울산경실련 외국인노동자센터, 피플투피플	2

14) 행자부(2006), 국내거주외국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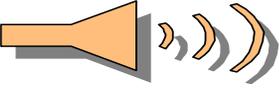
시·도	시·군·구	민간기구	비고
경기			
	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	
	안산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수원교구외국인노동자사목센터, 안산조선족교회,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안산선교교회, 안산안다옥국제선교회, 안산제일교회, 보문선원, 국경없는센터, 온누리 M센터, 동산교회선교센터	11
	남양주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세일안식일교회, 안미선교회, 이주노동자 여성센터	4
	평택	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파로스선교회,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공단선교센터	5
	군포	한무리사랑나눔회	
	화성	발안제일교회(향남), 사강감리교회(송산), 염광교회(송산), 용주사(안녕동)	4
	포천	성공회 나눔의집	
	광주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쉼터, 새하늘교회(외국인선교회),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 광주외국인교회, 세상의빛 선교교회, 세계선교교회	7
	하남	하남외국인 노동자의 집, 하남외국인 문화센터	2
	양주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실로암외국인근로자선교회	2
	강원		
원주		성불복지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양양		자원봉사센터	
충북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청주	외국인근로자사랑나눔회, 청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여성단체협의회	4
	충주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제천	제천외국인한글학교	
	옥천	옥천한국어학당	
	진천	충북이주노동자지원센터	
	음성	음성군사랑나눔공동체	

시·도	시·군·구	민간기구	비고
충남			
	천안	천안외국인교회	
	아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
	연기	외국인노동자의집, 외국인노동자복지센터	2
	홍성	새홍성교회	
전북			
	김제	이주여성쉼터	
	장수	여성자원봉사센터	
전남			
	목포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곡성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천주교	2
	화순	온누리교회	
	장흥	외국인여성한글교육원	
	해남	결혼이민자지원연대	
경북			
	김천	김천 YMCA	
	구미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구미보현의 집, 구미 제일교회	3
	의성	의성교회	
	영덕	영덕군자원봉사센터	
	예천	사랑방쉼터	
경남			
	창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천주교이주노동자상담소	2
	진주	원불교, 진주 YWCA	2
	통영	통영 YWCA	
	김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김해 YMCA, 교회 5개	7
	양산	외국인노동자의집	
	합양	시민연대, 가정교회	2
제주			
	제주시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서귀포	외국인근로자센터	

■ 인 권 카 드 ■

<p>평등 Equality</p> 	<p>안전할 권리</p>  <p>Safety</p>	<p>차별받지 않을 권리</p>  <p>Discrimination</p>
<p>직업선택의 권리</p> 	<p>사회보장을 받을 권리</p> <p>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p>	<p>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p> 
<p>자유로운 생활을 할 권리</p>  <p>Freedom of your life</p>	<p>동일임금 동일수당</p> 	<p>자유롭게 생각할 권리</p>  <p>Thinking</p>
<p>쉬 수 있는 권리</p>  <p>Take a Rest</p>	<p>건강을 보호받을 권리</p> 	<p>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p>  <p>Public Service</p>

<p>도망칠 권리</p>	<p>노예가 되지 않을 권리</p>	<p>교육받을 권리</p>
 <p>Run away</p>	<p>Not to be a Slave!!</p>	 <p>Education</p>

<p>자유롭게 말할 권리</p>	<p>자유로운 결혼과 자녀</p>	<p>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p>
		

<p>적절한 생활을 누릴 권리</p>	<p>재산을 가질 권리</p>
 <p>Standard living or life</p>	 <p>Having your money</p>

■첨부 7■

■ 인 권 팔 씨 ■

	직업선택	안전	차별X	종교	재산	교육	건강
							
	유식	좋은환경	생각	사생활	자유생활	의사표현	결혼, 자녀
							

*사용방법 : 양 끝쪽에 있는 점선부분을 잘라서 팔에 두른 후 잘라진 부분끼리 끼워주면 팔씨모양이 완성된다. 사용 시, 도화지같이 두께가 있는 종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도움이 필요할 때 ☎

상황	지원기관	신고전화	서비스 내용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요. 도와주세요!!!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1644-0644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필리핀어, 방글라데시어
	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9454 -9455 -9456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태국어
	한국국제노동재단 통역지원센터	1577-0177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디에다 요청을 하죠?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1.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 인한 보호 및 긴급보호 2.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야 정보가 필요할 경우의 상담. 3. 국적, 체류문제 등에 관한 법률상담 4. 상담 후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소, 쉼터, 변호사, 병원, 여성단체, 복지단체 등의 연결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전문상담원을 통해 자국어로 상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얻고 싶어요.	결혼이민자 지원기관	1577-5432	1.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문화이해교육, 정보화교육-가족생활상담 및 정보제공 2. 자녀보호 3.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지원 및 지도자 양성 4. 정서적·문화적 지원 5. 친정어머니(멘토) 및 후원가족 매칭 6. 결혼이민자가족 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7.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 등
우리아이 한국어 공부~집에서 배울 수 있나요? (집에서 받은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1577-1925	1. 교육지원 : 한국어교육, 부부·가족생활 교육, 문화이해 교육 2. 자녀지원 : 언어지도, 학습지원, 학교생활 적응지원, 양육기술, 자녀보호 3. 상담지원 : 이민자 및 가족(이민자 상담시 의사소통의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시 1366 연계 지원) 4. 모성보호 지원 : 출산 전후 가사도우미 지원(출산, 육아, 가사)
소득보장과 서비스 어떻게 혜택 받나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긴급지원(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 24시간 지원) 상담 *휴일, 야간 : 전화번호를 남겨 놓으면 평일 근무 시간 (오전9시~오후6시)중 상담원이 상담.
아이가 위험해요!!	아동학대 긴급전화	1391	
Help me! 도와주세요!!	경찰서	112,117	

■첨부 9■

쉽게 쓴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아래는 세계인권선언 원문과 국제앰네스티, 유니세프의 축약본을 참조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이 쉬운 말로 고쳐 쓴 것입니다.

■ 1조 :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 2조 : 차별은 안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 3조 :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 4조 :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 5조 :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 6조 :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 7조 :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

■ 8조 :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 9조 :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 10조 : 재판은 공정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11조 :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 12조 :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13조 :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떠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14조 :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 15조 :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진다. 누구도 함부로 나의 국적을 빼앗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 16조 :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결혼할 사람 둘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 수 있다. 결혼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설령 이혼할 때에도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 17조 :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 18조 :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 19조 :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20조 : 모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 21조 : 선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로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 22조 :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 23조 : 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24조 :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은 합리적으로

로 제한 되어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 25조 :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26조 :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 27조 :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문학, 예술의 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 28조 :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 29조 :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 30조 :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첨부 10■

쉽게 풀어쓴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전체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가운데 주요 조항만을 뽑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피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 제11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 제30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제31조. 우리에게 쉼과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 제35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2007년 인권논문 수상집

| 인쇄일 | 2007년 11월

| 발행일 | 2007년 11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 주 소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02)2125-9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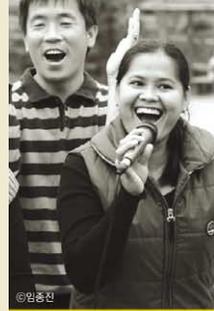
| F A X | 02)2125-9748

|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

| 인쇄처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리드릭>(02)2269-1919

ISBN : 978-89-6114-017-1 93330 비매품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을지로 1가 16)
TEL_ [02]2125-9754 FAX_ [02]2125-9748
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017-1